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955-01

2019. 11

농식품바우처 추진체계 구축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 large graphic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features a stylized circular design with concentric lines and a shaded segment. The letters 'KREI' are prominently displayed in the center of this graphic.

KREI

연구 담당

김상효 | 부연구위원 | 연구 총괄

이계임 | 선임연구위원 | 추진체계 구축방안 도출

임소영 | 부연구위원 | 해외사례 및 식생활교육 연계방안 도출

허성윤 | 전문연구위원 | 자료 수집 및 분석

이욱직 | 연구원 | 자료 수집

수탁연구보고 C2019-57

농식품마우처 추진체계 구축 연구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9. 11.

발행인 | 김홍상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동양문화인쇄포럼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농식품바우처 추진체계 구축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1월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 상 효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이 계 임 (선임연구위원)

임 소 영 (부연구위원)

허 성 윤 (전문연구원)

이 욱 직 (연구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11

3. 연구 내용 및 방법 24

제2장 국내·외 식품지원정책 현황과 시사점

1. 국내 관련 정책 현황과 시사점 29

2. 해외 주요국의 관련 정책 현황과 시사점 41

제3장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도입 방안

1. 기본 방향 69

2. 대상 가구 선정 72

3. 지원 금액 80

4. 지급 식품 83

5. 농식품바우처 활용률 제고 방안 85

6. 구축효과 최소화 86

제4장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타 정책과 연계

1. 농식품바우처 추진체계 89

2. 타 정책과 연계방안 111

부록

1. 2020년 시범사업 추진(안) 137

2. 농식품바우처 지원 국회토론회 주요 내용 141

3. SNAP 신청서 양식 201

4. 농식품바우처 가맹점 신청서 양식(안)	㉞
참고문헌	209

제1장

<표 1-1> 취약계층 1인당 지출수준(2016) 2

<표 1-2> 취약계층의 권장량 대비 영양소 및 에너지 섭취 비중 3

<표 1-3> 취약계층의 건강 관련 인식수준 비교(평균) 3

<표 1-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가 소비군별 1인당 실질지출액에 미치는 영향 4

<표 1-5>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으로 인한 연간 의료비 절감액 추산 결과 6

<표 1-6>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전 산업 취업유발효과 6

<표 1-7> 식품류별 지출액 증감 분석 6

<표 1-8> 농식품바우처 지원으로 인해 기대되는 연간 국내산 농축산물 수요 증대 효과 ... 7

<표 1-9> 미국 식품지원프로그램의 식품 섭취 및 식생활 영향 분석1... 2

<표 1-10> 방문 대상기관72

제2장

<표 2-1> 2017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4... 3

<표 2-2> 복지 관련 식품지원제도7... 3

<표 2-3> 건강 관련 식품지원제도(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8... 3

<표 2-4> 광역시도의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제도 운영 현황9... 3

<표 2-5>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 방식별 예산 운영 현황0... 4

<표 2-6> 푸드플랜 연계 지원사업 현황1... 4

<표 2-7> SNAP 혜택을 받기 위한 총소득 및 순소득 기준3... 4

<표 2-8> 가구원수별 최대지원금액(MA)5... 4

<표 2-9> SNAP 참여율(FY2010-FY2016)1... 5

<표 2-10> SNAP 지원규모 및 비용(2019년 7월 5일 기준)2... 5

<표 2-11> WIC 월 최대 식품 지원량(아동, 여성)0... 6

<표 2-12> WIC 월 최대 식품 지원량(영아)1... 6

<표 2-13> WIC 월 평균 참여인원 및 운영비용	2· 6
<표 2-14> WIC 월 평균 참여인원 및 운영비용	4· 6
<표 2-15> 식품 지원 국가의 지원 규모 및 지원 내용	7· 6

제3장

<표 3-1>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도입 및 추진 기본 방향	9· 6
<표 3-2> 농식품 지급 방식 비교	07
<표 3-3> 농식품 지급 방식별 비교	07
<표 3-4> 영양교육 및 식생활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한 평가	1· 7
<표 3-5> 취약계층의 1인당 소득 및 소비지출 비교	2· 7
<표 3-6> 식품류별 취약계층 1인당 지출수준	4· 7
<표 3-7> 취약계층의 식생활 불안정 비중	5· 7
<표 3-8> 취약계층의 권장량 대비 영양소 및 에너지 섭취 비중	6· 7
<표 3-9>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부족자 비중	7· 7
<표 3-10> 취약계층의 건강 관련 인식수준 비교(평균)	8· 7
<표 3-11> 취약계층의 건강 관련 인식수준 비교(평균)	8· 7
<표 3-12>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식품비 및 전체 소요예산 추정(연간)	9· 7
<표 3-13> 지원 수준 대안 비교(1인 1개월 기준)	1· 8
<표 3-14> 가구원 수별 지급 금액 산출	2· 8
<표 3-15> 식품류별 바우처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정도 평가	3· 8
<표 3-16> 지원 대상 품목의 적절성 평가	4· 8
<표 3-17> 해외 연구 구축효과 사례	7· 8

제4장

<표 4-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산하기관 및 기능	2· 9
<표 4-2> 농식품바우처 전담기관 기능별 주요 역할 및 소요 인력	5· 9

<표 4-3> 농식품바우처 식생활 교육 추진방법별 기대효과	001
<표 4-4>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최초 1년차 월별 추진계획	301
<표 4-5> 식생활교육네트워크 주요 교육내용	Ⅲ
<표 4-6> 농식품부 지정사업	13
<표 4-7> 지자체 자율사업	1
<표 4-8> 강원네트워크 2019년 사업계획	4
<표 4-9> 춘천네트워크 2019년 사업계획	5
<표 4-10>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선도지자체 선정 현황	421
<표 4-11> 전주 푸드플랜의 내용	8
<표 4-12> 「지역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에 포함된 연계사업 리스트	131
<표 4-13>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지원분야별 주요 정책사업	331
<표 4-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531
<표 4-15> 농어촌상생 사업모델 유형	6

부록

<부표 1-1> 가구원 수별 지급금액	7
<부표 1-2> 생계급여 대상자(2017년 12월 기준)	81
<부표 1-3> 특정 가구 유형별 가구 수 및 비율	81
<부표 1-4> 지역구분별·유형별 가구 수 및 비중	81

제2장

<그림 2-1> 식품지원 관련 법률 현황	43
<그림 2-2> SNAP 바우처 사용처 현황	74
<그림 2-3> 파머스 마켓/직거래 농업인 수 및 바우처 사용액	84
<그림 2-4> EBT 관리 홈페이지	94
<그림 2-5> 연도별 SNAP-Ed 예산(FY1992-FY2020)	85
<그림 2-6> Healthy Start 종이 바우처	66

제4장

<그림 4-1>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흐름	9
<그림 4-2> 에너지 바우처 전담기관 및 조직	9
<그림 4-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체계	61
<그림 4-4> 지역 푸드플랜으로의 생산-소비구조 변화	21
<그림 4-5> 푸드플랜의 위상	12
<그림 4-6> 지역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321
<그림 4-7> 지역 푸드플랜의 일반적인 구성의 예	521
<그림 4-8> 서울 푸드플랜의 미션	8
<그림 4-9>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체계도	921
<그림 4-10>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정책목표(2020)	31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논의 배경과 필요성

■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및 영양 섭취 개선에 국가 차원의 관심 필요

○ 취약계층은 식품소비 지출액이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데, 이는 이들이 섭취하는 식품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함. 섭취하는 식품의 양적, 질적 수준의 저하는 영양 섭취 불균형과 연결됨.

- 취약계층은 대부분의 식품류에서 지출액이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내는데,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전체 평균의 55.3~60.3%)는 물론 중위소득의 30% 이상~40% 미만인 그룹(전체 평균의 68.5%)과 중위소득의 40% 이상~50% 미만인 그룹(전체 평균의 79.5%)도 전체 식품소비 지출액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표 1-1 취약계층 1인당 지출수준(2016)

단위: 원/월, %

구분	전체		중위소득 30% 미만				중위소득 30% 이상~40% 미만		중위소득 40% 이상~50% 미만		중위소득 50% 이상	
			사회수혜금 혜택		사회수혜금 비혜택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식품비 지출	370,291	100.0	204,819	55.3	223,137	60.3	253,770	68.5	294,272	79.5	420,902	113.7

주: 지출액은 명목금액이며, 기준년도는 2016년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이계임·김상효·임소영·허성윤·한정훈(2019).

- 취약계층은 영양 섭취 수준이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건강 악화 위험에 노출된 상황임.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40~50% 미만일 경우 에너지뿐만 아니라 칼슘과 비타민류의 영양소가 권장량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 식품소비의 양적 질적 수준이 저하되어 영양 섭취 상태가 불균형해지면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식생활 관련 질병에 노출될 우려 또한 증가함.
 - 기초생활수급자 10만 명 당 영양실조 진료자 수(2015)는 국민 전체 평균 대비 약 4.8배 수준임.
 - 취약계층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율, 저작불편, EQ-5D(건강 관련 삶의 질 측정지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나, 중위소득 40% 미만 계층의 건강상태가 크게 취약하며,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도 50% 이상 계층에 비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중은 중위소득 30~40% 미만 계층의 경우 23.2%로 중위소득 50% 이상 계층의 11.3%에 비해 두 배 이상

표 1-2 취약계층의 권장량 대비 영양소 및 에너지 섭취 비중

단위: %

구분	전체	중위소득 30% 미만/수급자	중위소득 30% 미만/비수급자	중위소득 30% ~ 40% 미만	중위소득 40% ~ 50% 미만	중위소득 50% 이상
에너지(ERR 대비 %)	99.7	86.6	93.3	90.5	96.5	101.7
단백질(RI 대비 %)	141.4	107.3	111.0	116.2	135.4	147.3
칼슘(RI 대비 %)	64.2	47.6	58.8	54.5	60.6	66.5
인(RI 대비 %)	149.5	109.8	126.5	127.3	140.0	155.1
철(RI 대비 %)	166.2	142.6	193.2	160.8	160.2	167.1
비타민 A(RI 대비 %)	111.5	81.5	98.2	88.1	113.9	115.7
티아민(RI 대비 %)	181.3	144.2	153.3	154.5	178.7	187.1
리보플라빈(RI 대비 %)	109.1	76.5	84.1	85.6	103.1	114.5
나이아신(RI 대비 %)	113.6	80.9	89.1	91.5	106.7	118.8
비타민 C(RI 대비 %)	105.1	70.6	98.9	84.9	104.6	109.0

주: Recommended Intake(RI)는 권장섭취량, Estimated Energy Requirement(EER)는 필요추정량, Adequate Intake(AI)는 충분섭취량임.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5년도 원자료 분석;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

표 1-3 취약계층의 건강 관련 인식수준 비교(평균)

단위: %

구분	전체	중위소득 30% 미만/수급자	중위소득 30% 미만/비수급자	중위소득 30%~40%	중위소득 40%~50%	중위소득 50% 이상
주관적 건강상태	13.9	35.4	26.6	23.2	17.1	11.3
저작불편	20.3	41.8	40.2	33.8	28.7	16.5
EQ-5D	0.95	0.82	0.88	0.90	0.93	0.96

주 1) 주관적 건강인지는 조사대상자가 평소 스스로의 건강을 '매우 나쁨' 또는 '나쁨'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2) 저작불편은 조사 시점에서 치아나 틀니, 잇몸 등으로 저작(씹기)불편을 느낀 비율을 의미

3) EQ-5D는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과 불편, 불안과 우울 등 5개 항목으로 구성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2016년도 원자료 통합분석; 이계임·김상효·임소영·허성윤·한정훈(2019).

○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품소비 지출을 늘릴 여유가 없어 영양 섭취 불균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상태 악화나 식생활 관련 질병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는 취약계층에게는 건강기대수명 및 삶의 질 저하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국가 전체로서는 국가 의료비용 부담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의미하므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임.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지원제도의 효과는 의문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식생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사업들이 취약계층에 충분한 식생활 및 영양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 식품지원제도에 투입되는 예산 총액은 1조 9,000억 원(2016년 기준) 규모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현금보조(생계급여)가 80.5%에 달하여 현금지원 의존도가 높음.¹⁾
 - ‘한국복지패널’ 원시자료(2011~2015년간)를 분석한 결과, 생계급여 중에서 식품비가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나 실제 취약계층의 식품소비와 영양섭취를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이며, 생계급여 형태로 지원되는 식품비 지원금이 상당 부분 식품비 이외로 지출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집단이 비수급집단에 비해 식품 지출액이 낮았으며, 이 차이(8,442원)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반면, 교육비(20,767원) 지출액, 피복·신발·가구·가사(18,568원) 지출액, 수도·광열·주거(25,931원) 지출액은 수급집단이 비수급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분석에서도 생계비 지원 수급 여부가 취약계층의 주요 질병 의사 진단 여부나 영양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²⁾

표 1-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가 소비군별 1인당 실질지출액에 미치는 영향

구분	식품	주거/광열/수도	가구/가사/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통/통신/교양오락
PSM	-0.8442*	+2.5931***	+1.8568***	-4.1339***	+2.0767***	1.6746
IPW	-1.1230**	+3.2977***	+2.0674***	-3.6065***	+3.2259*	6.0171

주: *** p < .01, ** p < .05, * p < .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2011~2015년도 원자료 통합분석;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

1)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 pp 69~70.

2) 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2018), pp 45~55 내용을 정리함.

■ ‘현물지원’ 형태의 농식품바우처의 높은 기대효과³⁾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지원이 실제 농식품 소비를 증대시켜 대상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수준과 건강상태를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현물을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이는 국내 농업의 수요기반 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 현물지원은 취약계층이 실제로 섭취할 농식품 현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식생활을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영양 및 건강상태 개선에 효과적
 - 또한, 현물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국내산/지역산 농산물 소비를 지속할 수 있게 되어 국내 농업의 관점에서는 탄탄한 수요기반을 형성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푸드플랜이나 식생활교육 등 관련 정책의 관점에서는 상호 연계 강화를 통한 정책 시너지효과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수행된 정책 연구(이계임 외 2018; 2019)에서 분석한 농식품바우처 지원의 기대효과는 다양함. 국민 건강의 보장과 건강한 미래 세대 약속, 불평등도 개선, 국가 의료비용 절감, 농식품 소비 증진과 농업의 지속적 성장, 도-농 간 협력체계 마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식생활교육과의 시너지 효과, 식생활 및 인식 개선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첫째, 소비의 불평등도 개선효과가 기대됨(6만 원 지원 기준).
 - 식품소비 지출액 기준 지니계수 0.293 → 0.287
 - 피케티(Piketty) 접근법 기준 식품소비 지출액 상위 10~50%에 해당하는 집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9%에서 51.5%로 0.4%p 감소하는 반면, 하위 50%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9.3%에서 29.9%로 0.6%p 상승

- 둘째, 취약계층의 의료비용을 절감해 줄 것으로 기대됨.
 - 연간 총 1,052억~2,045억 원의 의료비를 절감
 - 130만 가구 대상 지원금액 6만 원, 구축효과 0.2 가정 시

³⁾ 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2018), 이계임·김상효·임소영·허성윤·한정훈(2019)에서 발췌하여 재정리함.

표 1-5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으로 인한 연간 의료비 절감액 추산 결과

구축효과 시나리오	월평균 농식품 바우처 지원 금액 시나리오 (단위: 원)	연간 가구 의료비 절감액 (A) (130만 가구 대상, 단위: 백만 원)		연간사회적의료비 절감액(B) (단위: 백만 원)		총 의료비 절감액 (C) = (A)+(B) (단위: 백만 원)	
		MPS=0	MPS=1	MPS=0	MPS=1	MPS=0	MPS=1
0.2	60,000	38,497	74,857	66,686	129,670	105,183	204,527

자료: 이계임·김상효·김부영·김다혜(2018)

○ 셋째,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과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연간 순수 식품비 2,200억 원 규모로 시행, 소득분위 1/10분위가 지원대상으로 가정 시
- 소비 순증가 462억 원; 시나리오별⁴⁾로 1,164~1,18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872~2,892명의 취업유발효과 기대

표 1-6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전 산업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

구분	농식품 소비 증가 대비 다른 재화/서비스 증가 비율			
	(10, 0)	(8, 2)	(5, 5)	
정책 대상 신선식품 대비 가공식품 비율	(10, 0)	2,892	2,484	1,872
	(7, 3)	2,158	1,897	1,505
	(5, 5)	1,668	1,505	1,260

자료: 이계임·김상효·김부영·김다혜(2018)

○ 넷째, 식품소비 지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소비의 양적, 질적 개선이 가능함.

- 농식품바우처 지원 전과 후 비교 시 통제집단에 비해 전자바우처의 경우 약 33,841원 증가; 종이바우처의 경우 22,644원 증가

표 1-7 식품류별 지출액 증감 분석

구분	식품비 전체	과일	채소	곡물	우유	육류	기타
전자바우처 (vs. 통제집단)	33841**	9797.7***	11178.4**	17852.8***	3509.8***	-4198.4	-4299.4
종이바우처 (vs. 통제집단)	22644	8343.2***	8905.1*	11936.0***	3091.9***	-815.6	-8816.7

주: * p<0.10, ** p<0.05, *** p<0.01.

자료: 이계임·김상효·임소영·허성윤·한정훈(2019)

4) 정책 대상자가 가구소득 1/10분위이며, 신선식품만 지원함을 가정함(이계임 외, 2018).

○ 다섯째, 농축산물 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기대됨.

- 1,950억 원 수요 증대 효과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제외하고 5만 원을 지급할 경우

표 1-8 농식품바우처 지원으로 인해 기대되는 연간 국내산 농축산물 수요 증대 효과

단위: 가구, 백만 원

대상가구		가구 수	과일	채소	곡물	우유	전체
3만 원 기준 (1인당)	1.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	230,289	271	309	493	97	1,170
	2.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65세 노인 있는 가구	140,595	165	189	301	59	714
	3.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17세 이하 있는 가구	38,088	45	51	82	16	194
5만 원 기준 (1인당)	4.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	230,289	451	515	822	162	1,950
	5.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65세 노인 있는 가구	140,595	276	314	502	99	1,191
	6.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17세 이하 있는 가구	38,088	75	85	136	27	323

주 1) 생산액 기준이 아닌 가구 지출액 기준임.

2) 농식품바우처로 5만 원을 지원할 경우 3만 원을 지원한 본 실증연구 결과와 비례적으로 지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고 수요 증대 효과를 계산함.

자료: 이계임·김상효·임소영·허성윤·한정훈(2019)

○ 여섯째,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될 것임.

- 실증연구 결과, 바우처 수혜 전과 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3.31점 → 3.64점으로 증가

○ 일곱째, 식생활 및 식생활인식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식사횟수, 식사 규칙성, 가족과 식사, 균형 잡힌 식단 구성 측면에서 개선

1.2.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2017년도에 추진됨. 또한, 제안된 도입방안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본 사업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기대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후속으로 추진됨.

- 국정과제 83-4.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품질좋은 먹거리 공급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제로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2018.2)가 수행되었으며, 농식품바우처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도입 방향, 지원 대상자 선정 방식, 지원 금액 수준, 지급식품, 대상 업체, 지급 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후속과제로 추진된 「농식품바우처 지원 실증연구」(2019.3)에서는 전자바우처와 종이바우처 형식의 사업설계를 2개 지역(춘천, 완주)에 실증 적용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과 당면 과제를 파악함.
- 한편, 실제 본사업 진행 시 제안된 도입방안을 전국 규모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방향 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자체별로 활발하게 수립되고 있는 지역 단위 푸드플랜과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식생활교육과의 연계 필요성도 제시됨.
-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식품지원제도(SNAP, WIC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및 시사점 도출의 필요성 뿐 아니라, 사업의 추진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세부 추진체계와 발전 방안을 도출하여 본사업 시행을 준비하는 것임.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체계 마련, 지역푸드플랜 및 식생활교육 등 관련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식품지원제도 관련 해외 선진사례 조사/연수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본사업 운영을 위한 시사점 도출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사업화 지원(공청회, 정책토론회 등 개최)

■ 농식품바우처 세부 추진체계 구축

○ 시범사업 및 본사업을 전국 단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의 식품지원제도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지원자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원자 모집 시 전담기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기존 복지정보시스템(행복e음) 통합 운영 여부 결정)
- 지원자 선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 여부 및 방안
- 시범사업에서 구체적인 지급 방식 결정(전자/종이바우처 병행 vs. 전자바우처만)
- 특정 계층 대상 지급 방식(고령자, 지리적 취약계층 등)
- 바우처 카드 제작 관련(별도카드 vs. 기존 복지카드와 통합)
- 지원대상 품목에 육류 및 계란 등 포함 여부
- 참여 유통업체 선정 기준, 가맹점 선정 기준
- 낙인효과 방지 및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유통업체 대상 개선과제
- 전자바우처 POS시스템 및 결제/정산시스템 구축 시점 및 필요 사항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자격 요건, 기준, 역할 정립
- 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 평가 방안, 환류 체계 구축 방안 및 담당 기관(혹은 위원회 구성)
- 이 모든 단계들의 타임라인(timeline)에 대한 결정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 연계 방안 마련

○ 바우처 지원사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려면 각종 관련 정책/사업들과 연계가 필요할 것이므로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역푸드플랜과 연계: 취약계층 식품지원을 포괄하는 정책 개념으로서 국가푸드플랜

및 지역푸드플랜과 연계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지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 농축산물 수요 및 공급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식생활교육과 연계: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의 영양상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식품의 현물지급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습관을 배양하도록 돕는 식생활교육이 병행 추진될 필요가 있음. 농식품바우처 지원 실증연구에서는 식생활교육이 농식품바우처 활용을 증가시키고, 식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함. 특히 농식품바우처 지원이 시·군 단위로 운영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기반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관련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⁵⁾ 2020~2024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과 연계하는 것은 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추진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실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사업의 설계 뿐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기대효과에 대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설득력 있는 사업의 설계: 전문가 대상 포럼, 사업 담당자 의견 수렴
 - 대국민 공청회 혹은 국회 토론회 개최 추진
 -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현물지원을 지속한 타 국가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바우처 지원사업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 식품지원제도 관련 해외 선진사례 조사/연수 지원

- 식품지원제도 분야 선진사례인 미국의 SNAP, WIC 등에 대한 심층적인 문헌연구가 필요하며,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 심층면접을 통해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⁵⁾ 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2018) p 164.

2. 선행연구 검토

2.1.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 연구

- 김태완 외(2017)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근거하여 수행된 연구로 1)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 2) 실태조사 및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한 급여수준의 적정성 평가, 3) 대상 포괄성, 급여 적정성, 급여 효과 및 효율성 측면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하였음. 연구 결과는 차후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 문현경 외(2012)는 경제수준 및 연령·성별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식료품의 품목과 수량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식품비를 산정하고, 식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식단을 작성하였음. 경제수준은 4개 그룹, 연령·성별 그룹은 10개 그룹으로 나누어 총 40개 그룹에 대한 식품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영양섭취 기준과 식품소비 패턴을 이용하여 마켓바스켓을 작성하였음. 도출된 연구 결과는 일반인이 실생활에 적용하거나 영양평가 및 영양교육 등 정책 도구를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음.
- 황지윤·심재은·김기량(2014)은 식생활 여건이 열악한 노인계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식생활 및 영양지원 정책을 제안함. 제4기,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농촌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섭취 수준을 분석하고, 한국 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식품 미보장 수준을 분석하였음. 식품지원 담당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농촌 지역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지원에 필요한 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였음.
- 김성용 외(2003)는 식품구매력이 부족한 영세민의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식품보조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를 수행함. 영세민의 식생활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식품공급안전성 상태, 식품소비 행태, 영양섭취 및 건강실태 분석을 하여 식품구매력

부족으로 인해 식품공급이 불안정하며 영양소 섭취 부족을 초래함을 파악함. 또한 차상 위계층에 대해서도 식품비를 보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 기준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적정 식품보조액 산정은 한국인의 영양권장량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영양섭취가 가능토록 함.

- 양정선(2013)은 영양플러스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보충식품 패키지 구성이 다양하지 않아 수혜자의 만족도가 낮았고, 배송업체 선정 시 최저입찰제로 식품 공급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식품의 품질 수준이 낮은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혜자가 식료품점을 방문하여 직접 보충식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제언함. 이러한 방법은 다양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신선도를 향상시켜 수혜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이를 위해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 도입의 가능성을 모색함.
- 이윤나 외(2014)는 2008년부터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양플러스사업의 진행 현황 검토를 통해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함.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체계, 병행 추진 중인 영양교육 현황, 수혜 대상 선정 기준, 보충식품 지원 방식, 성과 지표, 사업참여기간 제한 등을 재검토하여 운영 및 사업체계 개선안을 제안하였음.
- 이승미·이의정(2015)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아동급식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2011년부터 동결되어 있는 아동급식 지원 단가 문제, 꿈나무카드(급식카드) 이용에 따른 영양불균형 문제, 낙인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선행연구와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 서울시의 아동급식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 및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수행하여 아동급식 지원 정책 방향을 제안함.
- 최영운·한두봉(2015)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무료급식 사업 참여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4기 및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음. 매칭기법(P propensity Score Matching과 Coarsened Exact Matching)을 통하여 계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료급식 혜택을 받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영양소 섭취가 낮

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 노인의 영양 강화에 초점을 둔 국가적인 식품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함.

- 이계임 외(2012)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장기적인 식품지원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소비와 영양섭취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식생활 지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단기적으로는 식품소비 및 영양섭취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선택적인 식품지원제도를 실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정책을 통합하여 식품바우처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언급함. 새로운 농식품 지원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지원 대상, 운영체계, 추진체계 등을 제안함.
- 김현주(2016)는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여 영양플러스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고, 사업 수혜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효율성과 효과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연구함. 화폐가치로 나타낼 수 있는 효과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고, 영양섭취 수준 개선, 영양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향상 등 정성적 효과는 사업 참여의 전후를 비교하여 도출함.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예산 확대와 정서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사업 운영 방식의 개선점을 제시함.
- 노대명 외(2013)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로 상대기준선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장성과 근로 유인, 법제화, 전달체계 개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의 개편 방향 등을 검토하였음.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법제화 과정에서 보장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고 각 급여체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Carlson et al.(2007)은 푸드스탬프의 최대혜택금액을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절약 식품플랜(Thrifty Food Plan)을 2006년판으로 개정하였음. 절약식품플랜은 가정에서 구매한 모든 식품이 가정 내에서 소비된다는 가정 하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강 식단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식료품의 품목과 수량을 대상자의 성·연령별로 15개 유형으로 나

누어 제시함. 2006년판 절약식품플랜의 주요 특징은 1) 식품 섭취, 영양 함량, 식품 가격 등에 대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고, 2) 저소득층 가구가 식품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식품 가격을 대부분 적용하고, 3) 음식을 장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였다는 점임.

-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은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섭취 실태 그리고 정부의 농식품 지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농식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체계적인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기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의 병행 실시, 생산자 단체의 전자결제 지원 프로그램 도입, 농식품 지원 플랫폼 마련 등을 제시함.

2.2. 바우처 연구

- 정광호(2010)는 바우처의 도입 배경, 국내외 바우처 사용 현황, 바우처의 운영체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바우처 도입에 따른 효과와 유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바우처 사용의 사례로 식료품, 보육, 주택, 직업훈련, 문화 5개 부문에서의 도입 배경, 운용 현황 및 성과에 대해 논의하였음.
- 김기원(1994)은 기아와 영양실조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식품권제도를 고찰하여 한국형 식품권제도 모형을 개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연구함. 식품권제도 실시에서 발생하는 외부편익은 잉여식품처분, 농업경제강화, 농산물유통활성화 등이 있음. 효과성 측면에서는 식품권이 우월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현금급부가 우월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효과성이 우선되어야하므로 식품권제도가 선호됨.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함.
- 최성은·최석준(2007)은 다양한 분야의 바우처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평가요소와 평가방안을 제시하였음. 바우처사업의 도입단계에서는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 설계단계에서는 정책 목표와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바우

처방식의 적합성 등의 요소의 평가가 필요함. 사후적인 사업 평가시 고려할 요소는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생활수준의 유지, 형평성, 시장경쟁의 강화 등이 있음. 이 연구에서는 차등보육료보조사업의 사례를 통해 바우처와 현금지원의 효과가 상이한지를 분석함. 추정 결과, 보육시설 수요 증대 측면에서 바우처 방식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현주 외(2013)은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의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 우선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실태와 지원방식의 적합성을 분석함. 사업 효과의 추정으로는 사망 감소 효과(저온으로 인한 사망 감소 효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의료비 절감분으로 측정), 소득과 에너지소비 불평등 감소효과(지니계수의 변화), 거시경제적 효과(에너지소비와 재화와 용역의 소비의 증대효과)를 추정함.
- 박광수·김수일(2009)은 현재 실행 중인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소득층에 적정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도입을 제안함. 먼저 에너지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적정 수준의 에너지 필요량을 추정하였음. 표준가구로는 4인을 기준으로 주택형태(아파트, 단독주택)와 난방연료(석유, 도시가스)를 조합하여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였는데,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의 에너지 소비량보다 높은 추정치가 나타남. 두 추정치의 차이만큼을 바우처 지급을 통해 보조한다면 현재 부족한 광열비 수준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박홍엽(2013)은 현재 시행 중인 바우처사업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함.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선택을 강화할 수 있는 수요 조사가 필요하고 수혜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함을 주장함. 집행에 있어서는 바우처의 부정 사용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집행실적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함. 성과에 있어서는 성과목표달성률이 낮은 사업은 성과제고 노력이 필요하고, 성과목표를 낮게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이루려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제기함.

- 강창현·문순영·김기창(2012)은 바우처의 기본 원리와 정책 목표, 바우처 사업 시행과정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바우처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함. 바우처의 기본원리는 소비자보조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작동 조건과 원리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관련 지표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김윤수·박민아(2013)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8개 사회서비스 분야 바우처 사업과 다른 5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9개 바우처 사업의 운영 체계 및 현황을 조사하였음. 이를 통해 각 바우처 사업 간의 연계 및 통합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유사한 사업들 간에 통합 관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으며, 유사한 사업들 간의 단계적 통합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 김초일 외(2007)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정착시키기 위해 사업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우선 시범사업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른 사업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미국의 WIC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분석하였으며, 가정배달 형태가 아닌 바우처 제도를 이용한 보충식품 전달체계, 사업관리 조직체계, 모니터링 방안 등을 검토·제안하였음.
- 윤희숙 외(2014)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로서 정책 목표와 대상의 명확성, 타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 필요성, 전달체계로서 바우처 방식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였음. 또한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 시행 시의 비용과 효과를 각각 1,240.6억 원, 335.9억 원으로 추정하고 효과/비용 비율을 0.271로 도출함. 총사업비를 1,240억 원으로 가정하여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업 시행점수가 0.539로 나타나 사업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이삼식 외(2013)는 양육비 경감의 일환으로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 적절성, 효과성, 중복성을 검토하고,

지원대상, 지원품목, 지원수준, 예산규모, 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안을 제시하였음.

- 함영진 외(2015)는 2014년 이전까지 보건복지부의 ‘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아이즐거움카드’로 분리되었다가 2015년에 통합된 ‘아이행복카드’의 도입 효과를 분석하였음. 효과 분석은 설문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카드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성과 분석, 비용편익 분석을 이용한 경제적 효과 검토로 구성되어 있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73.3%가 카드 통합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카드사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보다는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비용편익 비율을 3.33으로 추정하여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 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김다혜(2018)는 현금지원 방식인 현행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식품소비의 증가와 영양섭취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현금지원 방식이 아닌 바우처 형태의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9.3%가 농식품을 지급하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도입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통해 경상소득 및 식품소비 지출액 기준 불평등도를 소폭 감소시킨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함.
- 이계임·김상효·임소영·허성운·한정훈(2019)은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실증 연구를 위해 춘천시와 완주군을 대상으로 2개월간 1인 가구는 월 3만원~ 4인 이상 가구는 6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예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도 도입 시의 효과를 계측함. 이 연구는 바우처 사업의 운영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시범사업과 본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함.
- 바우처 도입의 효과는 식품비 지출 증가, 농축산물 수요 확대효과, 식생활 교육의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한 거점 판매점 중심의 배송지원 필요성과 대상품목의 확대, 농식품바우처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전담기관 지정,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을 주장하였고, 각 주체별 역할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2.3. 미국의 식품/영양 지원제도 운영 현황

○ Aussenberg and Colello(2017)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식품 및 영양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은 취약계층, 어린이/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경제적/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이 운영하는 식품지원프로그램은 농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⁶⁾

- 최초의 식품지원프로그램은 푸드스탬프(Food Stamp)이며 1940년대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1달러어치의 주황색 스탬프를 구입하면 50센트어치의 파란색 스탬프를 추가로 제공, 이 파란색 스탬프의 용도는 ‘잉여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
- ‘공립학교점심프로그램’의 시초가 되는 프로그램은 1940년대 세계 대공황 시대에 농가경제를 부양했던 농산물기부프로그램(commodity donation program)
- 잉여농산물 비축/수매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 농무부가 구매한 농산물을 보너스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비상식품지원프로그램(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과 일부 어린이영양프로그램
- 학교에서 지역 산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농무부 소관 법안들(2014년 농업법, P.L. 113-79; 어린이영양법, P.L. 111-296)에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Farm to School Program)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

2.4. 미국의 식품지원사업 효과 분석

○ 다수의 연구에서 식품지원사업의 효과와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본 연구와 관련 있는 분야는 1) 소득 및 식품지출액에 미치는 효과, 2) 식품섭취 및 식품미보장성에 미치는 영향, 3) 건강/영양/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음.

⁶⁾ “A Short History of SNAP”(https://www.fns.usda.gov/snap/short-history-snap: 2017. 3. 3.).

■ 소득 및 식품지출액에 미치는 효과

- Fraker(1990), Levedahl(1995)는 식품지원제도에서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의 한계식품소비성향을 추정하여 비교하였음. 현금지원의 한계식품소비성향은 현물지원의 한계식품소비성향보다 작은 수준임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론임.
- Schanzenbach(2002)는 무작위실험을 이용하여 통제집단에게 푸드스탬프 현물혜택에 상응하는 현금혜택을 제공하여 비교분석함. 분석 결과, 현물지원의 한계식품소비성향과 현금지원의 한계식품소비성향 간에 5%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그 크기가 미미하다고 주장함.
- Hoynes and Schanzenbach(2009)는 준실험적 방법을 이용하여 푸드스탬프 시작 당시(1961~1975년) 약 3,000여 참여 카운티와 비참여 카운티의 시간에 걸친 식품소비에서의 차이를 이중차분방법(difference-in-differences)으로 추정함. 분석 결과,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의 한계식품소비성향이 유사함을 발견함.
- Hoynes et al.(2016)는 SNAP과 식품소비의 관계를 규명하였음. 신고전학파의 분석모형을 기반으로 미시이론 분석을 수행하고, 소비자지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인구 집단, SNAP 참여자, 저소득-SNAP 비참여자 그룹별로 SNAP 프로그램이 식품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Hanson et al.(2002)는 CGE 모형을 사용하여 식품지원사업에서 정책변화가 경제나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분석 결과, 푸드스탬프 혜택을 줄이거나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식품 수요나 농산물 생산이 감소하고, 저소득가구로 이전되는 이전소득이 감소하며, 감소된 이전소득은 노동소득 증대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금지급의 효과는 주로 고소득가구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노동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Tiehen, Jolliffe, and Smeeding(2013)는 SNAP이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분석 결과, SNAP이 빈곤을 14~16% 가량 감소시켜 반빈곤화(anti-poverty)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SNAP이 비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빈곤화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극빈곤층과 어린이가 있는 빈곤 가구의 빈곤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함.

- USDA(2012)는 미국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식품지원프로그램인 SNAP이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빈곤지수(빈곤율, 빈곤의 깊이 및 괴로움)를 이용하여 분석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양보조제도는 특히 미국의 아동과 비(非)대도시지역 취약계층의 빈곤의 깊이와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반면, 빈곤율을 기준으로 할 때 영양보조제도의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식품섭취 및 식품미보장성에 미치는 효과

- Mabli et al.(2013)는 SNAP 참여 여부가 가구의 식품보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음. 이러한 영향은 가구의 특성이나 가구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 Jensen and Wilde(2010)는 식품지원프로그램의 다양한 효과를 제시함. 1) 식품을 제공하고, 2) 영양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며, 3) 식품의 가격과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4) 궁극적으로 식품미보장성과 배고픔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함.
- Tanner(2013)는 증가하고 있는 SNAP 지출액/수혜자 수와 식품미보장성의 관계를 규명함. 분석 결과, SNAP 지출액이 팽창하던 시기인 2008~2011년 사이에 식품미보장성이 감소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SNAP 참여자들이 정부에 의존할 수 있음을 지적함.

표 1-9 미국 식품지원프로그램의 식품 섭취 및 식생활 영향 분석

저자(발간년도)	데이터	분석방법	종속변수
Arsenault and Brown(2003)	개인식품섭취연속조사(CSFII)	Multivariate Regression (통제집단/ 처치집단)	아연섭취
Bhargava and Amialchuk(2007)	푸드스텝프국가조사		1주간 영양소 섭취
Black et al.(2004)	NHANES		가구식품미보장성
Daponte et al.(2004)	Food Distribution Research project		
Hendricks et al.(2006)	2002 Feeding infants and toddlers study		과일/과자/디저트 등 섭취
Ishdorj et al.(2007)	CSFII	IV Method	우유를 통한 칼슘 섭취
Knol et al.(2004)	CSFII	Multivariate Regression (통제집단/ 처치집단)	식품다양성지수
Kranz(2006)	CSFII		섭유질 권장량 섭취(빈곤률 기준)
Kranz and Siega-Riz(2002)	CSFII		첨가당 섭취(빈곤률 기준)
Mendoza et al.(2006)	CSFII		식생활 에너지 밀도
Oberholser and Tuttle(2004)	US food security survey module		식품미보장성
Oliveira and Chandran(2005)	CSFII		다양한 식품 소비와 에너지 섭취량
Siega-Riz et al.(2004)	CSFII		에너지 섭취 비중(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가당 등), 과일, 채소 섭취빈도

주: USDA(2012)를 참고함.

■ 건강/영양/식생활에 미치는 효과

○ Lentz and Barrett(2013)는 영양 측면에서 국제적인 식품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분석함.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식품지원정책/프로그램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지원대상, 비용구조, 식품품질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짐을 발견함. 그 밖에 식품지원정책/프로그램의 효과는 지원대상 타겟팅, 부가성(additionality), 시기(seasonality), 시의성(timeliness), 인센티브 효과, 사회적 수용성, 정치경제적 고려 등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함.

○ Levedahl and Oliveira(1999)는 식품지원프로그램이 식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식품프로그램 참여가 저소득계층의 식품 소비량을 증가시켰으나, 식품의 품질에 대한 효과는 불분명함. 또한 식품 소비가 증가한다고 해서 더 건강한 식생활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음. WIC이나 학교점심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영양섭취는 증가했으나 식사품질 증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Gundersen(2015)는 식품지원프로그램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성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서술함. Wojcicki et al.(2009)과 Ollberding(2009)는 식품지원프로그램이 영양 관련 지식이나 식품표시 확인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Kreider et al.(2012)는 SNAP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기존 연구에서 통계·방법론적 문제가 잘못된 관계를 규명해 왔다고 지적하며, SNAP이 어린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림.
- Sapp(2002)는 CSFII 자료(24시간 회상)를 활용하여 식품지원제도가 식생활 품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건강식생활지수(HEI) 점수를 식생활 품질로 정의하고, 식품지원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식생활 품질을 향상시키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림.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푸드스탬프 참여가 식생활 품질을 향상시켰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못한 것과 일치함.
- Ver Ploeg(2009)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식품지원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건강식생활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함.

■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

- Canning and Stacy(2019)는 SNAP이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SNAP multiplier(승수)’라는 개념을 들어 SAM(Social Accounting Matrix) 승수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경제 침체기에서의 SNAP 지출 \$1 billion은 GDP를 \$1.5 billion 증가시켰으며, 13,560개의 신규 일자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2.5. 지역 푸드플랜(먹거리 전략) 관련 연구

- 정은미·최병옥·정천섭·정환열(2018)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책 실행에 필요한 사전적 연구로서 청양군(농촌형), 완주군(복합형), 유성구(도시형)의 3개 지역의 먹거리 체계를 분석하여 기대효과의 산정과 실행과제를 도출함. 지역 푸드플랜으로 인해 생산자의 총소득증가 효과와 이들의 소득증가로 인한 지역 소비증가 효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생산 조직화와 유통체계 정비, 관계형 시장의 창출, 도농상생의 원칙과 방향 설정의 필요성 등을 실행과제로 제시함.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2019)는 경기도의 먹거리 전략 발전을 위해 SWOT분석을 실시하고 경기도 먹거리 전략 추진 방향과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분야 150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함. 이 연구는 경기도의 먹거리전략 비전을 “도민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 받는 새로운 경기”로 설정하였으며, 1) 도민 누구나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 2)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먹거리 공공성 강화, 3)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 문화 조성, 4) 민관 합동의 먹거리 전략 실행체계 확보의 4대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실천과제를 제시함.

- 강원연구원·aT농식품유통교육원(2018)은 강원도 광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강원도 푸드플랜의 수립 방향을 제시함. 이 연구에서 제시된 수립방향은 1) 푸드플랜을 위해서는 푸드시스템 단계별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단계별로 충분한 객관적 분석이 선행, 2) 먹거리 관련 정책과 사업의 상호 연계, 3) 광역과 시군의 연계, 4)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5) 제도적 기반 마련, 6) 로컬푸드와의 연계 등임.

3.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연구 내용 개괄

○ 본 과제는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됨.

-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본사업 추진체계 마련
- 전문가 대상 포럼 운영 및 공청회/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 해외 선진사례 견학/조사를 통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상 시사점 도출
- 2020년 시범사업(안) 마련

3.2. 세부 연구 내용

■ 농식품바우처 지원의 논의 배경과 필요성

○ 논의 배경

○ 기대효과 및 필요성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 지원대상

- 지원자 신청 및 선정 방법, 지원자 신청 절차에서 전담기관, 중앙정부 및 지자체 협력 체계 및 역할분담, 기존 복지정보시스템(행복e음) 통합 운영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연계 여부 등

○ 지급 방식

- 지급방식(전자, 종이바우처 병행 vs. 전자바우처만), 특정 계층 지급 방식(고령자, 저리적 취약계층 등), 바우처 카드 제작(별도 카드 vs. 기존 복지카드와 통합)

○ 대상 품목 및 유통업체 관련

- 육류 포함 여부, 참여 유통업체 선정 기준, 가맹점 선정 기준, 낙인효과 방지를 위한 유통업체 교육, 부정사용 근절 방안

○ 전달체계 및 전담기관

- 중앙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전담기관, 식생활교육 담당 기관 등 역할분담 구체화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전담기관/연구기관의 자격 요건, 기준, 역할(사업 운영 및 관리,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자금 운용·관리·집행) 등 구체화
- 전자바우처 운영 시 POS시스템 및 결제·정산시스템 활용 가능성 및 개발 시점 구체화

○ 바우처 활용률 제고 및 구축효과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주요국 식생활 지원과 시사점

○ 미국의 식생활 지원과 시사점

- 미국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과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의 운영체계 조사
 - * 지원 대상, 지원 수준, 전달방식, 지원 조건 등 운영 현황
 - * SNAP 및 WIC의 참여 식료품점 선정 및 관리 절차
 - * 지역 내 농산물 소비와 SNAP 간의 연계 강화 조치
- SNAP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조사
 - * 운영 주체, 교육 내용, 교육 방식, 성과관리 등 운영 방식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유럽의 식생활 지원과 시사점

- EU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식품 및 생필품 지원사업(Fund for European Aid to the most Deprived: FEAD)
- 주요 유럽 국가에서 운영 중인 농식품 지원사업의 운영 체계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발전방안

○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설계 구체화

- 대상 지역 선정, 지원 규모 및 기간, 효과평가를 위한 표본조사 규모 및 방안(가계부 조사 vs. 스캐너 활용 등)

○ 지역푸드플랜과 연계 방안

- 지역푸드플랜과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연계 필요성 및 방안
- 지역푸드플랜 계획 수립 및 먹거리 정책 추진 사례 분석
- 지역푸드플랜과 농식품바우처 연계사업 모델 개발

○ 식생활교육 연계 및 활성화 방안

-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식생활교육 체계 현황을 파악하여 바우처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 교육 주체, 교육 대상의 범위, 교육 내용, 교육 방식, 예산 조달, 성과평가 등 구체적인 교육체계 운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제반 환경 및 요건 등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검토할 필요

○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예산 확보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홍보
- 지속적인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효과 평가 계획 수립

3.3. 연구방법

■ 농식품바우처 지원의 논의 배경과 필요성

○ 자료 수집 및 문헌 검토

-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사업 관련 자료 수집과 문헌 검토
- 취약계층 식생활 및 식품소비 관련 기존 문헌 및 관련 기관 자료 검토

○ 2018년 ‘농식품바우처 지원 도입방안 연구’, 2019년 ‘농식품바우처 지원 실증연구’ 심층 검토 및 평가

■ 주요국 식생활 지원과 시사점

○ 자료 수집 및 문헌 검토

- 국가별 식품지원사업 관련 자료 조사

○ 주요국 식품지원제도 및 식생활교육 관련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연수

- 식생활교육과 식품지원제도의 연계 현황 파악(SNAP-Ed 등)
- 미국 식품지원제도(SNAP, WIC 등) 운영 체계 조사를 위한 현지 출장

표 1-10 방문 대상기관

방문가능 기관명
국제식품정책연구소
메릴랜드 주 SNAP-Ed 담당기관 방문
SNAP-EBT사용 가능 파머스 마켓 방문
주미한국대사관 SNAP-authorized store 및 한인마트 방문
전미농민협회 방문
미국 농무부 농업유통국 방문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국 미팅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국 미팅
버지니아 주 SNAP-Ed 담당기관 방문

주: 상세 해외 연수 내용은 부록을 참조.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과 타 정책 연계

○ 자료 수집 및 문헌 검토

- 완주군을 포함하여 지역 푸드플랜 계획 수립현황 조사
- 국내·외 지역 푸드플랜 우수사례 조사
- 지역별 식생활 교육 현황 관련 자료 검토
-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 관련 문헌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전문가 대상 포럼 개최
- 식생활 교육 전담조직 관계자 면담(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 취약계층 대상 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면접조사
- 지자체의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 담당자 면담

○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일시: 2019.11. 4(월) 10:00~12:00
- 주제: 취약계층 식생활 이대로 좋은가? 농식품바우처 도입 및 정책방향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

국내·외 식품지원정책 현황과 시사점

1. 국내 관련 정책 현황과 시사점

1.1. 관련 법률체계

-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여 식품지원제도와 관련한 법률이 다원적인 행정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기본법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관련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약 20개의 개별법에 근거 조항이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법률로 식품지원과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로서는 불충분함. 그 밖에 관련된 법률로 「식생활교육지원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으나 성격상 식품지원 정책의 근거로는 한계가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목적 및 제7조에서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명시되지 않아 식품지원의 근거 조항으로서 불충분
 - 「식품산업진흥법」은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며 인증상품 및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장려하는 규정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정도로 표현하여 권고/장려의 의미가 약하며, 우수 식재료의 대상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식생활교육지원법」은 국민의 식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식품지원제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인 방향 및 계획 수립에는 식품지원 관련 법률 조항이 명시적으로 미포함
- 「양곡관리법」, 「낙농진흥법」, 「축산법」에 포함된 양곡, 우유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더러 제도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곤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은 고령층 등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을 함의하고 있으나, 법률의 적용 대상이 농어업인에 국한되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함에는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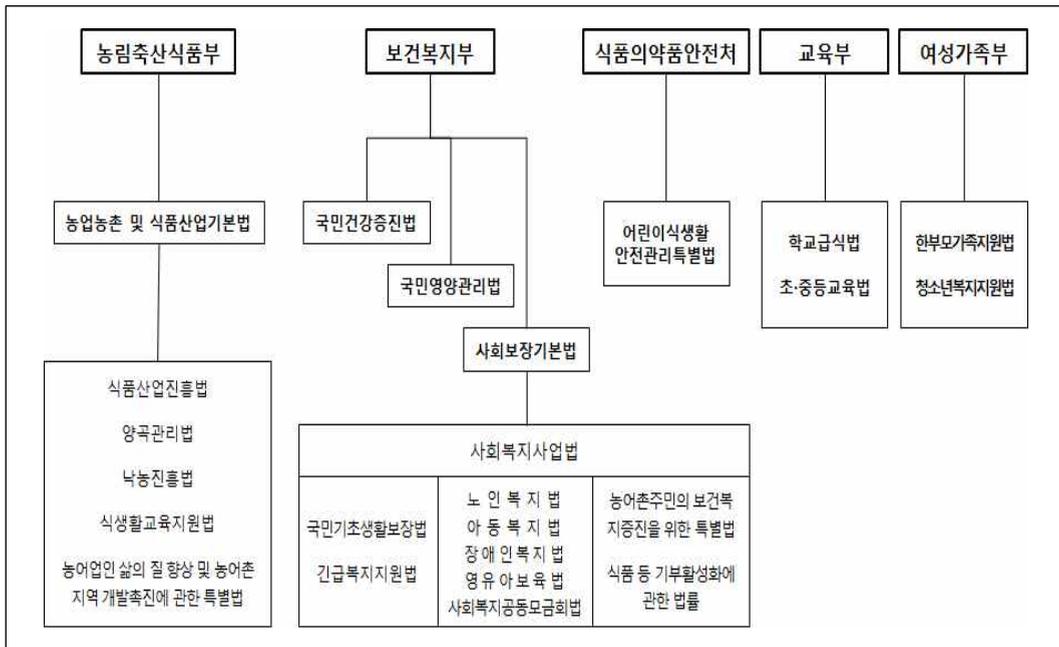
○ 보건복지부 소관의 법률은 복지와 영양관리로 구분됨. 「사회보장기본법」 산하에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복지 관련 법률을 구성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이 이들 법률을 관할함.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영양관리법」에 영양관리 관련 법률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법률로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기타 어린이 급식소 대상 영양관리 지원의 근거가 됨. 그 밖에 교육부의 「학교급식법」에는 급식경비 지원의 근거 조항이, 「초·중등교육법」에는 취약계층 학생 대상 급식비 등 지원 규정이 포함됨. 여성가족부가 소관부처인 법률(「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도 관련됨.

○ 현재 식품지원과 관련된 법률이 대부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다수 법률이 분산되어 다원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관련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제도 간에 연계가 쉽지 않은 상황임. 식생활, 영양,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하는 식품 지원 관련 유사 제도들을 기본법의 틀 안에서 담아내고 효과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림 2-1 식품지원 관련 법률 현황



자료: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 50).

1.2. 담당 중앙조직 현황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 관련 사업을 담당하며, 같은 부처일지라도 사업에 따라 소관 부서가 상이하여 제도 간 연계를 도모하기 어려움.
- 보건복지부는 1개 국과 2개 실에서 식품지원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건강증진국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수행되는 영양플러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며, 사회복지정책실과 인구정책실에서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푸드뱅크 등을 포함한 복지계획 전반과 노인, 아동 등 특정 생애주기 인구의 복지사업을 담당함. 영양지원 사업은 복지 분야와 별개로 운영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관 법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집단급식소의 영양관리 지원이 포함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함. 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에서 식생활 지원사업 전반을 담당하며, 식량정책과에서 정부양곡할인공급을, 축산정책과에서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농촌복지여성과에서 고령농업인 지원을 담당함. 식품산업정책과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학교 급식재료 공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

1.3.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지원사업 운영 현황

- 복지용 쌀은 2002년부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상가격에서 20% 할인된 가격 수준으로 공급되며, 보건복지부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9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구매를 지원하고 있음. 2016년 공급량은 6만 8,000톤 규모임.
 - 복지용 쌀이 공급되는 시설은 2003년 2월에 기초생활보장시설, 2002년 9월에 무료급식단체, 2012년에 경로당으로 확대
 - 기초생활보장시설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복지용 쌀이 공급되며, 무료급식단체는 82%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 경로당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상가격에 공급된 복지용 쌀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전액을 지원하여 지급

- 학교우유급식은 점심급식의 일부라는 개념으로 공급되어 원칙적으로 우유 급식비 전액을 보호자가 부담하는 유상급식 형태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영양공급 지원 차원에서 저소득가정(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등)은 축산발전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급식비를 지원함(1981년 이후).
 - 지원기준: 430원 이내/200ml, 연간 250일(국고 60%, 지방비 40%)
-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공급업체 등에 학교급식용 농축산물 원물 매취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을 일부 시행함. 법적 근거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두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직거래·계약재배 등)을 구축하여 우수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함임. 2016년 기준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공급업체 11개소에 개소당 평균 8억 원을 융자함.
- 농촌 지역의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의 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함으로써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함. 2014~2015년에 농촌복지여성과 주관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5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함.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에 응모하여 사업비를 신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함.
- ‘농촌 행복꾸러미’는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며, 재가노인 밀반찬 배달, 고령자 장보기 대행 등 공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함. 공모 대상은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이며, 2016년을 기준(4월 중순~11월 말)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1,000~2,500만 원을 지원함.

1.4. 보건복지부의 농식품 지원사업 운영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근거로 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일에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되면서 기존에 통합급여 형태로 지급되던 급여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 등으로 분리되어 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에 맞춰 차등 지급되고 있음. 대상자 선정 및 급여 기준은 개편과 함께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변경되었음.

- 생계급여 대상자의 선정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함.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30%의 차액

표 2-1 2017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소득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자료: 보건복지부(2017).

○ 아동급식지원은 2005년에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거주지역의 식품환경과 대상 가구의 식재료 구매 및 조리 능력을 고려하여 1) 급식소 급식(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2) 편의점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급식(쿠폰, 전자카드 이용), 3) 도시락 및 밀반찬 배달, 4) 부식 지원(라면, 양곡류 제외), 5) 식품권(인근에 급식소, 음식점이 없거나 도시락 업체가 부재하여 급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제한적으로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 아동에게 방학 중과 토, 공휴일에 급식을 전달함.

- 대상자: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 지원금액: 급식단가는 1식당 3,500원 이상이어야 함. 자원봉사인력 등이 참여하는 집단급식소, 민간업체(식당, 도시락)를 통한 급식, 지방재정이 가능한 경우 급식단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
- 급식비 지원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단체급식소(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연료비, 도시락·부식 배송료,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연1회, 보건소 이용) 등으로 사용 가능

- 아동급식지원사업의 대상자는 1만 5,112명(2000년 기준)에서 48만 5,811명(2010년 기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이후 감소하는 추세, 아동급식 대상자는 2016년 33만 2,865명으로 총 아동인구 수의 3.8% 수준

○ 노인 급식지원은 복지사업 지방 이양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위탁을 통해 민간영역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됨. 급식지원과 배달인력으로 자원봉사자와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활용함.

- 경로식당 운영을 통한 직접적인 무료급식 지원과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제공의 형태로 운영

- 경로식당 급식대상은 60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또는 결식우려 노인, 식사배달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 경로식당의 급식 횟수는 급식기관의 여건에 따라 주 1~6회임(공휴일 제외). 재가노인 식사/밑반찬 배달의 경우 식사는 주 5회 이상, 밑반찬은 7일분 상당의 밑반찬을 주 2회 이상 배달

- 노인급식 지원단가는 2016년을 기준으로 1식당 경로식당의 경우 울산 2,035원에서 충북, 전남, 제주 3,500원 수준이며, 식사 배달은 부산 2,300원에서 충북, 전남, 제주 3,500원, 밑반찬 배달은 부산 2,800원에서 대구 6,000원 수준

○ 영양플러스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영양교육과 특정 식품을 지원하는 제도임. 2005~2007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됨.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3개 사업 중 영양사업이 25%, 그 중 대부분이 영양플러스사업

- 지원 대상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가구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출산부·수유부이며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 시유는 매일 또는 2~3일에 1회 배송하고, 멸균우유는 1달에 2회 이상 배송함. 월 1회 배송하는 품목에는 쌀, 김, 미역, 김정콩, 오렌지주스, 닭가슴살통조림이 있으며, 월 2회 이상 배송하는 품목에는 당근, 감자, 꾀, 달걀
- 보건소에서 월 1회 이상 영양교육과 영양/식생활 상담을 실시하고, 대상자의 사업 참여 기간은 출산부의 수유방법 및 생애주기에 따라 최대 1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80%인 가구는 보충식품 패키지별로 월 단가 중 10%만큼을 부담

○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대상 채소·과일 섭취 증대를 목적으로 실시됨.

- 서울시는 2013년 7월에 서울형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을 시작함. 2017년 기준 217개 지역아동센터에 6,438명을 대상으로 2~3종의 제철과일(원물 형태)을 1인당 100~200g씩 주 2회 공급하고, 영양교육을 실시
- 서울시의 과일구매 예산액은 2017년 기준 4억 6,600만 원으로 1인당 연간 약 7만 2,000원, 월 8,000원씩 지원,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가락시장 6~7개 청과법인이 사회공헌활동으로 조성한 기금을 사용하여 과일을 구매
- 2016년에 전국 15개 광역자치체(대전, 세종 제외)의 54개 기초자치체에서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을 실시

○ 정부양곡할인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5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90% 할인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택배 배송함.

-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양곡대금이 생계급여에서 공제
- 가구원 1인당 월 10kg까지 정부양곡을 구입할 수 있으며, 2017년부터 포장 단위를 선택 가능(10kg, 20kg).
- 양곡 배달에는 전국자활기업인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
- 2016년 공급량은 6만 8,000톤 규모

표 2-2 복지 관련 식품지원제도

부처	제도	법적 근거	대상 계층	지원 방식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	「긴급복지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 재산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 현금 지원이 원칙
	아동급식지원	「아동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 장애인 보호자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아동, 보호자 부재 아동, 긴급 보호 필요 아동, 맞벌이 가구 아동, 위원회 지원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이용 아동 • 소득: 장애인 보호자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음식점 이용(급식카드 사용) • 단체급식 • 도시락 배달 • 편의점 급식 • 부식 배달
	노인급식지원	「노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식당: 60세 이상 저소득 혹은 결식우려 노인 • 식사 및 밀반찬 배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 불편한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식당 단체급식 • 재가노인 식사 배달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 무료 제공,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 실비 수준의 급식비 징수 가능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 중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경우 또는 아동복지기관·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가정인 경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 영양플러스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 •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조제분유를 구매
농림축산식품부	복지용 쌀 공급(정부양곡 할인지원)	「양곡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양곡 구입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 할인 •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에서 양곡대금 공제 • 사회적협동조합 택배배달
	우유무상급식 지원(학교우유급식)	「낙농진흥법」, 「축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으로 우유 급식 • 지원단가: 430원/200ml (축발기금 60%, 지방비 40%) • 급식일: 250일 내외 (학기 중 등교일 방학 중 방학 전일)
교육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학교급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농식품 학교급식 식재료 규정

자료: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 66-67).

○ 식품 관련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식품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푸드뱅크 사업은 1998년 6월에 보건복지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됨. 2016년 말 현재 전국푸드뱅크와 중앙물류센터를 각각 1개소씩 두고 있으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광역푸드뱅크 17개소와 그 하부조직으로 기초푸드뱅크 295개소, 푸드마켓 128개소가 운영 중임.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06년에 제정되면서 푸드뱅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전국푸드뱅크를 지원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광역·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지원
- 개인의 여건에 따라 푸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긴급지원 대상자·차상위계층이 1순위, 기초수급 탈락가구가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그 밖에 정부지원이 미흡한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여유 기부식품을 지원

표 2-3 건강 관련 식품지원제도(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	제도	법적 근거	대상 계층	지원 방식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지역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만 6세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임신부의 경우, 소득 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관찰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 보충식품패키지 가정배달 또는 보건소, 식품공급업체 등에서 대상자 수령 • 영양상태평가 실시
어린이·청소년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건강과일바구니사업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지역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어린이·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아동센터를 우선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교육 실시 • 신선한 제철 과일 및 채소를 간식으로 제공
	학교기반 건강과일바구니사업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지역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교육 실시 • 가당주스, 음료, 유색우유 등 가공식품을 대신하여 제철 과일 및 채소를 활용한 급식 실시
노인	실버 건강식생활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관리서비스(공동부엌 실습교육·가정 방문을 통한 맞춤형 영양교육) 및 과일·유제품 등의 간식도시락 제공 • 공동부엌이 가능한 취사시설을 갖춘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또는 공공시설에 식재료 제공

자료: 이계임·김상호·김부영(2017: 68).

1.5. 사업별 예산규모 현황

- 광역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식품지원제도에 투입되는 예산 총액을 산출해 보니 1조 9,000억 원(2016년 기준)으로 집계됨. 전체 예산의 78.6%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비의 식품비로 지원되며(1조 5,000억 원), 나머지 사업들은 각각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함(아동급식지원 9.7%, 노인급식지원 4.7%, 정부양곡할인지원 3.7%).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약 70%와 30%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내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예산 분담 비율은 55%와 45%로 10%p 차이남. 개별 사업별 중앙정부의 예산 비중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 중 식품비 지원은 81.1%, 긴급지원의 생계지원 중 식품비 지원은 77.2%, 정부양곡할인지원은 86.0%임.

표 2-4 광역시도의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제도 운영 현황

단위: 천 원, %

제도명	예산총액(2016년)	예산액(%)				
		중앙정부	광역	기초	민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528,390,452(78.6%)	81.1	11.9	7.0	-	
긴급지원(생계지원)	35,823,332(1.8%)	77.2	9.0	13.8	-	
정부양곡할인지원	71,067,765(3.7%)	86.0	6.5	7.5	-	
노인급식	경로식당	54,349,770(2.8%)	-	49.8	50.1	0.2
	식사배달	36,793,129(1.9%)	-	44.3	55.7	-
	소계	91,142,899(4.7%)	-	47.3	52.6	0.1
결식아동 급식지원	189,207,939(9.7%)	3.1	50.3	46.6	-	
영양플러스	26,671,555(1.4%)	43.1	17.4	39.4	0.1	
건강과일바구니	1,113,415(0.1%)	16.8	49.4	33.8	-	
합계	1,943,417,357(100)	69.3	17.1	13.6	0.0	

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은 생계비 중 식품비 비중 37.1%(2014년 기준)를 적용함.

자료: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 70).

- 반면 노인급식과 아동급식은 지방정부의 예산 비중이 약 97% 이상이며, 지역사회 건강 증진사업의 지방정부 예산 비중은 영양플러스사업이 약 57%,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이 약 83%인 것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을 지원방식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금보조가 80.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물지원(15.9%), 가격보조(3.7%) 순임. 중앙정부가

현금지원과 가격지원을 주로 담당하며 현물보조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대부분 담당함.

표 2-5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 방식별 예산 운영 현황

단위: 천 원, %

구분	금액(2016년)	예산액(%)			
		중앙정부	광역시	기초	민간
현금보조	1,564,213,784(80.5)	81.0	11.8	7.2	-
현물보조	308,135,808(15.9)	5.7	46.6	47.7	0.0
가격보조	71,067,765(3.7)	86.0	6.5	7.5	-
합계	1,943,417,357(100)	69.3	17.1	13.6	0.0

주: 현금보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 지원, 긴급지원의 생계지원이, 현물보조에는 노인무료급식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영양플러스사업,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이 포함되며, 가격보조에는 정부양곡할인지원이 포함됨.
 자료: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 70).

- 광역지자체 대상 사업예산과 사업비중 식품비를 조사한 결과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정부양곡할인지원은 1인당 식품비가 9만 원 정도이며 예산액 중 식품비 비중은 8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영양플러스사업은 예산액 중에서 식품비 비중이 80~90%를 접하며, 1인당 식품비는 지자체별로 편차가 다소 크나 6만 원 전후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과일바구니, 실버건강식생활 사업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되고 있음. 결식아동급식지원과 노인무료급식지원은 지자체별 식품비 비중 격차가 크지만 식품비 비중이 대체로 95% 이상이며, 1인당 식품비는 5만 원 수준임.
- 광역지자체 대상 사업별 생계급여수급자 비중을 조사한 결과 정부양곡할인지원은 지자체별로 수혜자의 70~80%가 생계급여 수급자로 조사됨. 또한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 생계급여수급자는 대체로 20% 이하이며, 결식아동급식지원 및 노인무료급식지원의 경우는 생계급여수급자가 수혜자의 50% 전후를 접하는 지자체가 다수로 나타남.

1.6.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추진팀(T/F)”을 발족하고 2017년 11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안)을 발표한데 이어, 2018년 12월 보도자료를 통

해 2019년부터 32개 사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및 연계 지원을 추진할 뜻을 발표함.

- 2018년 광역형(충남), 도시형(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농촌형(충남 청양군, 전남 해남군), 복합형(강원 춘천시, 전북 완주군,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의 4개 유형별 맞춤형 푸드플랜의 기초모델을 개발
-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및 「푸드플랜 관련 사업장별 운영매뉴얼」을 제작배포

표 2-6 푸드플랜 연계 지원사업 현황

순번	사업명(내역사업명)	해당국	해당과
패키지 지원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신활력플러스)	농촌국	지역개발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식품국	식품산업진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유통국	유통정책과
	직매장 설치·교육·홍보 지원사업(직매장 설치 및 교육홍보지원)	유통국	유통정책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시설 및 수송차량)	유통국	원예경영과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유통국	유통정책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유통국	원예경영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농축산물 제조 가공지원, 6차 산업화지원)	농촌국	농촌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지역네트워크구축)	농촌국	농촌산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국	농촌산업과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	농진청	농촌자원과
	농산물안전분석실운영	농진청	식량산업기술팀
연계 지원사업 (가점부여)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육성지원	농생명국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	농생명국	친환경농업과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유통국	원예경영과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유통국	원예경영과
	과원규모화사업(용자)	유통국	원예경영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사업	유통국	식생활소비정책과
	ICT융복합확산	유통국	원예경영과
	시설원예현대화	유통국	원예경영과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유통국	원예경영과
	산지유통활성화(용자)	유통국	유통정책과
	전통시장농산물판매촉진	유통국	유통정책과
	유통시설현대화	유통국	원예경영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유통국	원예경영과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유통국	식생활소비정책과
	농식품 시설 현대화(용자)	식품국	식품산업진흥과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용자)	식품국	식품산업진흥과
	GAP생산여건 조성	농관원	인증관리팀
	토양용수안전성분석사업	유통국	식생활소비정책과
	바른식생활 교육 체험확산사업	유통국	식생활소비정책과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농생명국	친환경농업과

자료: 2018년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 해외 주요국의 관련 정책 현황과 시사점

2.1. 미국 SNAP 운영현황과 시사점

■ 도입배경

- 대공황으로 인하여 식품 구매여력이 감소한 도시 빈곤층을 지원하고 농산물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939년에 푸드스탬프를 도입함.
- 농산물 공급과잉과 실업 문제가 맞물린 상황에서 실업자의 기본 식품구입을 지원하는데 활용됨.
- 초기에는 오렌지색 스탬프와 파란색 스탬프를 발급하였으며, 오렌지색 스탬프는 모든 식품, 파란색 스탬프는 공급과잉으로 판정된 식품만 구매가 가능함.
-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농산물 공급여력이 떨어지고 실업이 감소하는 등 상황 변화로 중단됨.
- 케네디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재도입함.
 - 기존 스탬프 방식에서 쿠폰으로 변경, 지원식품은 가족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데 목표를 두고 가구원 수에 맞추어 지원

■ 지원대상과 조건

- SNAP의 지원대상은 저소득 가구이며 해당 가구의 적격 여부는 소득과 자산 등에 따라 결정됨.
 - 단, 노인가구와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

- SNAP 적격여부와 지원금액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소득의 범위는 모든 종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정부현금보조, 사회보장지원금, 실업급여, 아동 급여 등 이전소득을 포함함.
- SNAP 적격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주로 금융자산에 한정되며 신청인의 주택과 그 외 자산, 은퇴자금, 대부분의 자가용은 포함되지 않음.
 - 자산은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2,250달러까지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며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가구에 있는 경우에는 3,500달러까지 허용한도가 늘어남.
 - 자산 가치 계산에는 주택가격과 SSI(생활보조금), TANF(빈곤가정임시지원), 퇴직연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

표 2-7 SNAP 혜택을 받기 위한 총소득 및 순소득 기준

가구원 수	총소득(연방빈곤선 130%)	순소득(연방빈곤선 100%)
1	\$1,316	\$1012
2	\$1,784	\$1,372
3	\$2,252	\$1,732
4	\$2,720	\$2,092
5	\$3,188	\$2,452
6	\$3,656	\$2,812
7	\$4,124	\$3,172
8	\$4,592	\$3,532
가구원 추가 1인당	+\$468	+\$360

자료: USDA-FNS(<https://fns-prod.azureedge.net/snap/recipient/eligibility#Who is in a SNAP household?>; 2019.6.13.)

- 수혜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 조건은 총소득 조건과 순소득 조건 등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소득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됨.⁷⁾
 -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 이전소득의 합계액)이 빈곤선의 130% 미만, 순소득(총소득에서 공제 적용 후 소득)이 빈곤선의 100% 미만
 - 가구의 소득 수준이 <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는 총소득 및 순소득 조건을 초과하는

7) 장애인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경우 SNAP 수혜자로 선정되지 아니함.

- 수혜가구는 일자리 등록, 일정시간 이상 근로, 취업기회 수락, 교육/훈련프로그램 참여 등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조건을 만족해야 함.
 - 피부양자 없는 성인(Able-bodied Adults Without Dependents: ABAWD)이 지원금을 3개월 이상 수령하기 위해서는 36개월 내 3개월 이상 평균 주당 20시간 이상 급여를 받는 노동을 하거나 사회보장부처에서 운영하는 고용서비스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그 외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거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시간 동안 자원봉사자로 일해야 함.
 - 근로조항을 면제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 18세 미만 또는 50세 이상인 사람, 정신 또는 신체 조건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다고 의사의 판정을 받은 사람,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성인 보호자, 임산부, 실업률이 높은 지역 거주자, 기타
-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민자 신분으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거나, 장애인보조금 혜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18세 이하의 아동 등 합법적으로 이민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SNAP 수혜자로 선정될 수 있음.

■ 가구당 지원금액

- SNAP 프로그램으로부터 취약계층이 수령할 수 있는 식품비 금액은 가구원 수별로 해마다 책정되는 '최대혜택금액(Maximum Allotment: MA)'과 가구의 조정순소득의 차이임.
 - MA는 농무부 '절약식품계획(Thrifty Food Plan: TFP)'에 기초하여 4인 가족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비용을 추계한 후, 가구원이 4인 이하 혹은 이상인 가구들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 개념을 적용하여 별도로 도출함.
- 지원금액 계산은 순소득을 계산하고 계산된 순소득에서 조정순소득을 계산하여 최대지원금액(Maximum Allotment: MA)에서 조정순소득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조정순소득이란 가구 순소득의 30%(기대 식품비 비율)로 정의됨.

○ 순소득 계산방법

- ① 총소득에서 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30%를 공제
- ② 기본공제 적용
- ③ 부양비 공제
- ④ 고령자 또는 장애가구원 관련 의료비 공제
- ⑤ 초과 거주비(excess shelter cost) 공제
- ⑥ 계산된 순소득이 기준 순소득 이하이면 순소득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

표 2-8 가구원수별 최대지원금액(MA)

단위: \$

지역 \ 가구원수	1	2	3	4	5	6	7	8	추가 가구원 1인당
미국본토	192	353	505	642	762	914	1,011	1,155	144
팜	283	520	745	946	1,123	1,348	1,490	1,703	213
버진아일랜드	247	454	650	825	980	1,176	1,300	1,485	186
하와이	358	656	940	1,193	1,417	1,701	1,880	2,148	269
알래스카(도시)	232	425	609	773	918	1,102	1,218	1,392	174
알래스카(농촌1)	295	542	776	986	1,171	1,405	1,553	1,775	222
알래스카(농촌2)	360	660	945	1,200	1,425	1,711	1,891	2,161	270

자료: USDA FNS(<https://fns-prod.azureedge.net/sites/default/files/snap/COLAMemoFY19.pdf> 2019.08.09. 방문).

■ 신청절차 및 참여방법

○ 잠재적 참여자의 적합여부를 스스로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사전 검증시스템(SNAP Eligibility Pre Screening Tool)을 운영하고 있음.

- 사전 검증시스템은 가구원수, 자산, 자동차, 소득, 주거비, 부양비, 의료비를 입력하면 대상 가구의 SNAP 적합여부와 예상 수혜금액을 알려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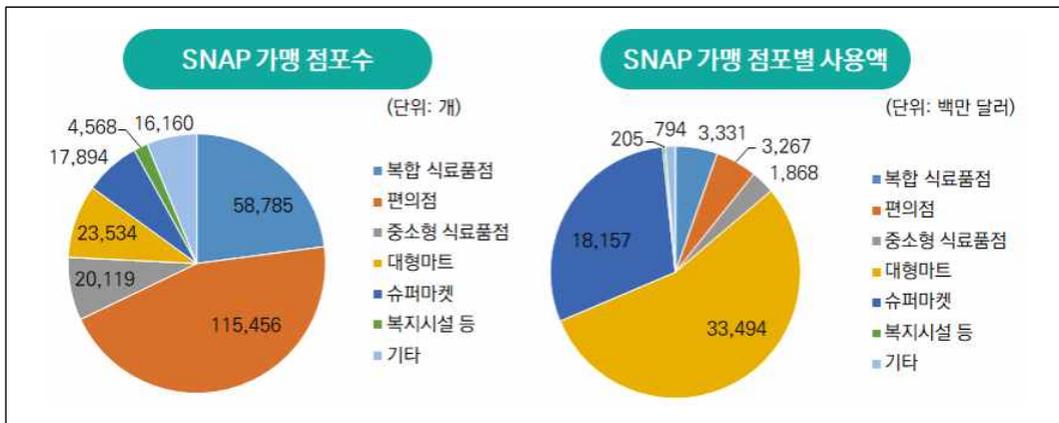
○ 신청절차는 신청서 접수-인터뷰-자료 검증의 순으로 이루어짐.

- 신청서 접수는 현장 접수, 우편, 팩스, 전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시 또는 카운티)의 사회복지 부서로 신청해야 함.
 - 신청서 접수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함.
 -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가구는 업무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게 됨. 인터뷰는 전화 또는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짐.
 - 인터뷰는 SNAP에 대한 설명, SNAP 지원금 계산방법, 대상 가구의 권한과 책임,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함.
 - 업무 담당자는 신청서가 처음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음.
 - 결정내용은 승인, 거절 또는 추후 심사 등으로 구분됨.
- 한 번의 신청으로 결정되는 지원기간은 가구별로 다르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기간이 끝나면 해당 가구는 재신청해야 함.
- 단, 모든 가구원이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24개월까지 지원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음.
- 신청자는 신분증, 거주지역, 사회보장번호 등의 정보와 소득과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제출해야 함.
-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정부보조, 자녀보조금,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음을 알리는 증서 등 모든 소득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함께 제출해야 함.
 - 의료비 지출 증빙자료는 병원비 진료영수증, 병원 진찰을 위한 교통비 영수증 등임.
 - 또한 신청자는 자산액을 신고해야 함.
 - 신고된 자산액이 의심스럽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
 - 신청자는 부양비용, 주거비, 자녀 부양비 등을 신고해야 하며 복지 담당자는 신고내역이 의심스러울 때만 검증을 실시함.

■ 지원품목과 사용처

-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품목은 채소, 과일, 육류, 유제품, 빵, 곡물, 스탱류, 비알콜음료, 종자, 채소재배용 화분임.
- 주류, 담배, 비타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살아있는 동물, 즉석섭취식품, 기타 비식용 제품은 바우처로 구매 불가함.
- 해당 품목은 편의점(Convenience Store), 중소형 마트, 대형마트, 베이커리, 채소 및 과일 판매점, 파머스 마켓 등 다양한 판매점에서 바우처를 이용하여 구매가능
 - 2018년 기준 SNAP 가맹 점포는 총 25만 6,516개이며 가맹점포에서 사용된 바우처 금액은 611억 1,635만 달러에 이릅니다.
 - 점포수를 기준으로 편의점의 비중이 45%, 복합식료품점이 22.9%로 작은 규모의 가맹점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바우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54.8%, 슈퍼마켓이 29.7%로 규모가 큰 식료품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그림 2-2 SNAP 바우처 사용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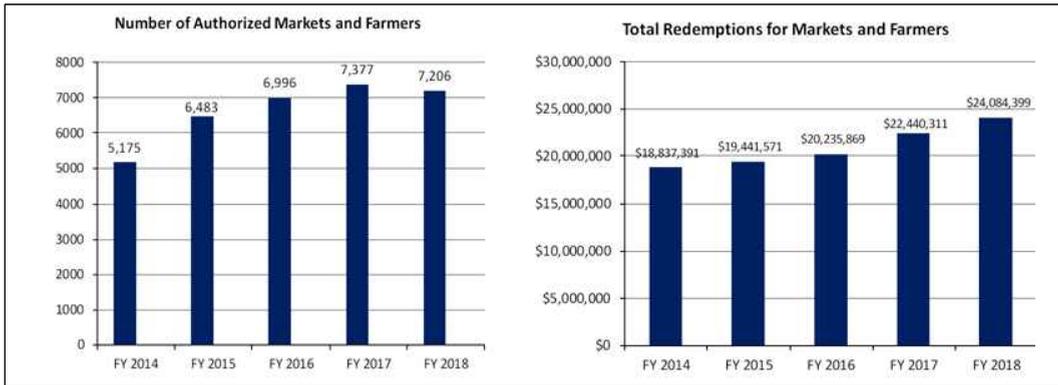


자료: USDA/FNS, Fiscal Year 2018 Year End Summary.

- 미국 정부는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식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파머스 마켓이나 직거래 농업인에게는 수수료가 없는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단말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파머스마켓이나 농산물 직거래 시장에서 SNAP의 사용실적은 꾸준히 증가함.

그림 2-3 파머스 마켓/직거래 농업인 수 및 바우처 사용액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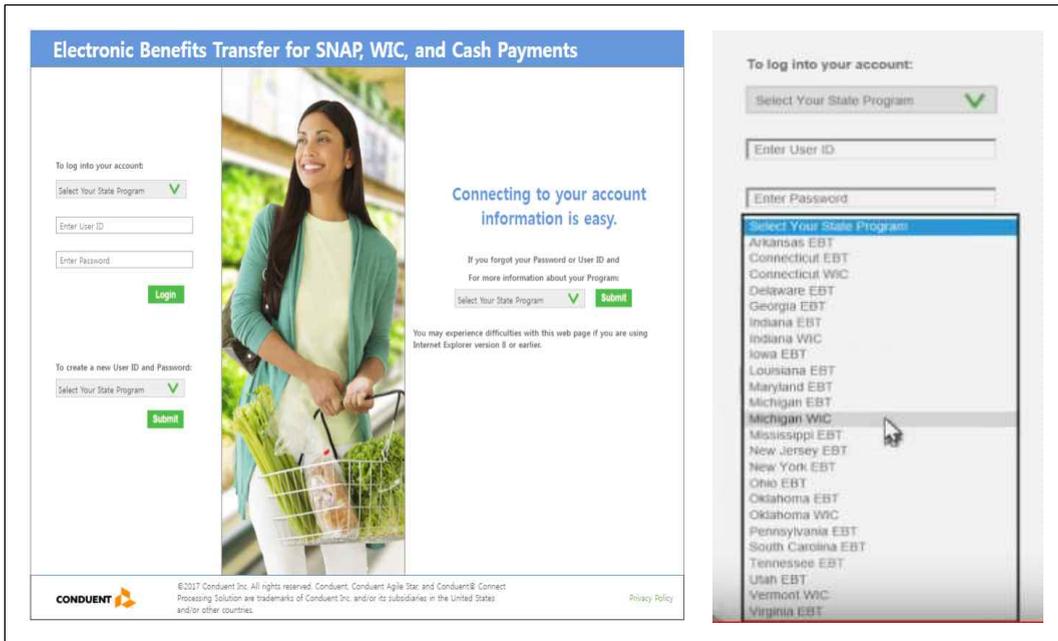
자료: USDA/FNS, Fiscal Year 2018 Year End Summary.

■ EBT 사용방법

- EBT 잔액은 영수증에 표시되므로 영수증을 참고하거나 주 별 EBT 관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함.
- SNAP을 이용할 수 있는 식료품점은 QUEST 로고나 EBT 카드 사진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로고와 사진으로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EBT에는 개인비밀번호(PIN)이 설정되어야 하며 물품구매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정상적으로 결제됨.
- 개인 EBT 계좌에 남아있는 지원금액은 이월되지만 365일이 이후에는 사용 불가함.

- EBT 카드가 분실, 도난, 파손된 경우 EBT 관리 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야 함.
 - EBT의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두 개의 회사에서 주별 EBT 관리 홈페이지(www.connectebt.com, www.ebtedge.com)를 운영하고 있음.

그림 2-4 EBT 관리 홈페이지



- SNAP 식료품점에서는 결제시스템 관련 서비스 회사인 Fidelity Information Services, LLC(FIS)와 계약을 맺고 SNAP, 현금 보조프로그램 또는 WIC의 결제와 관련된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받으며 FIS는 USDA로부터 지원금을 인수받아 각 점포에 정산하여 줌.
 - FIS는 EBT를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 프린터, 스캐너, 핀패드 등의 기구들을 제공함.
 - SNAP 식료품점은 결제계좌를 개설하여 FIS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FIS는 해당 계좌로 각 점포에서 SNAP으로 결제한 총 금액에서 제반 수수료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1~2일 이내에 정산함.

■ 수혜 현황

○ SNAP 참여율은 FY(Fiscal Year) 2016에 대상 개인 기준 85%, 대상 가구 기준 89%임 (USDA 2018).

- SNAP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는 4,700만 명이며 그 중 약 4,000만 명이 참여하였음.

- 그룹별로는 빈곤선의 51~100% 수준의 소득을 가진 가구원의 95%가 SNAP에 참여한 반면 빈곤선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가진 가구는 42%의 참여율을 보였음.

- 또한 최저 수혜금액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의 참여율은 30%에 불과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룹일수록 참여율이 높음.

- 한편 60세 이상의 고령자 참여율은 45%이며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의 참여율은 59%,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의 참여율은 25%로 노인 중에서도 취약한 그룹의 참여율이 더 높음.

○ SNAP 참여율은 최근 7년간 눈에 띄게 상승하였음.

- 전체 개인 참여율은 72%에서 85%로 상승하였으며 가장 참여율이 낮은 노인의 참여율도 33%에서 59%로 상승하였음.

○ 참여율의 증가는 근본적으로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빈곤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경기불황으로 빈곤층이 된 근로자가 과거에는 복지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다가 복지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SNAP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음(Greenstein et al. 2018).

표 2-9 SNAP 참여율(FY2010-FY2016)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전체 개인	72	78	83	85	83	83	85
가구원수별							
1~2인 가구	65	75	81	84	82	82	81
3~4인 가구	76	82	86	90	86	89	92
5인 이상 가구	74	76	83	80	79	75	81
연령별							
17세 이하	89	96					
18~59세	72	79	85	88	85	86	88
60세 이상	33	38	42	41	42	42	45
1인 가구	43	50	55	54	56	56	59
2인 이상 가구	20	23	24	25	23	25	25

자료: USDA-FNS(2018).

- 또한 SNAP 참여율의 상승 요인에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행정처리를 하려고 한 각 주정부의 노력이 있었음.
 - SNAP 대상가구가 참여를 꺼리는 원인 중 하나가 복잡하고 어려운 신청절차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이 필요하였음.
 - 예를 들면, SNAP과 자격요건이 비슷한 Medicaid와 SNAP의 신청을 통합한 것이 주정부의 해결방안 중 하나였음.
- 또한 종이쿠폰 방식에서 EBT로 전환한 것은 수혜자의 낙인효과를 줄임으로써 참여율을 높였음.
 - 이는 많은 가구들이 낙인효과 때문에 SNAP의 참여를 꺼렸다는 것을 반증함.
- 또한 최근 몇 년간 주거비가 급증한 것이 저소득층의 경제상황을 압박하였기 때문에 대상가구의 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정리하면, 대상가구의 경제적 상황, 낙인효과,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이 참여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5년 SNAP의 총 수혜자는 감소하였음.

- 월 평균 수혜자 수는 2014년에 4,664만 명에 이르렀으나 2018년에는 3,965만 명으로 감소하였음.

○ 수혜인원의 감소와 더불어 지원금과 기타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도 감소하였는데 2014년 총 비용은 740억 6,033만 달러였으나 2016년에는 648억 7,511억 원으로 감소하였음.

○ 그러나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126달러 내외에 머무르고 있음.

표 2-10 SNAP 지원규모 및 비용(2019년 7월 5일 기준)

회계연도	월평균 수혜자 수 (천명)	1인당 평균 지원금 액(달러)	지원금 총액 (백만 달러)	기타 비용2] (백만 달러)	총비용 (백만 달러)
2014	46,664	125.01	69,998.84	4,061.49	74,060.33
2015	45,767	126.81	69,645.14	4,301.51	73,946.64
2016	44,220	125.40	66,539.27	4,367.23	70,906.50
2017	42,133	126.01	63,711.05	4,458.43	68,169.48
2018	39,652	126.96	60,407.79	4,467.32	64,875.11

자료: USDA FNS(<https://www.fns.usda.gov/pd/supplemental-nutrition-assistance-program-snap> 2019.08.02. 방문).

■ 식품 지원체계

○ 기본적으로 수혜자들이 식료품점에 가서 필요한 농식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구매를 시도하고 있음.

- 아마존, 샵라이트, 월마트의 홈페이지에서 EBT를 이용한 구매가 가능하며 지역적으로는 앨라배마, 아이오와, 메릴랜드, 네브래스카, 뉴저지, 뉴욕, 오레건, 워싱턴 주에서 온라인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식료품점은 자체적으로 농식품을 조달하기 때문에 농무부 식품영양국은 SNAP을 위한 조달절차에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음.

- 다만, 농무부는 SNAP-인증 식품점(SNAP-authorized stores)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
 - SNAP-인증 식품점의 자격 요건은 육류·닭고기·생선류, 빵·씨리얼, 채소·과일, 유제품 등 4개의 농식품군에 대해 3종류 이상의 식품을 판매하거나 해당 식료품점의 전체 판매액 중 위에서 언급된 4개의 농식품군의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야 함.⁸⁾

- 추가적으로 농무부는 SNAP 수혜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 종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제공하고 있음.
 - SNAP으로 구매가 가능한 농식품은 위에서 언급된 4종의 농식품군뿐 아니라 가구에 의해 소비되는 농식품을 생산하는 종자 및 식물도 포함됨.
 - 청량음료, 캔디류, 쿠키류 등도 SNAP 혜택으로 구매 가능한 농식품에 포함됨.
 - 티슈나 샴푸와 같은 비식품류는 SNAP의 혜택으로 구매가 불가능하며, 식료품점 안에서 섭취할 수 있는 식품('hot foods'), 즉석식품 역시 구입할 수 없음.⁹⁾
 - 또한 주류, 담배류, 영양제 및 의약품, 살아있는 동물 등도 SNAP으로 구입할 수 없음.

- 미국정부는 지역 내 농산물 생산과 SNAP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파머스 마켓이나 직거래 농업인이 SNAP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파머스 마켓 운영자 또는 직거래 농업인은 EBT 전용 POS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음(출장 시 확인).
 - 또한 SNAP 사용과 관련된 규칙과 규정, SNAP 카드 소지자에 대한 홍보에 대한 교육 지원을 받음.

⁸⁾ USDA-FNS(a)를 참고하여 작성함.

⁹⁾ USDA-FNS(b)을 참고하여 작성함.

■ 지급 및 대상 선정 오류 개선¹⁰⁾

- 각 주는 개인 사망기록과 수감자 기록, FNS의 부적격자 데이터베이스를 적격여부 심사
에 활용하여 부적격자가 지원을 받는 일을 방지하고 있음.
- 또한 사후관리로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공표함.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각 주의 SNAP 담당부서는 매달 무작위적으로 일부 수혜가구를 뽑아서 전국적으로
총 5만 가구의 샘플을 구성함.
 - 주의 SNAP 담당자는 수혜자의 인터뷰와 가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실시함.
 - 조사 결과는 각 주가 대상가구의 적격여부와 지원금액을 얼마나 정확하게 결정하였
는가를 판단하는데 활용함.
 - 각 주는 적격여부 판정 및 지급금액 산정의 오류 발생수를 계산하며 이때 과소지급 또
는 과대지급도 오류로 취급함.
 - 과대지급된 지원금은 환급해야 하며 과소지급된 금액은 추가 지급함.
 - USDA는 총 5만 건의 사례 중 약 2만 5000건에 대해 각 주의 검증결과를 재검증하고
각 주의 검증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함. 만약 주에서 이루어진 검증결과가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재검증 결과를 주 정부에 송부하여 주 정부가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 USDA는 재검증 자료들을 분석하며 전국 및 주별 지급 오류율을 계산하여 매년 6월
에 발표함.

■ 부정사용의 적발 및 사후조치¹¹⁾

- 부정사용은 크게 수혜가구, SNAP 참여 식료품점, 주 정부 SNAP 담당자의 의해 이루어

10) USDA/FNS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2019.8.9. 방문) <https://fns-prod.azureedge.net/sites/default/files/media/file/USDA_SNAPQC_Infographic.pdf>

11) Aussenberg(2018)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질 수 있으며 식료품점의 부정사용(trafficking), 수혜가구의 부정사용, 식료품점의 허위 신청, 수혜가구의 허위 신청, 수혜가구나 담당자의 실수, SNAP 담당자의 부정행위 등의 유형으로 구분됨.

○ 부정사용(Trafficking)

- 식료품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은 USDA가 수혜가구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은 주 정부가 담당함.
- 부정사용은 보통 SNAP 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식료품점과 수혜가구 모두 이런 행위에 관련될 수 있음.
- 또한 부정사용은 사용 제한된 품목의 구매에 지원금액을 사용하거나 지원금으로 구매한 품목을 반품하여 현금을 수령하는 방식, 지원금으로 구매한 품목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을 포함함.
- 수혜가구가 SNAP 지원금을 식료품점에 팔아 현금을 받는 것도 부정사용에 해당됨.

○ 식료품점의 허위 신청

- 식료품점이 SNAP 가맹점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허위신청으로 간주함.
- 또한 식료품점 주인이 부적격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가족이나 친척에게 소유권을 위장 매도 또는 이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도 허위신청에 해당함.

○ SNAP 담당자에 의한 부정행위

- SNAP 담당자가 불순한 의도로 부적격 신청자에게 적격판정을 내리거나 지원금 과대 지급을 결정하는 행위
- 주 정부의 복지담당 부서가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불법적으로 교부받거나 벌금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노력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음.

○ 기타

- SNAP 신청자가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심사과정에서 담당자가 적격 판정 및 지급액 결정에 있어 실수를 저지르는 것도 일종의 부정사용으로 볼 수 있음.

○ USDA는 식료품점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을 이용함.

- (EBT 거래 자료 분석)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포착하는 사용함.
- (잠복 조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식료품점에 잠입하여 조사함.
- (법률집행협약(State Law Enforcement Bureau Agreement)) 몇몇 주는 동일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법부와 협약을 맺고 부정행위를 조사하기도 함.
- (신고 및 제보) USDA-FNS는 신고 및 제보를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함.

○ 수혜가구의 부정행위는 주 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USDA의 부정행위 감시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 (EBT 거래 자료 분석) USDA가 포착한 의심 사례에 대한 정보를 주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관련 수혜가구를 특정함.
- (온라인 모니터링) 소셜미디어나 웹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포착함.
- 잠복 조사
- (EBT 교체 기록) EBT 카드를 빈번하게 교체하는 수혜가구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이 됨.
- (신고 및 제보) USDA-FNS는 신고 및 제보를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함.
- (데이터 매칭) 신청자료 등 기타 검증자료를 매칭하여 부정행위자를 적발함.

○ 부정행위가 적발된 식료품점은 해당 식료품점의 모든 소유주가 처벌을 받음.

- 해당 식료품점은 SNAP 인증 식료품점의 자격을 박탈당하며 일정 기간 동안 SNAP 참여할 수 없음.

- 또한 해당 식료품점은 WIC 인증 식료품점의 자격도 박탈당함(동일 기간).
- 부정사용 되었던 지원금을 납부해야 함.
- USDA-FNS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식료품점의 정보를 공개함.
- 또한 해당 식료품점의 소유주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2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 부정행위가 적발 수혜가구는 수혜자격을 박탈당하며 해당 가구의 성인 가구원은 과대 지급된 금액 또는 부정유통된 금액을 반납해야 함.

- 자격 박탈기간은 최소 1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자격 박탈이 될 수 있음.
- 또한 주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자격 박탈당한 가구의 타 복지프로그램 수혜자격도 박탈할 수 있음.
- 또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혜가구는 법적 조치를 당할 수도 있으나 이는 주마다 자율적으로 결정됨.

■ SNAP 연계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의 영양교육은 1992년에 시작되었으며 푸드스탬프가 SNAP으로 바뀐 후 교육프로그램은 SNAP-Ed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되고 있음.

○ SNAP-Ed의 궁극적인 목표는 만성질환 등의 질병 예방 및 감소에 있음.

○ SNAP-Ed의 대상자는 SNAP 참여가구와 SNAP 참여가구와 비슷한 저소득층임.

- SNAP 참여가구, 기타 저소득층 보조 프로그램 참여 가구, 일반 저소득층을 포함함.

○ SNAP-Ed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SNAP 담당 기관은 SNAP-Ed에 대해 홍보하여 저소득층이 식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함.

- SNAP 담당 관청 사무실에 SNAP-Ed 홍보물을 부착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식생활교육 자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을 포함함.

○ SNAP-E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FY2020의 SNAP-Ed 예산은 4억 4,100만 달러에 이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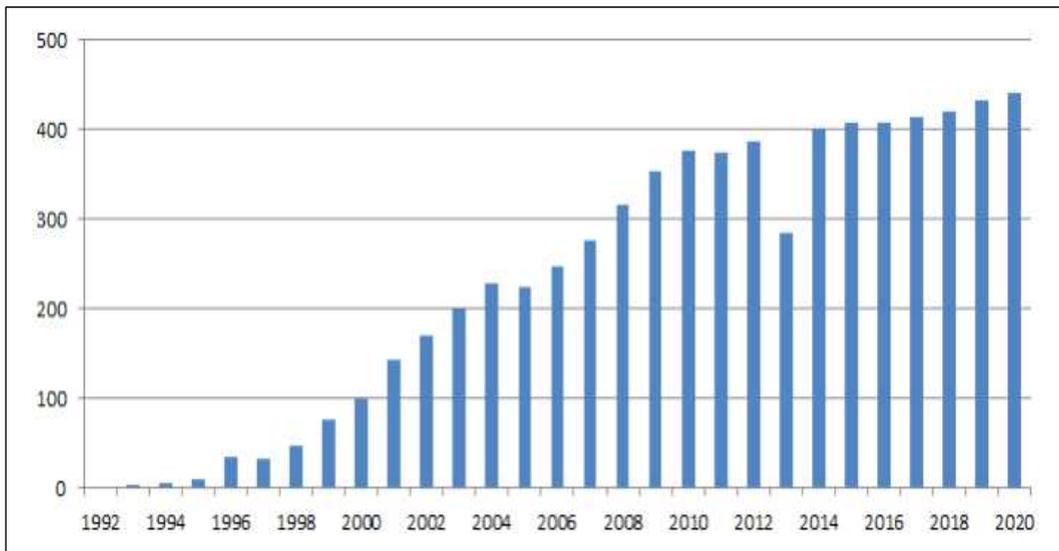
○ USDA의 식품영양국이 SNAP-Ed 교육프로그램을 총괄 담당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각 주(state)별로 각 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주정부 내 교육담당 부서가 총괄하고 주 내의 주립대학 및 민간기관들이 교육을 진행하는 구조임.

- SNAP-Ed는 주 별로 다른 명칭을 갖기도 함. 예를 들면, 버지니아 주의 경우 Virginia Family Nutrition Program으로 불리고 있음.

그림 2-5 연도별 SNAP-Ed 예산(FY1992-FY2020)

단위: 백만 달러



주: FY 2020 예산은 추정치임.

자료: USDA/FNS(<https://snaped.fns.usda.gov/program-administration/funding-allocations> 2019.08.16. 방문).

○ SNAP-Ed의 주요 교육내용은 건강한 식품 선택, 건강이나 영양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음식을 조리·섭취하는 방법, 신체활동 장려 등임.

- 1) 건강한 식품 선택, 2) 건강한 식품 종류, 3) 식사 계획, 4) 올바른 식품 구입 및 예산 계획 수립, 5) 영양표시 확인과 활용, 6) 식품류별 영양소, 7) 건강·저렴한 조리법,

1~2인을 위한 조리법, 8)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가이드라인, 9) 농식품 지원사업의 종류와 혜택, 10) 식품 안전, 11) 올바른 신체활동 방법 등을 포함함.

○ SNAP-Ed의 교육내용은 USDA/FNS가 제시한 영양 가이드라인(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DGA)과 식품 가이드(MyPlate)에 기초해야 하며 그 외에도 신체활동 가이드라인(Physical Activity Guidelines: PAG), 건강한 사람 2020 플랜, 핵심 영양 메시지 등 FNS가 제시하는 여타 가이드라인도 참고할 수 있음.

○ SNAP-Ed의 교육방식은 1대1 강습 뿐만 아니라 그룹 강의도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나 저소득층이 많이 고용된 직장 등 저소득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단체를 대상으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 뿐만 아니라 SNAP-Ed는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데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음.

○ SNAP-Ed는 성인 뿐만 아니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음.

○ 주 정부는 한 해 동안 수행한 SNAP-Ed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 예산 현황,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보고서는 추후 교육프로그램의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사용됨.

2.2. 미국 WIC의 운영체계

■ 지원 대상과 조건

○ WIC의 수혜대상은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85%보다 낮은 임신·수유부, 수유하고 있지 않은 출산부, 5세 이하 영·유아임.

- 대상가구의 소득수준은 빈곤선 100%~185%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SNAP, 메디케이

드, TANF 또는 각 주의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는 자동으로 WIC 수혜 자격을 얻음.
 - 신청자는 반드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의해 영양 또는 건강 상 위험요인(예를 들면, 빈혈, 저체중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함.

○ 지원내용은 보충적 영양 식품, WIC 클리닉에서의 영양교육과 상담, 여타 건강·복지 서비스에 대한 제안, 모유수유 권장임.

○ WIC에서 지원하는 식품은 영양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 임산부, 출산모, 영아, 5세 이하 유아의 영양 필요를 고려하여 구성되었으며 최대 지원량은 다음의 표 2-11과 표 2-12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영아의 경우 모유수유 여부와 모유수유 비중에 따라서 지원식품 구성이 달라지며 여성의 경우에도 모유수유 여부에 따라서 지원식품이 달라짐.

표 2-11 WIC 월 최대 식품 지원량(아동, 여성)

식품 구분	유아	여성		
	식품패키지 IV: 1~4년	식품 패키지 V: 임산부, 부분 모유수유 (출산 후 최대 1년)	식품 패키지 VI: 출산 후 최대 6개월	식품패키지 VII: 완전 모유수유
주스	128 액량 온스	144 액량 온스	96 액량 온스	144 액량 온스
우유	16 쿼터	22 쿼터	16 쿼터	24 쿼터
씨리얼	36 온스	36 온스	36 온스	36 온스
치즈	N/A	N/A	N/A	1 파운드
달걀	12구	12구	12구	24구
과일, 채소	8달러 상당 바우처	11달러 상당 바우처	11달러 상당 바우처	11달러 상당 바우처
통곡물 빵	2 파운드	1 파운드	N/A	1 파운드
(통조림) 생선	N/A	N/A	N/A	30 온스
(건조/통조림) 콩, 피넛버터	1 파운드 또는 18 온스	1 파운드 18 온스	1 파운드 또는 18 온스	1 파운드 18 온스

자료: USDA FNS(<https://fns-prod.azureedge.net/sites/default/files/wic/SNAPSHOT-of-WIC-Child-Women-Food-Pkgs.pdf> 2019.08.13. 방문).

표 2-12 WIC 월 최대 식품 지원량(영아)

식품 구분	완전 분유수유(Fully Formula Fed: FF)		부분 모유수유(BF/FF)		완전 모유수유(BF)	
	식품패키지 I-FF & III-FF: A: 0~3개월 B: 4~5개월	식품 패키지 II-FF&III-FF: 6~11개월	식품 패키지 I-BF/FF & III-BF/FF: A: 0~1개월 B: 1~3개월 C: 4~5개월	식품패키지 II-BF/FF & III-BF/FF: 6~11개월	식품패키지 I-BF: 0~5개월	식품패키지 II-BF: 6~11개월
WIC 분유	A: 액상분유 823 액량 온스 B: 액상분유 896 액량 온스	액상분유 630 액량 온스	A: 분유 104 액량온스 B: 액상분유 388 액량 온스 C: 액상분유 460 액량 온스	액상분유 315 액량 온스		
씨리얼		24 온스		24 온스		24 온스
과일 및 채소		128 온스		128 온스		256 온스
육류						77.5 온스

자료: USDA FNS(<https://fns-prod.azureedge.net/sites/default/files/wic/SNAPSHOT-of-WIC-Child-Women-Food-Pkgs.pdf> 2019.08.13. 방문).

■ 지원규모

- WIC의 월평균 참여가구는 FY 2018 기준 총 687만 명 가량이었으며 참여인원은 최근 감소하고 있음. 참여인원 구성으로 보면 유아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으며 영아 인원이 근 소하게 여성 참여 인원을 앞서고 있음.
- WIC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식품비와 행정비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식품비는 FY 2018 기준 33억 7,659만 달러, 행정비용은 19억 7,820만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참여 인원의 감소와 함께 식품비도 매년 감소하였으나 행정비용은 미미하나마 증가 추세에 있음.

표 2-13 WIC 월 평균 참여인원 및 운영비용

참여인원 및 비용		FY2015	FY 2016	FY2017	FY 2018
참여인원(명)	여성	1,923,171	1,838,293	1,737,991	1,633,864
	영아	1,939,741	1,875,706	1,787,331	1,712,401
	유아	4,160,831	3,982,440	3,760,839	3,523,863
	전체	8,023,742	7,696,439	7,286,161	6,870,128
식품비(억 달러)		41.7596	39.4957	36.0611	33.7659
행정비용(억 달러)		19.2194	19.4612	19.6508	19.7820
1인 평균 식품비(달러)		43.4	42.8	41.2	41.0

자료: USDA FNS(<https://www.fns.usda.gov/pd/wic-program> 2019.08.13. 방문).

■ 식품 공급체계

- WIC 프로그램의 농식품 조달은 SNAP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지만 각 주(state)별로 차이가 크며 WIC 혜택으로 구매 가능한 농식품에 대한 조건이 더 까다로움.
- 각 주(state)에서 농식품 판매 자격 요건을 갖춘 식료품점을 승인하며, WIC 혜택으로 구매 가능한 농식품의 종류를 선정함.
 - 각 주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연방정부의 ‘최소영양 기준’을 대체로 따름.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식료품점 차원에서 농식품 조달 및 판매 결정을 내리고 있음 (유아용 분유는 예외).
- WIC은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최대한의 수혜자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WIC 혜택으로 구매 가능한 농식품의 조달 비용을 줄일 유인이 존재함. 예를 들어, 주별로 WIC 용도로 조달하게 되는 유아용 분유에 대해 제조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도 함. 리베이트에 대한 보상으로 최종 선정된 제조업체 1개 업체와 물량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특정 주에서는 기타 농식품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시스템을 가동하기도 함.
- WIC의 조달·판매 절차의 장점은 주정부가 WIC 혜택으로 구입이 가능한 제품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임. WIC 프로그램 참여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수혜자들에게 특정 농식품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단일 식료품점으로 부터 해당 농식품을 구입하기를 요구하기도 함. 이러한 WIC의 조달·판매절차는 건강하고 저렴한 농식품을 가능한 많은 WIC 수혜자들에게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음.

- WIC 프로그램에서 농식품 조달 관련 당면 과제 중 하나는 연방정부 예산을 주정부가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임. 주정부가 WIC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비용 부담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조달·지원하게 되는 농식품의 가격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음.

■ 부정사용/오용 방지

- WIC 프로그램이 종이바우처로 운영될 당시 미국에서는 세 집단이 부정사용 혹은 오용에 연루될 수 있었음. 첫째 집단은 식품소매업자(벤더)이며, 둘째는 수혜자(혹은 WIC 참여자), 셋째는 WIC 프로그램 고용인 집단임.
- WIC 종이바우처로 수혜 받는 식품을 구입할 경우, WIC 폴더(folder)와 WIC 체크(check; 혹은 voucher)를 계산대 직원에게 제시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IC 체크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워터마크, 마이크로라인 프린팅, 형광잉크, 무늬 용지, 컬러 프린팅 등의 수단을 사용함. 위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번갈아 가며 사용함. 컬러의 패턴을 바꾼다든지, 워터마크나 마이크로라인 프린팅의 글자를 바꾼다든지 등의 로테이션 수단이 있음. 발행, 저장, 재고, 주 전달기관명, 사용을 위한 정보 등 체크 관리를 은행 수준으로 함. 800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개설하여 부정사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며, 이러한 신고 정보를 체크에 인쇄하기도 함. 주별로 체크 위조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도 함.

■ WIC 참여자 대상 파머스 마켓 영양 프로그램(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도입

- 의회는 1992년에 WIC 참여자가 인근 지역에서 재배된 신선 과일 및 채소를 섭취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파머스 마켓 영양 프로그램을 도입함.
- WIC 수혜자는 파머스 마켓에서 사용가능한 쿠폰을 추가로 발급받아 파머스 마켓, 개인 농가,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을 구매토록 함.
 - 1인당 매달 평균 23 달러 가량의 농산물 구매하였으며 2018년 기준 총 172만 7234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총 2천 3백만 달러가 소요됨.

표 2-14 WIC 월 평균 참여인원 및 운영비용

구분		2016	2017	2018
총 지원액(백만 달러)		21	22.3	23
수혜자(명)		1,650,791	1,739,716	1,727,234
1인당 지원 수준		\$23	\$23	\$23
판매자(명/개)	농민	18,225	16,815	16,902
	마켓	3,236	3,312	2,788
	가판대	2,433	2,367	2,974

자료: USDA/FNS, WIC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Profiles.

2.3. 유럽의 식생활 지원과 시사점

■ EU의 식품 및 생필품 지원사업(Fund for European Aid to the most Deprived: FEAD)¹²⁾

-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식재료 패키지, 식사, 기부식품을 수집 및 배분하며 곡물, 쌀, 유제품, 분유, 설탕, 육류, 채소, 이유식, 식용유 등을 지원함.
 - 식품 외에는 의류나 세제 등 기초생필품을 지원함.

¹²⁾ 유럽연합 홈페이지를 참조함(<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89>)

- EU 회원국은 식품과 기초생활필품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종류 모두를 지원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음.
 - 전체 27개 국가 중 오스트리아, 키프러스, 덴마크,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를 제외한 21개 국가는 식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는 식품만 지원하고 있음.

- 각 국의 정부는 식량과 구호품을 직접 구매하여 협력기관에 공급하거나 자금을 지원하여 협력기관이 구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협력기관은 구호 식품을 직접 배분하거나 또 다른 협력 기관을 거쳐 배분되도록 할 수 있음.
 - FEAD에 참여하는 협력기관은 공공기관이거나 비정부단체임.

- EU의 FEAD 예산은 2014-2020년 기간 동안 총 38억 유로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각 국은 자국의 프로그램을 위해 최소한 전체 비용의 15%를 지원해야 함.

- FEAD에서 식품을 지원하는 대상은 빈곤선 이하의 극빈층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 FEAD를 통해 식품 지원과 함께 대상자들에게 건강한 식생활 교육, 재무상담, 심리상담, 사회복지 프로그램 안내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다방면으로 제공함.

■ 유럽 국가의 농식품 지원사업

- 프랑스(Plan National d'Aide Alimentaire: PNAA)¹³⁾
 - 프랑스 국가 식품지원플랜은 FranceAgriMer가 사회보장부처(General Directorate for Social Cohesion)와 식품부처를 대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식품지

¹³⁾ 홈페이지 <http://www.opnalim.org/les-outils/textes-juridiques/pnaa/> 참조

원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PNAA는 2004년에 설립되어 구호단체들이 식품을 나누어주는 것을 관장하고 있으며 해당 구호단체는 프랑스 푸드뱅크 연합회, Restos du Coeur, Secours Populaire, 적십자임.
- 구호단체들은 육류, 생선, 통조림 과일과 채소, 해바라기씨유를 매년 무상으로 공급 받아 저소득층에게 전달함.

○ 영국(Healthy Start)

- (자격) 임신부, 4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중 저소득 가구임. 소득기준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득보조, 실업급여, 자녀장려금, 펜션크레딧 등의 수령 여부임.
- (지원내용) 우유, 신선 또는 냉동 과일과 채소, 분유, 비타민
- (지원방식) 여성과 1~4세 유아에게는 주당 3.10 파운드, 1세 미만 영아에게는 주당 6.20 파운드 상당의 종이 바우처가 발급됨.
- (사용처) 바우처는 협동조합, 청과상, 농산물 가판대, 우유배달차, 약국, 슈퍼마켓임.
- (신청방법) Healthy Start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이메일 및 우편 신청

그림 2-6 Healthy Start 종이 바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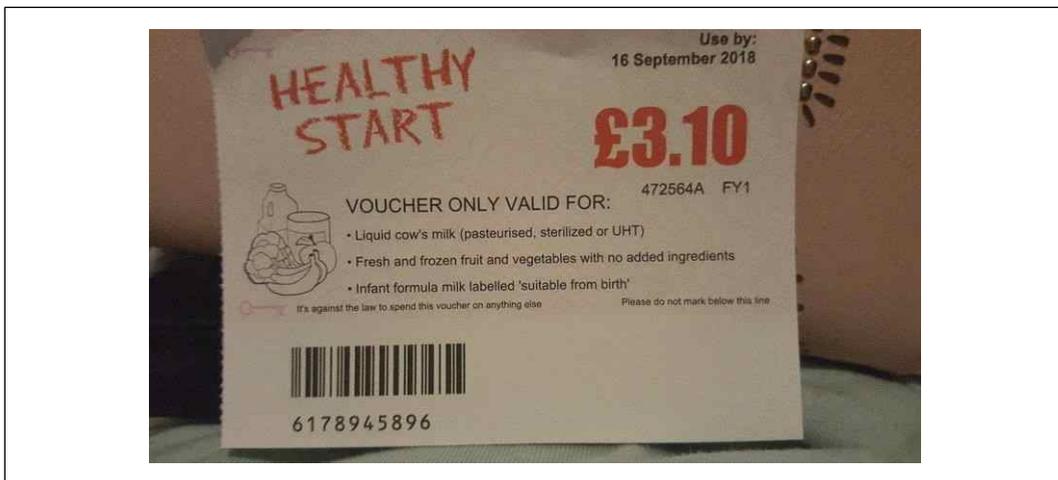


표 2-15 식품 지원 국가의 지원 규모 및 지원 내용

단위: 백만 유로, 톤, 명

국가	총 예산 (2014-2020)	식품지원량 (2014-2017 누적)	식품 지원수혜인원 (2017년)	식품 지원 외 지원내용
벨기에	88.2	30,587	311,205	식재료 관리, 건강한 식생활 교육, 재무관리, 심리상담 지원 등
체코	27.4	1,555	108,308	복지상담, 영양상담, 재무상담 등
크로아티아	43	7,328	208,401	영양 상담, 조리 강습, 식재료 관리, 위생 상담, 심리상담, 재무관리 상담
에스토니아	9.4	2,172	28,453	식품정보, 부채상담, 노인·장애인 대상 교통지원, 의류, 영양상담 등
핀란드	26.5	4,359	284,352	사회복지 프로그램 안내,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영양상담 등
프랑스	587.4	293,518	4,459,019	조리강습, 복지제도 관련 정보제공, 언어 교육, 구직안내, 문화여가활동 지원
그리스	330.6	17,502	263,976	영양상담, 심리상담, 가계부관리, 학령기 아동 학비 지원, 문화·스포츠 활동 지원
아일랜드	26.8	978	95,922	없음
이탈리아	788.9	179,412	2,700,012	임시거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라트비아	48.2	5,387	63,799	사회복지 상담, 개인/집단상담 등
리투아니아	90.8	21,600	193,795	식재료 준비와 관련된 리플렛 배부, 위생, 건강 및 금전관리에 대한 세미나 제공, 각종 캠프, 박물관 방문 등 교육활동 지원
룩셈부르크	4.6	4,993	12,453	복지프로그램 정보 제공, 문화서비스 제공, 긴급구호, 개인상담, 요리강습 등
몰타	4.6	499	13,246	식생활교육, 가계부관리 등 교육 제공, 기타 필요물품 배부
폴란드	556.9	189,194	1,365,491	식생활교육, 가계부관리 등 교육 제공
루마니아	518.8	166,398	3.2	지역 사회복지프로그램 정보 제공
슬로바키아	64.8	7,120	175,448	복지상담, 건강한 식생활 관련 정보 제공
슬로베니아	24.1	11,831	166,448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스페인	662.8	314,942	1,423,288	복지제도 안내, 복지 프로그램 연결, 사회복지 지원

주: 포르투갈, 영국, 헝가리는 식품지원국가이나 관련 자료가 없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89&langId=en>) 2019.08.13. 방문.

3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도입 방안

1. 기본 방향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방향을 수립함. 첫째,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현물 교환의 바우처 형태로의 도입이 필요함. 둘째,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셋째, 수혜자 특성 및 수혜자별 소비환경(지리적 여건 등)에 맞춤형으로 제공하여야 함. 넷째, 식생활 교육과의 연계를 도모해야 함. 다섯째,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함.

표 3-1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도입 및 추진 기본 방향

기본 방향 1	바우처 형태로의 도입 필요
기본 방향 2	국내 농업과 연계성 강화
기본 방향 3	수혜자 특성 및 소비환경에 맞춤형 제공
기본 방향 4	농식품 무상 공급에서 그치지 않고 식생활교육과 연계
기본 방향 5	푸드플랜의 틀 안에서 농식품 생산/유통과 연계하도록 추진체계 구축

- 취약계층의 식품비가 최저식품비 수준에 미달하고, 식품 지원액의 상당 비중이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농식품 소비가 최소한의 건강유지를 위한 소비 수준에 크

게 미달함. 취약계층의 농식품 소비 확대를 통한 영양 섭취 및 식생활 개선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현물지급 형태가 바람직함.

표 3-2 농식품 지급 방식 비교

구분	가격보조	직접보조	
		현물보조	현금보조
장점	① 식품소비 증대 효과가 가장 큼 ② 타 용도 사용 가능성 적음	① 식품소비 증대에 효과적 ② 타 용도 사용 가능성 적음	① 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적 ② 수혜자의 높은 만족도 ③ 운영비용 절감
단점	① 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 적음 ② 이용매장 제한 가능성이 크므로 특정매장 혜택 논란 발생 가능	① 소비자 효용을 제한적으로 증대, 소비자 선택권 미보장 ② 운영상 비효율성 발생 ③ 낙인효과 발생 ④ 일부 공급자 물량 조달시 시장 교란 가능	① 식품소비 확대 어려움 ② 타 용도 사용 가능성 ③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거나 세대주나 특정 가구원의 선호에 의해 소비결정이 이루어짐

자료: 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2018: 141).

○ 수혜자들의 농식품 소비를 증진하면서 현물지원보다 큰 효용 증대 효과가 있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우처¹⁴⁾ 중에서도 전자방식 바우처는 대금정산의 용이성, 결제 편리성, 휴대성,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임.

표 3-3 농식품 지급 방식별 비교

구분	전자방식	현금방식	쿠폰방식	비수혜
낙인효과	낮음	없음	높음	없음
대금정산의 용이성	높음	높음	낮음	없음
약용 가능성	낮음	높음	높음	없음
결제 편리성	높음	높음	낮음	없음
휴대성	높음	낮음	낮음	없음
모니터링	높음	불가능	낮음	없음
인프라 구축 (제작, 관리)	높음	없음	낮음	없음

○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식품 지원사업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취약계층에게 부족한 영양소의 주 공급원인 채소, 과일, 쌀, 우유 등은 국내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공급측면에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매, 비축, 용도 전환, 폐기 등을 추진해 온 품목임.¹⁵⁾

14) 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2018) p.141.

- 농식품바우처 지원이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특성(가구원 수, 연령,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 여부 등)과 농식품 소비 환경(구입처까지 이동거리와 이동수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달방식이 구체화되어야 함. 필요한 경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전달방식을 개발할 필요도 있음.
- 농식품 지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상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수준과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생활 교육사업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과 다각도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설문조사 결과 취약계층의 56.4%와 지자체 사업 담당자의 53.2%, 기관 사업 운영자의 68.3%는 식생활·영양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¹⁶⁾

표 3-4 영양교육 및 식생활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한 평가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필요	약간 불필요	그저 그렇다	약간 필요	매우 필요	합계
취약계층	13(2.4)	39(7.1)	189(34.2)	201(36.3)	111(20.1)	553(100)
지자체	1(0.8)	7(5.4)	40(31.0)	59(36.1)	22(17.1)	129(100)
기관	4(1.8)	15(6.6)	53(23.3)	82(36.1)	73(32.2)	227(100)

자료: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 169).

- 중장기 농식품 수급계획 및 푸드플랜과 연계,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구축, 농식품 유통망 기반 활용을 위해서는 농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의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식품사슬(food chain)을 정책의 영역으로 아우르는 푸드플랜의 틀 안에서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201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농식품을 지원하는 신규 식생활 지원제도 운영의 적절한 부처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적절하다고 응답(63.0%)¹⁷⁾
 - 농식품정책 분야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농무부(USDA)가 주무부처로서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다수의 식품지원 관련 프로그램과 바우처 지원제도를 운영

15) 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2018) pp.116~117.

16)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 p.169.

17) 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2018) p.115.

2. 대상 가구 선정

2.1. 대상 가구 선정을 위한 기초분석

2.1.1. 취약계층의 소득 및 식품비

○ 소득 수준별로 가구의 소비 지출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함.¹⁸⁾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사회수혜금 혜택 여부에 따라서 전체 소득의 31.6~38.4%이며, 중위소득 30~40% 미만 가구의 경우도 전체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

표 3-5 취약계층의 1인당 소득 및 소비지출 비교

단위: 원/월(%)

구분	전체	중위소득 30% 미만		중위소득 30~40%	중위소득 40~50%	중위소득 50% 이상	
		사회수혜금 혜택	사회수혜금 비혜택				
소득(경상+비경상)	2,298,095 (100.0)	883,505 (38.4)	725,824 (31.6)	1,127,564 (49.1)	1,290,175 (56.1)	2,819,485 (122.7)	
경상소득	2,219,725 (100.0)	821,910 (37.0)	653,318 (29.4)	1,027,959 (46.3)	1,219,239 (54.9)	2,739,456 (123.4)	
소비지출	1,338,980 (100.0)	729,137 (54.5)	696,454 (52.0)	864,719 (64.6)	959,216 (71.6)	1,552,304 (115.9)	
식품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89,909 (100.0)	154,816 (81.5)	163,631 (86.2)	169,872 (89.4)	173,275 (91.2)	199,522 (105.1)
	식료품 및 비주류+주류	196,897 (100.0)	158,644 (80.6)	167,167 (84.9)	175,151 (89.0)	177,880 (90.3)	207,622 (105.4)
	식료품 및 비주류+주류+외식비	370,291 (100.0)	204,819 (55.3)	223,137 (60.3)	253,770 (68.5)	294,272 (79.5)	420,902 (113.7)

주: 지출액은 명목금액이며, 기준년도는 2016년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 취약계층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월평균 지출액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적은 특징이 있음. 중위소득 30% 미만인 가구를 살펴보면, 사회수혜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

18) 2017년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소득이 분위별로만 발표되어 소득 상세 구분별 분석이 불가능하여 2016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함.

출이 사회수혜금을 받지 않는 가구보다 높지만,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액은 오히려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중위소득 30% 미만이며 사회수혜금을 받는 가구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액은 15만 4,816원으로 전체 가구의 81.5% 수준이며, 중위소득 30% 미만이면서 사회수혜금을 받지 않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86.2%임. 중위소득의 30% 이상이나 40% 미만인 가구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월평균 지출액은 전체 가구의 89.4% 수준으로 9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중위소득 30% 미만인 가구의 총식품비(식료품·비주류음료+주류+외식)는 전체 가구의 60% 미만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중위소득 30~40% 가구 또한 68.5% 수준에 불과함.

2.1.2. 취약계층의 식품류별 지출수준 비교

- 대부분의 식품류에서 취약계층의 지출액은 전체 가구 평균 지출액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냄.
-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는 물론 중위소득의 30~40% 미만인 그룹과 중위소득의 40~50% 미만인 그룹도 곡물, 채소 및 채소가공품, 수산식품, 유지류, 조미식품에 대한 지출은 많은 편이나, 대부분 식품류는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중위소득의 30% 미만이면서 사회수혜금을 받는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을 살펴 보면, 육류는 전체 평균 대비 65.7%, 유제품 및 알류 74.6%, 과일 및 과일가공품 67.7%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중위소득의 30% 미만이면서 사회수혜금을 받지 않는 가구의 경우에는 육류 76.6%, 유제품 및 알류 70.6%, 과일 및 과일가공품 85.3% 수준임.
 - 중위소득의 30~40%인 가구는 육류 83.3%, 유제품 및 알류 77.7%, 과일 및 과일가공품 87.1% 수준임.

○ 중위소득 30% 미만이면서 사회수혜금을 받는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외식비는 전체 평균의 26.6%에 불과하며, 사회수혜금을 받지 않는 가구는 32.3% 수준임. 중위소득의 30~50% 미만 계층도 1인당 월평균 외식비는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중위소득의 30~40%인 가구는 전체 평균의 45.3%, 중위소득 40~50%인 가구는 전체 평균의 67.1%로 분석됨.

표 3-6 식품류별 취약계층 1인당 지출수준

단위: 원/월, %

구분	전체		중위소득 30% 미만				중위소득 30%~40% 미만		중위소득 40%~50% 미만		중위소득 50% 이상	
			사회수혜금 혜택		사회수혜금 비혜택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식품비지출	370,291	100.0	204,819	55.3	223,137	60.3	253,770	68.5	294,272	79.5	420,902	113.7
식료품·비주류음료	189,909	100.0	154,816	81.5	163,631	86.2	169,872	89.4	173,275	91.2	199,522	105.1
곡물	10,323	100.0	14,655	142.0	13,035	126.3	12,119	117.4	11,911	115.4	9,299	90.1
곡물가공품	8,816	100.0	7,417	84.1	6,643	75.4	7,447	84.5	8,210	93.1	9,431	107.0
빵 및 떡류	11,410	100.0	5,391	47.2	6,123	53.7	7,655	67.1	8,055	70.6	13,249	116.1
육류	30,044	100.0	19,753	65.7	23,025	76.6	25,034	83.3	27,871	92.8	32,524	108.3
육류가공품	5,736	100.0	2,685	46.8	2,366	41.2	2,841	49.5	4,132	72.0	6,841	119.3
신선수산물	11,643	100.0	11,619	99.8	15,023	129.0	13,289	114.1	11,859	101.9	10,927	93.9
염건수산물	4,325	100.0	4,175	96.5	5,216	120.6	4,777	110.5	4,130	95.5	4,163	96.3
기타수산물가공	3,855	100.0	3,032	78.7	2,988	77.5	3,608	93.6	3,345	86.8	4,121	106.9
유제품 및 알	15,027	100.0	11,204	74.6	10,615	70.6	11,672	77.7	12,797	85.2	16,446	109.4
유지류	1,618	100.0	1,816	112.2	1,884	116.4	1,849	114.3	1,800	111.2	1,531	94.6
과일 및 과일가공품	23,591	100.0	15,971	67.7	19,652	83.3	20,537	87.1	20,335	86.2	25,264	107.1
채소 및 채소가공품	22,705	100.0	25,760	113.5	28,017	123.4	27,972	123.2	25,032	110.2	21,071	92.8
해조 및 해조가공품	2,220	100.0	2,014	90.7	2,220	100.0	2,376	107.0	2,314	104.2	2,222	100.1
당류 및 과자류	13,421	100.0	7,164	53.4	6,774	50.5	8,083	60.2	9,749	72.6	15,632	116.5
조미식품	6,804	100.0	8,662	127.3	9,501	139.6	8,471	124.5	7,695	113.1	6,023	88.5
기타식품	7,550	100.0	6,143	81.4	4,484	59.4	4,983	66.0	5,842	77.4	8,461	112.1
커피 및 차	4,040	100.0	3,476	86.0	2,748	68.0	2,756	68.2	2,978	73.7	4,454	110.2
주스 및 기타음료	6,783	100.0	3,879	57.2	3,315	48.9	4,403	64.9	5,220	77.0	7,864	115.9
주류	6,988	100.0	3,828	54.8	3,536	50.6	5,279	75.5	4,606	65.9	8,100	115.9
식사비	173,395	100.0	46,174	26.6	55,970	32.3	78,619	45.3	116,392	67.1	213,280	123.0

주: 지출액은 명목금액이며, 기준년도는 2016년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2.1.3. 취약계층의 식품 불안정

- 식품 안정성은 가구에서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임. 식품 안정성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2016년 원자료를 통합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불안정 수준을 분석함.
- 식품 불안정 단계에 위치한 가구 비중을 합산하면, 중위소득 50% 초과 그룹의 경우 2.0%에 불과한 반면,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그룹에서는 식품 불안정 단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식품 불안정 단계 비중은 중위소득 30~40% 미만 계층은 9.2%, 중위소득 40~50% 미만 계층은 7.4%로 산출됨. 중위소득 30% 미만의 수급자 가구는 식품 불안정 단계 비중이 32.3%로 매우 높고 동일 소득 구간의 비수급자도 10.1%에 달함.

표 3-7 취약계층의 식생활 불안정 비중

전체	단위: %				
	중위소득 30% 미만/수급자	중위소득 30% 미만/비수급자	중위소득 30~40%	중위소득 40~50%	중위소득 50% 이상
4.1	32.3	10.1	9.2	7.4	2.0

주: 식생활 상황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응답한 비중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2016년도 원자료 통합분석.

2.1.4. 취약계층 영양 섭취 실태

- 취약계층별 영양 섭취 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식품 지원이 시급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취약계층의 영양권장량 대비 섭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2016년도 원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중위소득 30% 미만인 계층의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수준이 가장 취약하며, 중위소득 30~50% 계층의 경우도 영양 섭취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소득이 중위소득 40% 미만인 계층의 경우 에너지, 비타민 A, 비타민 C, 리보플라빈, 칼슘이 권장섭취량 대비 크게 부족함.
- 중위소득 30~40%에 해당되는 계층의 경우에도 에너지 섭취량은 필요추정량의 90.5%이며, 권장량 기준 섭취 수준은 칼슘 54.5%, 비타민 A 88.1%, 리보플라빈 85.6%, 나이아신 91.5%, 비타민 C 84.9% 수준임.
- 중위소득 40~50%에 해당되는 계층은 30~40% 해당하는 계층에 비해 영양 섭취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기는 하나 에너지 필요량에 약간 미치지 못하며 칼슘 부족 정도가 큼.

표 3-8 취약계층의 권장량 대비 영양소 및 에너지 섭취 비중

단위: %

구분	전체	중위소득 30% 미만/수급자	중위소득 30% 미만/비수급자	중위소득 30~40% 미만	중위소득 40~50% 미만	중위소득 50% 이상
에너지(ERR 대비 %)	99.7	86.6	93.3	90.5	96.5	101.7
단백질(RI 대비 %)	141.4	107.3	111.0	116.2	135.4	147.3
칼슘(RI 대비 %)	64.2	47.6	58.8	54.5	60.6	66.5
인(RI 대비 %)	149.5	109.8	126.5	127.3	140.0	155.1
철(RI 대비 %)	166.2	142.6	193.2	160.8	160.2	167.1
비타민 A(RI 대비 %)	111.5	81.5	98.2	88.1	113.9	115.7
티아민(RI 대비 %)	181.3	144.2	153.3	154.5	178.7	187.1
리보플라빈(RI 대비 %)	109.1	76.5	84.1	85.6	103.1	114.5
나이아신(RI 대비 %)	113.6	80.9	89.1	91.5	106.7	118.8
비타민 C(RI 대비 %)	105.1	70.6	98.9	84.9	104.6	109.0

주: Recommended Intake(RI)는 권장섭취량, Estimated Energy Requirement(EER)는 필요추정량, Adequate Intake(AI)는 충분섭취량임.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5년도 원자료 분석;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

○ 영양 섭취 부족자는 에너지 섭취 수준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고, 주요 영양소(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 수준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경우로 분류됨. 소득 수준별로 영양 섭취 부족자 비중을 산출하면 전체 평균이 8.2%인 반면, 중위소득의 30% 미만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19.2%로 두 배 이상 높음. 중위소득의 30~40%에 해당하는 계층(11.9%)과 중위소득 40~50% 해당 계층(9.5%) 또한 영양 섭취 부족자 비중이 높은 수준임.

표 3-9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부족자 비중

단위: %

전체	중위소득 30% 미만/수급자	중위소득 30% 미만/비수급자	중위소득 30%~40%	중위소득 40%~50%	중위소득 50% 이상
8.2	19.2	8.0	11.9	9.5	7.2

주: 영양 섭취 부족자 비중은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인면서, 주요 영양소인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분율(만 1세 이상).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5년도 원자료 통합분석.

2.1.5. 취약계층 건강실태 분석

○ 취약계층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 관련 3가지 지표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저작불편, EQ-5D(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지표)를 소득수준별로 산출하여 비교함. 취약계층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해당 지표가 대체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나, 중위소득 40% 미만 계층의 건강상태가 크게 취약하며,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도 50% 이상 계층에 비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주관적 건강인지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중은 중위소득 30~40% 미만 계층의 경우 23.2%로 중위소득 50% 이상 계층의 11.3%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특징
- 저작불편 비중도 중위소득 30~40% 미만 계층의 경우 33.8%로 중위소득 50% 이상 계층의 16.5%에 비해 두 배 수준
- 건강 관련 삶의 지표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하는 EQ-5D는 중위소득 30% 미만 계층이 수급자 여부에 따라서 0.82/0.88로 계측되었으며,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나 중위소득 30~40% 미만 계층의 경우도 0.90으로 중위소득 50% 이상 계층의 0.96에 비해 낮은 수준

표 3-10 취약계층의 건강 관련 인식수준 비교(평균)

단위: %

구분	전체	중위소득 30% 미만/수급자	중위소득 30% 미만/비수급자	중위소득 30~40%	중위소득 40~50%	중위소득 50% 이상
주관적 건강상태	13.9	35.4	26.6	23.2	17.1	11.3
저작불편	20.3	41.8	40.2	33.8	28.7	16.5
EQ-5D	0.95	0.82	0.88	0.90	0.93	0.96

주 1) 주관적 건강인지는 조사대상자가 평소 스스로의 건강을 '매우 나쁨' 또는 '나쁨'이라고 생각하는 분을

2) 저작불편은 조사 시점에서 치아나 틀니, 잇몸 등으로 저작(씹기)불편을 느낀 비율을 의미

3) EQ-5D는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 활동, 통증과 불편, 불안과 우울 등 5개 항목으로 구성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2016년도 원자료 통합분석.

2.2. 대상 가구 선정 대안

○ 이제까지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래 표에 제시되는 바와 같음.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식료품 지출액, 식생활 불안정 가구 비중, 주관적 건강상태, 저작불편, 삶의 질 측면에서 중위소득 30% 미만인 가구가 가장 취약함. 한편,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이나 권장량 대비 에너지 섭취 비중의 경우 중위소득 30~50%인 가구가 오히려 중위소득 30% 미만(비수급자) 가구보다 다소 취약함. 따라서 중위소득 30% 미만인 가구 뿐 아니라 30~50%인 가구 또한 식생활 및 영양 측면에서 관심이 필요한 집단임.

표 3-11 취약계층의 건강 관련 인식수준 비교(평균)

단위: 원/월, %

구분	전체	중위소득 30% 미만/수급자	중위소득 30% 미만/비수급자	중위소득 30~40%	중위소득 40~50%	중위소득 50% 이상
식료품 및 비주류+주류+외식비	370,291 (100.0)	204,819 (55.3)	223,137 (60.3)	253,770 (68.5)	294,272 (79.5)	420,902 (113.7)
식생활 불안정 비중	4.1	32.3	10.1	9.2	7.4	2.0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	8.2	19.2	8.0	11.9	9.5	7.2
에너지(ERR 대비 %)	99.7	86.6	93.3	90.5	96.5	101.7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13.9	35.4	26.6	23.2	17.1	11.3
저작불편	20.3	41.8	40.2	33.8	28.7	16.5
EQ-5D	0.95	0.82	0.88	0.90	0.93	0.96

자료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2)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2016년도 원자료 통합분석.

○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최대의 식품지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 중위소득 30% 미만인 가구를 중심으로 식품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 중위소득 30~40% 미만, 3) 중위소득 40~50% 가구 또한 식품소비, 식생활, 영양/건강 차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므로 향후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소득은 중위소득 30% 미만이지만 자산이 충분한 가구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자산조건을 적용할 필요도 있음.

○ 중복수혜 등을 감안하여 무료급식 수혜자 혹은 생계급여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예산의 규모나 정책 목표에 맞추어 특정 가구 유형(예: 노인 가구, 아동 가구, 혹은 결혼 가구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할 수도 있을 것임. 아래에 제시되는 <표 3-12>은 가구의 소득수준별, 가구유형별, 월별 지원금액별 지원 대상 가구 수 및 소요예산을 요약함.

- 월 4만 원씩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제외한 가구에게 지원할 경우 총 23만 여 가구가 지원대상이 되며 소요되는 식품비 예산은 1,41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 식품비가 전체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의 70%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사업 예산은 2,02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표 3-12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식품비 및 전체 소요예산 추정(연간)

단위: 가구, 억 원

대상가구	가구 수	식품비 소요 예산	전체 소요 예산(식품비 70% 가정)	전체 소요 예산(식품비 80% 가정)	
3만 원 기준 (1인당)	1.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	230,289	1,050	1,500	1,313
	2.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65세 노인 있는 가구	140,595	641	916	801
	3.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17세 이하 있는 가구	38,088	174	248	217
4만 원 기준 (1인당)	4.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	230,289	1,415	2,021	1,769
	5.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65세 노인 있는 가구	140,595	864	1,234	1,080
	6.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17세 이하 있는 가구	38,088	234	334	293
5만 원 기준 (1인당)	7.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	230,289	1,769	2,527	2,211
	8.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65세 노인 있는 가구	140,595	1,080	1,543	1,350
	9.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제외/17세 이하 있는 가구	38,088	293	418	366

자료: 직접 작성.

3. 지원 금액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금액은 목표 식품비에서 취약계층의 사용 가능 식품비를 차감하여 산출 가능한데, 목표 식품비는 ① 최저식품비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과 ② 영양필요량과 마켓바스켓을 비교하여 설정하는 기준인 건강식사구성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음.¹⁹⁾
- 최저식품비는 최저생계비 계측결과(김태완 외 2017)를 이용함. 2017년 최저식품비는 표준가구로서의 4인 가구(44세 아버지, 41세 어머니, 14세 남자 자녀, 11세 여자 자녀)에게 필요한 하루 에너지와 식품류별 구입량을 평가하여 가구 단위의 식품비를 도출하고 외식비를 추가 조정하여 산정함. 4인 표준가구의 월평균 식품비는 외식이 없는 경우 총 56만 7,119원으로 산정됨. 2017년 최저생계비는 1인당으로 환산 시 1개월당 283,560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외식 비중을 감안하여 가정식과 외식으로 구분하여 추정할 경우 가정식 235,716원, 외식 108,339원으로 산출됨.
- 건강식사구성 방식은 권장섭취 기준과 영양 섭취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이 영양식사를 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식품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미국 농무부의 Carlson et al.(2006)이 적용한 방법을 근거로 함.²⁰⁾ 권장식사패턴과 식품군별 다소비패턴 등을 참고하여 연령대별 및 성별 필요 식품비를 추정하고 2017년 최저생계비 계산 시 적용한 표준가구에 대해 적용하면 월 74만 923원(가정식 51만 8,646원)으로 계측되어, 1인 1개월 필요 식품비는 37만 462원(가정식 25만 9,323원)임.²¹⁾
- 대상 가구의 실제 식품비 지출액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산출 가능함. 소득수준 및 사회수혜금 수혜 여부 변수를 활용하여 대상 그룹을 구분하고, 가구 내 식료품비 지출액을 식료품 및 비주류 지출 항목과 주류 지출 항목을 합산함.

19) 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2018) p.126.

20) 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2018) p.127.

21) 구체적인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2018) pp.127~129를 참조

- 사용 가능한 식품비는 행복e음 원자료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병행하여 이용함.
 -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생계급여까지 포함하여 식품비로 사용 가능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행복e음 원자료를 이용하여 1인 1달 기준 208,962~214,661원으로 추정됨.²²⁾
 - 중위소득 40% 미만 계층의 경우 행복e음 원자료에 충분한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소득에 해당계층의 엔겔계수를 곱하여 산출함.
- 식품비 지원 대상을 ① 행복 e음 생계급여 대상자, ②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30% 미만, ③ 중위소득 40% 미만, ④ 중위소득 40% 미만이며 사회수혜금 비혜택을 대안으로 구분하여 1인 1개월 기준 필요한 식품비 지원액을 추정함. 식품비 지원 소요액은 목표 식품비와 취약계층의 실제 식품비 또는 사용 가능한 식품비의 차액으로 산출되는데, 최저식품비와 사용가능한 식품비를 기준으로 추가 소요 식품비를 산출하면 1인 1개월 기준 최소 2만 1,055원에서 최대 5만 5,625원으로 분석됨.

표 3-13 지원 수준 대안 비교(1인 1개월 기준)

구분	행복e음 생계급여 대상자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30% 미만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40% 미만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40% 미만 사회수혜금 비혜택
실제식품비(A)식료품/비주류+주류	157,250~165,759	164,622	166,459	169,463
사용가능식품비(B)	208,962~214,661	180,091	189,501	185,069
최저식품비(C)	235,716	235,716	235,716	235,716
건강식사방식(D)	259,323	259,323	259,323	259,323
C-A	69,957~78,466	71,094	69,257	66,253
C-B	21,055~26,754	55,625	46,215	50,647
D-A	93,564~102,073	94,701	92,864	89,860
D-B	44,662~50,361	79,232	69,822	74,254

주 1) 행복e음 생계급여 대상자의 사용가능 식품비는 행복e음 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과 생계급여액을 고려함.
 2)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방식에서 사용가능 식품비는 소득(경상+비경상)에 해당계층 엔겔계수((식료품비/비주류+주류)/소비지출)를 곱하여 산출함.

22) 2016, 2017년 행복e음 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과 생계급여액을 산출하고, 소득 중 식품비 비중은 해당계층 엔겔계수(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주류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를 소득에 곱하여 추산하였으며, 생계급여 중 (기대)식품비 비중은 2016년 기준 생계급여 중 식품비 비중 추정치를 적용함. 사용가능한 식품비는 소득 중 식품비 산출액과 생계급여 중 식품비 비중의 합계로 산출하며, 2016년과 2017년 평균값을 적용함(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2018) PP. 129~130).

○ 사용 가능한 식품비와 실제 식품비의 차액은 취약계층이 개인적인 선택으로 식품소비 이외 항목에 지출하고 있는 부분임. 따라서 해당 부분이 식품소비로 지출되기 위해서는 식품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보다 식생활 교육/홍보, 급식/배달 지원 활성화 등을 통해 식품사용을 독려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식생활 보장을 지향할 경우 건강식사구성 방식에 의한 식품비 설정을 목표 식품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나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예산 규모를 고려해야 함.

- 외식비는 산출방식이 다르고 가구별 격차가 크므로 가정식을 기준으로 하여 차액을 산출함.

○ 따라서 식품비 지원 대상에 대해 식품비 지원 금액 소요액을 계산하면 1인 1개월당 3~5만 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²³⁾. 1인 1개월 기준 3만 원과 5만 원 지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구원수별 지급 금액은 OECD 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 가능함. 가구원 수별 지급 금액은 어떠한 균등화지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함. 균등화지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비 지원 시 적용한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거나, 가구원수의 제공근을 고려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표 3-14 가구원 수별 지급 금액 산출

OECD지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생계 급여 방식	균등화지수	0.37	0.63	0.81	1.00	1.18	1.37	1.55	1.74
	3만원 기준	3만원	5만1천원	6만6천원	8만1천원	9만6천원	11만1천원	12만6천원	14만1천원
	4만원 기준	4만원	6만8천원	8만8천원	10만8천원	12만8천원	14만8천원	16만8천원	18만8천원
	5만원 기준	5만원	8만5천원	10만9천원	13만5천원	15만9천원	18만5천원	20만9천원	23만5천원
제공근 고려 방식	균등화지수	1.0	1.41	1.73	2.00	2.24	2.45	2.65	2.83
	3만원 기준	3만원	4만2천원	5만2천원	6만원	6만7천원	7만3천원	7만9천원	8만5천원
	4만원 기준	4만원	5만7천원	6만9천원	8만원	9만원	9만8천원	10만6천원	11만3천원
	5만 원 기준	5만원	7만1천원	8만7천원	10만원	11만2천원	12만2천원	13만2천원	14만1천원

23) 취약계층에게 농식품바우처를 지급 시 식품 교환을 위해서는 최소한 지불해야 하는 비용(교통비, 시간, 거동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바우처 지원 금액이 최소한의 비용보다 적을 경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움. 2018년 설문조사(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김다혜(2018))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규 식품지원제도의 참여하게 될 경우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제약을 제시하고 수용의향금액을 조사분석한 결과 1인 1개월당 최소 26,976원은 되어야 지원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지급 식품

- 취약계층 및 지자체·기관 담당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지원 금액이 동일하다고 할 때 구매지원이 필요한 식품류로 쌀, 과일, 육류, 어패류, 채소, 우유·유제품·계란 등의 신선식품을 우선시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빵·과자류, 장류·조미식품 등 가공식품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평가함.²⁴⁾

표 3-15 식품류별 바우처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정도 평가

구분	쌀	채소류	과일류	육류	어패류	유제품·계란	잡곡류	곡물가공품	빵·과자류	장류·조미식품
취약계층	4.39	4.16	4.22	4.39	4.07	4.11	4.01	3.71	3.36	3.63
지자체	3.43	3.28	3.38	3.60	3.37	3.36	3.09	3.20	3.00	3.01
기관	3.80	3.67	3.76	3.86	3.57	3.78	3.42	3.32	2.87	3.07

주: 5점 척도 기준.

자료: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 177).

-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 시 어떤 식품을 대상 식품에 포함시킬 것인가는 취약계층에서 부족한 영양소, 식품소비 패턴, 취약계층의 선호도, 국내산 공급여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지원 식품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함. 취약계층 부족 영양소 실태를 바탕으로 다소비식품과 취약계층의 바우처 지원 선호 품목 조사결과 등을 반영할 경우 쌀, 우유, 채소, 과일, 육류, 잡곡, 계란 등의 신선식품이 대상 품목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²⁴⁾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 p 177.

표 3-16 지원 대상 품목의 적절성 평가

구분	필요 영양소	다소비 식품	취약층 선호도	국내산 공급	물량대비 단가	섭취 편리성	타제도 비중복성	점수
쌀	○	◎	◎	◎	◎	○	△	17
채소	◎	◎	◎	◎	◎	△	○	18
과일	◎	○	◎	◎	○	◎	○	18
우유	◎	◎	◎	◎	○	◎	△	18
잡곡	◎	◎	◎	△	○	△	◎	16
계란	◎	◎	◎	◎	◎	△	◎	19
육류	◎	◎	◎	△	△	△	◎	15
가공/즉석식품	○	△	△	△	△	◎	◎	12

주: ◎ 매우 적절(3점), ○ 적절(2점), △ 부적절(1점)

자료: 이계임·김상효·임소영·허성윤·한정훈(2019: 162)의 일부를 수정.

○ 지원 대상 품목으로서의 적절성 평가를 토대로 지원 대상 식품의 대안은 4가지로 설정함. ① 쌀과 우유를 한정하는 안, ② 쌀, 우유, 채소, 과일을 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안, ③ 쌀, 우유, 채소, 과일, 잡곡, 계란을 포함하는 안, ④ 쌀, 우유, 채소, 과일, 잡곡, 계란, 육류를 포함하는 안, ⑤ 가공식품과 즉석식품도 포함하는 안(제외대상 규정방식)임.

- ① 쌀과 우유를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는 안은 국내 자급 여력이 있고 소비 확대가 필요한 품목으로만 제한하는 안으로 대상 품목이 분명하고 개수가 적어 운영이 용이하며 국내 농업과의 연계가 분명한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 정부양곡할인지원제도, 우유무상지원제도와 차별성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음.²⁵⁾

- ② 쌀, 우유, 채소, 과일을 포함하는 안은 ①안에 비해 품목 수가 많아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반면, 취약계층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취약계층에서 부족한 식품/영양소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채소·과일 소비를 장려하는 국제적 추세와도 부합됨.²⁶⁾

- ③ 쌀, 우유, 채소, 과일, 잡곡, 계란을 포함하는 안은 ②안에 잡곡과 계란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더욱 확대한 안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나, 취약계층에서 고령층 비중이 높다는 점과 부족한 영양소 공급원을 고려한 경우로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음.

25) 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2018) p.136

26) 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2018) p.136

- ④ ③안에 육류를 포함하는 안임. 취약계층의 바우처 지원 품목으로서 육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농식품바우처 지원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영양 개선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더욱이 국내산 가격 수준이 높아 국내산 제약 시 예산 대비 소비량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⑤ 가공 및 즉석식품까지 포함하는 안으로 적용범위가 대부분의 식품을 포함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일부 품목을 제외시키는 방안으로 국내 공급여력이 고려되지 않아 농업과의 연계 측면에서 논리가 취약하고, 부족한 식품/영양소를 정책 대상으로 하지 않아 효율적인 식품소비 확대 및 영양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반면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장보기와 조리엔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이나 아동 등이 편리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공 및 즉석 식품을 포함한다는 장점이 있음.²⁷⁾

5. 농식품바우처 활용률 제고 방안

- 2018년 실증연구 참가가구의 바우처 활용률(바우처 사용액/바우처 지급액)은 86.9% (2개월차 기준)로 이며 지역별로는 완주(89.8%)가 춘천(83.9%)에 비해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가구의 활용률이 젊은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60대 88.2%) 1인 가구(87.9%)에서 활용률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향후 1인 고령 가구의 바우처 수요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한편 마트까지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활용률이 높은 것은 접근성이 낮을수록 바우처를 한 번에 다 소진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 바우처를 전부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부 사용한 비중이 전체 참가가구의 87.8%이었으며, 일부만 사용하거나(9.9%) 전혀 사용하지 않은 비중(2.3%)

²⁷⁾ 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2018) p.136

은 12.2% 수준임.

- 농식품 바우처를 전액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잔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31.2%)’, 또는 ‘깜빡 잊어서(20.4%)’와 같은 개인적인 이유가 대다수이지만, 마트까지의 접근성 문제(12.9%), 낮은 바우처 금액(9.7%), 바우처 대상 품목의 한계(8.6%)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 특히 마트까지의 접근성은 고령가구와 농촌지역에서 더 어려운 점으로 지적됨.
- 정리하면, 마트까지의 접근성 문제와 바우처 대상 품목 제한, 바우처 금액이 불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농식품바우처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바우처 사용처와의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바우처를 취급하는 가맹 식료품점을 확대해야 하며, 수혜자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주문, 배달 서비스 등 전달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 취지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가능한 많은 대상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단계적인 대상 품목의 확대도 필요함.

6. 구축효과 최소화

- 구축효과란 바우처 지원 전 식품비로 10만원을 지출하던 가구가
 - 바우처 지원금액 3만원을 전액 식품비로 사용하여 총 식품비 13만원을 지출하면 구축효과 0%
 - 바우처 지원금액 3만원을 전액 타 용도로 사용하여 총 식품비 10만원을 유지하면 구축효과 100%
- 농식품 바우처 지원 전과 후, 전자바우처 지원그룹은 시기적 요인에 따른 자연증감분(통제집단의 증감분)에 비해 18,000~32,000원 가량 높은 식품 지출액을 기록함.

- 한편, 종이바우처 지원그룹은 시기적 요인에 따른 자연증감분(통제집단의 증감분)에 비해 11,000~40,000원 가량 높은 식품 지출액을 기록함.
- 가구원수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액이 다른데, 평균 바우처 지급액이 38,707원임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식품 지출액 증감분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1970~1980년대에 구축효과와 유사한 개념인 ‘한계식품소비성향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for Food at Home, MPCF)’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됨. 대부분의 연구에서, 현금지원보다 현물지원의 한계식품소비성향이 컸음. 이는 현금지원의 구축효과가 현물지원보다 큼을 의미함.
 - 현금지원의 구축효과는 80.8~97.0%, 현물지원의 구축효과는 14.0~83.0% 수준, 거의 모든 연구에서 현물지원의 구축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3-17 해외 연구 구축효과 사례

연구(연구 년도)	현금지원(Money Income)의 한계식품소비성향(MPCF)	현물지원(Food Stamp Bonus)의 한계식품소비성향(MPCF)
Hyman and Shapiro (1974)	0.14	0.35
Benus, Kmenta, and Shapiro (1976)	0.05	0.86
West (1979)	0.03	0.56
West, Price, and Price (1978)	0.03	0.31
West and Price (1976)	0.05	0.30
Chavas and Young (1982)	0.13	0.37
Neenan and Davis (1977)	0.06	0.45
Johnson, Burt, and Morgan (1981)	0.06	0.17
Smallwood and Blaylock (1983)	0.10	0.23
Allen and Gadson (1983)	0.08	0.30
Senauer and Young (1986)	0.050~0.073	0.264~0.327
Levedahl (1995)	0.066	0.263
Ohls et al. (1992)	0.108~0.192	0.277~0.301
Fraker et al. (1992)	둘의 차이가 0.05 이내로 매우 작은 수준(0.004~0.034)	
Hoynes and Schanzenbach (2007)		
Hoynes and Schanzenbach (2009)	0.087~0.098	0.163~0.296

주 1) 한계식품소비성향(MPCF)은 지원금이 1원 증가할 때 식품소비지출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측정함. 예를 들어, MPCF가 0.10이면 지원금 10,000원 증가 시 식품소비지출액은 1,000원 증가함을 의미하며, 9,000원은 구축됨을 의미함. 즉 구축효과는 (1-MPCF)로 해석할 수 있음.

2) 이 표에서 현물지원의 MPCF가 현금지원의 MPCF보다 대체로 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현금지원의 구축효과가 현물지원보다 작음을 의미함.

- 기본적으로 바우처 지원으로 인한 구축효과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예를 들어, 바우처 지원 전에 10만원을 지출하던 가구가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현금 3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식품비 지출액을 13만원으로 즉각적으로 늘리지는 않을 것임.
 - 식품비 10만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가구일수록 바우처 지원금액 3만원을 타 용도로 지출하기보다는 식품비로 지출하려고 할 것임. 식품비 10만원이 충분했던 가구는 아마도 지원금액 3만원을 전액 타 용도로 지출할 수 있음.
 - 타 지원사업이나 공공지출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구축효과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생 자체보다는 크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관심 대상임.

- 농식품바우처 지원의 구축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여 수혜자들이 농식품 구입을 줄이지 않도록 유도해야 함.
 - 현재(t 기) 식품비 지출을 늘리는 것이 향후($t+n$ 기)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바우처 지원금액을 타 용도가 아닌 식품비 지출로 유도
 - 취약계층 영양상태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 및 교육

- 또한, 차년도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자격과 연동한다면 수혜자들로 하여금 농식품 구입을 줄이지 않는 것에 대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올해 구축효과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당해년월(t 년, 혹은 t 월) 구축효과의 크기와 차년월 지원금액을 연동하여 구축효과 최소화를 유도
 - 구축효과 측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별 차별화된 정책의 실행 가능성 여부도 검토 필요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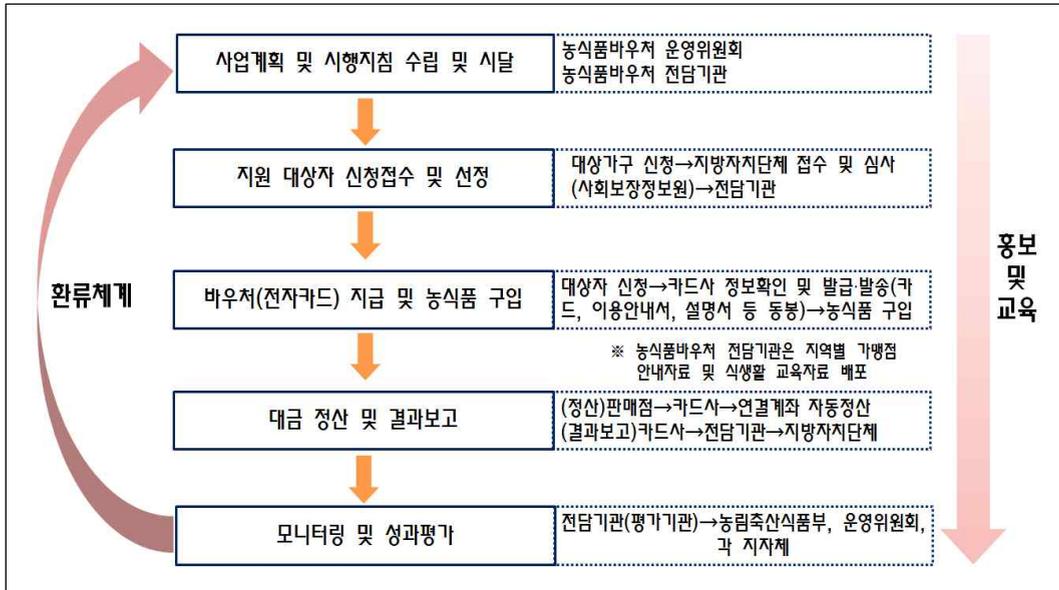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타 정책과 연계

1. 농식품바우처 추진체계

1.1. 추진체계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사업 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임. 위원회에서는 매년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금액과 대상품목 등 사업계획과 시행지침을 결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함.
- 추진체계는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단계,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단계, 바우처(전자카드) 지급 및 농식품 구입 단계, 대금 정산 및 결과보고 단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환류체계 단계로 구성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관 및 사업의 성격상 직접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바우처 발급 및 운영 등 지원사업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토록 해야 할 것임.

그림 4-1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흐름



자료: 직접 작성.

1.2.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 농식품바우처 운영위원회 구성

-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바우처 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운영위원회는 상설법인을 필요로 하는 성격은 아니며, 본 사업 1년차에는 1월에 구성·소집하여 당해 연도 6월까지 운영함. 2년차 사업 부터는 직전 연도 11월에 소집하여 12월까지 2달간 운영하여 2년차 사업내용을 결의함.
- 매년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목표, 추진계획 등을 수립·제시하고,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품목 등의 사업 세부지침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매년 진행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평가 결과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최종 포함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농식품바우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법률 및 시행령 등으로 정하여 지속가능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엄격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의 활동내역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여 위원회 활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것임.
- 위원장의 선임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담당부서의 국장급 이상 또는 과장급 이상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선임하거나, 위원 구성 후 위원들의 자발적인 논의에 의해 호선하여 구성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외부 전문위원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공모절차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집단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원들이 너무 상위직급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 위주로 구성되면, 자칫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무자 및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문가를 포함하여 10~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결의방식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에 따라 안건을 결의하도록 함.
 - 농업, 소비자, 복지, 학계, 푸드플랜, 식생활 교육, 성과평가 등 다양한 전문가 및 실무자들로 구성

■ 농식품바우처 전담기관의 선정 및 운영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맡아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바우처 지원사업 업무 전반을 전담 수행하는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전담기관의 역할은 사업의 운영은 물론, 사후관리와 대국민 홍보 등 까지를 모두 포함함.
- 전담기관의 선정에 관해서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도입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즉시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과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모를 통해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즉시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산하기관 중에서 선정하는 것임. 이는 자금의 집행 및 사업의 도입 등 제반사항을 신속하게 준비·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업 초기에는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전담기관을 즉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모를 통해 전담기관을 선발·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4-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산하기관 및 기능

기관명	설립목적 및 기능	지역네트워크 보유 여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수산식품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	○
한국마사회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 육성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효율적으로 수행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	×
농업정책보협금융원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
(재)한식진흥원	한식의 진흥과 한식세계화 등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산업단지조성, 식품기업 유치, 참여기업 지원, 홍보 등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총괄 운영·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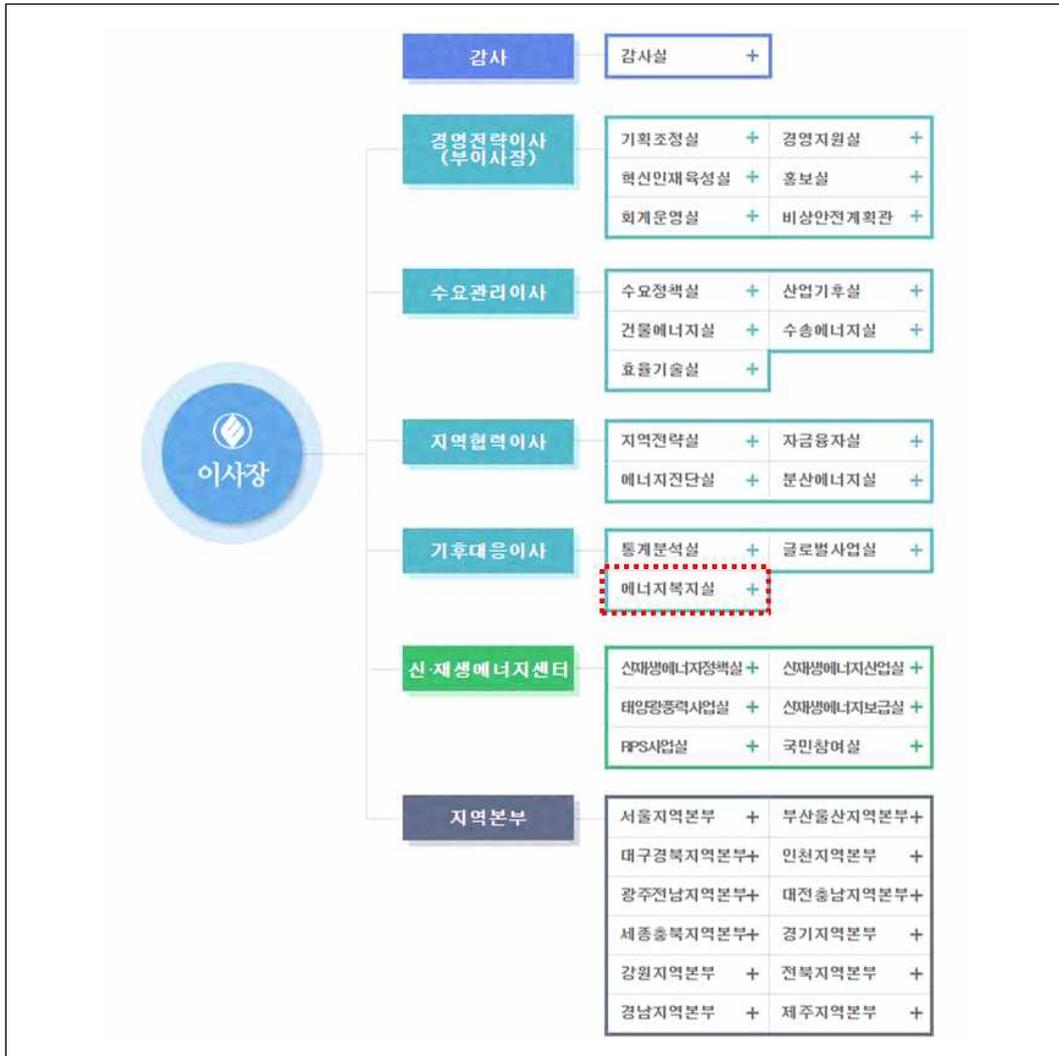
자료: 각 사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 사업의 전국적 시행에 맞추어 전국 네트워크 지사를 보유한 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담보할 수 있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 이에 해당함.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역할·기능, 사업의 성격 측면에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물류·유통·판매 기능을 보유한 농협중앙회도 고려해볼 만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시행 홍보와 우리 농식품의 소비촉진 등의 역할과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홍보를 담당하면 기관별 전

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담기관의 선정 후, 기관내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별도 조직은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임. 조직의 구성은 타 바우처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초기 운영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바우처 사업 운영을 위해 ‘에너지복지실’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담당업무는 ① 사업지침 마련 및 사업 운영·관리, ② 결재·정산 시스템 구축, ③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④ 홍보 및 교육, ⑤ 시책 조사 및 개발 등임. 조직 구성원은 실장을 포함하여 총 10인의 직원이 근무 하고 있음. 실 내부적으로는 ‘복지기획팀’과 ‘복지운영팀’으로 세부 조직을 구성하고 있음.
- 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별도 콜센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경우 외부 아웃소싱 업체에 콜센터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 아웃소싱 업체에서 실제 콜센터 대응 업무는 5명 내외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음.

그림 4-2 에너지 바우처 전담기관 및 조직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new_main.asp>.

- 농식품바우처 사업 초기에는 업무의 강도와 부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므로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필요시 인력을 충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인력구성은 사업총괄, 기획, 홍보 및 교육, 운영 및 관리시스템 등이 주요 기능을 이루게 될 것임.
- 별도로 마련해야할 콜센터의 경우, 사업 초기 전담기관이 직접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여

주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조치방법, 안내방법 등에 대한 프로토콜이 완성된 이후에는 아웃소싱 업체를 이용해도 무방할 것임.

표 4-2 농식품바우처 전담기관 기능별 주요 역할 및 소요 인력

구분	주요 업무 및 역할	예상 소요 인력
사업총괄	부서 업무 총괄 책임	1인
기획	농식품바우처 운영위원회 활동지원, 사업기획 등	1인
홍보 및 교육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홍보, 식생활 교육 연계 등	3인
운영 및 관리시스템	관리 시스템 운용, 대금 정산 관리, 가맹점 관리, 사업 집행·모니터링 등	4인
콜센터	사업안내 및 민원처리 등	2인

자료: 직접 작성.

- 전담기관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약 20억 원 규모임. 인건비는 사업총괄 책임자 연 7,000만 원, 일반직원은 5,000만원을 기준으로 총 5억 7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및 경상운영비는 시스템 개발비를 포함하여 연 7억 3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 조사 및 모니터링을 위해 7억 원 가량이 소요되므로 총 액을 약 20억 원 규모로 산정한 것임.

■ 카드사 선정 및 계약

- 카드사의 선정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카드사에게도 사업에 참여할 충분한 유인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함. 카드사 입장에서는 시스템 개발비용, 가맹점 수수료, 자재비, 인건비 등 소요되는 비용 구조 등 기업의 관점에서 이윤구조를 먼저 고려할 것임.
- 카드사는 매년 계약하기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번 계약으로 3~5개년 가량 사업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 사업규모에 따라 몇 개 카드사를 참여시킬지 그 규모가 달라질 것이며, 본사업에 들어간다면 적어도 2곳 이상의 복수의 카드사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 발급하는 카드의 형태는 충전식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형태가 가능함. 체크카드는 나이제한(만 12세)의 이슈가 존재하고, 신용거래로서 각종 금융상의 규제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충전식 선불카드는 선 입금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금액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또한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낙전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음. 다만, 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결제망을 계약·구축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 농식품바우처 카드는 충전식 선불카드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되, 지원금액의 상향조정 등 장기적으로는 체크카드로의 확대를 고려해볼만 함. 체크카드는 사용자의 계좌와 연동되어 바우처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사용자의 예금에서 병행 결제되므로 카드사 입장에서도 체크카드 방식을 훨씬 선호하며, 이미 구축된 카드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음.

■ 농식품바우처 가맹점 선정

- 농식품바우처 가맹점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농업계(산업계)에서 발굴·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임. 물리적으로 전담기관이 이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임. 추후 농식품바우처의 부정사용 방지 및 관리·감독 업무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것이므로 전담기관이 이를 뒷받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임.
- 가맹점의 역할을 하게 될 유통사들도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기업의 이윤 관점에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므로 일정부분의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해야 할 것임. 예컨데, 너무 많은 가맹점의 선정은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 시키지만, 각 가맹점별 기대수익을 줄이게 되므로 유통사들의 참여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대상 가맹점의 기본 요건은 ① 쌀·잡곡, ② 우유, ③ 채소·과일, ④ 계란 4개 농식품군 중 3종류 이상의 식품을 판매하는 곳이어야 함. 다만, 품목별 구색 측면에서 도시지역인 동 지역은 품목군별로 복수의 브랜드, 품목을 취급하여야 할 것이며, 농촌지역은 읍·면 지역은 단수의 브랜드,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라도 포함해야 할 것임. POS시스템을 보

유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하여야 하며, 기저귀 바우처 사업에는 지마켓과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도 입점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가맹점의 포함 여부도 고려할만 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지정 복지사업에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곳은 제외하되,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지정 복지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곳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이용자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사용매장” 표시를 도입하도록 함.

■ 농식품바우처 관리 시스템 및 POS 시스템 개발

- 카드 사용자별, 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포별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며, 모든 거래내역이 통계DB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이를 카드사에게 개발을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카드사가 직접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카드사 선정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임.
- 관리 시스템 뿐만 아니라 POS시스템도 개발이 필요함. 농식품바우처 전자카드에 품목 제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OS 결제시스템 상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함. 유통사 마다 상품분류체계가 다르고 시스템 개발 이슈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음.
- 품목제한을 위한 POS시스템 개발은 소규모 점포이거나 체인형태가 아닌 개인점포에서는 POS 개발을 위해 개발사가 점포마다 방문해서 포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할 것임. 따라서 품목제한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중앙에서 POS를 공유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임. 예를 들어, 체인점 형태인 대형마트, SSM, 하나로마트, 지역 중규모 이상 체인마트 등임.
- 이처럼,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접근성과 합목적성은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있음. 정부가 정책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사용가능 품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이용자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구조이며 반대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많은 가맹점을 포함하려면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본래 정책적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가맹점 교육 및 서약서 작성 등을 거쳐 구매가능 품목에 한해서만 판매를 하는 조건으로 품목제한 POS 시스템이 없는 채로 가맹점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며, 신의 성실의 원칙과 의무를 다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POS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가맹점 방식이 자리를 잡는다면,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파머스 마켓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전통시장을 농식품바우처 가맹점으로 포함시킬 수 있음. 농식품바우처 카드를 전통시장내 교환소에서 카드결제 금액 만큼의 이용권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식임. 미국의 파머스 마켓은 카드 결제 금액의 100%를 보너스 이용권으로 제공하여 2배 금액의 이용권을 교환하여 주고 있어 SNAP 이용자의 참여를 유인하고 있음.

1.3.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

■ 각 지방자치단체로 대상자 선정 협조 공문 발송

- 농식품바우처는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재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전국 단위에서 통일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므로 중앙정부 책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농식품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환경적, 신체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로 전달되어야 하므로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취약계층의 영양 및 건강 상태를 보장하며, 농산물 수요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농업 수요 창출과 소비기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앙정부 책임 추진이 요구

됨.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산 농산물 공급망을 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더욱이 농식품바우처 전담기관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임.
- 사업 시행 이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접수의 창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동시에, 대상가구를 직접 추천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열어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임.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대상가구에 포함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홍보 및 식생활 교육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대상가구가 직접 신청을 통해 사업이 시행되므로 대상가구인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가 중요함. 전담기관은 정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상시적인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각 복지사업을 홍보·소개하는 매체에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 홍보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연초에 여타의 급여성청이 집중되는 시점에 홍보, 포괄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도 있음.
- 식생활 교육은 전담기관이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관리업무를 담당하되, 수행은 전문성을 갖춘 식생활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식생활 교육은 3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선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표 4-3 농식품바우처 식생활 교육 추진방법별 기대효과

구분	교육 방식	기대효과 평가			
		낙인효과	교육의 효과	참여율	운영 효율성
대상가구 방문교육	농식품바우처 대상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면대면으로 식생활 교육을 실시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대상가구 집체교육	농식품바우처 대상가구를 한자리에 모아 식생활 교육을 실시	미흡	보통	보통	우수
공개형 집체교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방식의 식생활 교육을 실시	우수	보통	미흡	우수

자료: 직접 작성.

■ 농식품바우처 지원가구 접수 및 선정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는 대상가구가 직접 신청·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별도 보호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복지사,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단, 시설입소자의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의 SNAP제도에서도 먼저 신청서를 주 또는 지역 SNAP 사무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 사무소는 온라인 신청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단위에서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를 별도로 개발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담기관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온라인 신청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신청을 간소화하고 신청자를 늘리는데 대안이 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에는 신청자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간단 설문문항을 포함하여야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SNAP 신청서 양식을 참고할 만함. 신청·지원·접수 전 과정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용방법, 구매가능 식품 목록 등의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신청·접수의 창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그 중에서도 읍·면·동 주민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시·군·구 복지담당자는 대상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함.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을 통해 적격성을 심사하고 결과를 농식품바우처 전담기관에 통보하면, 농식품바우처 전담기관은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하도록 함.

- 농식품바우처 전담기관은 최종 선정된 대상가구 정보를 카드사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대상가구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력이 실제 어느정도도로 뒷받침 될 수 있을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전담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1.4. 바우처(전자카드) 지급 및 농식품 구입

■ 대상가구에 바우처(전자카드) 지급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 최종선정 가구는 전화 ARS를 이용하거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식품바우처 전자카드를 신청하도록 함. 카드사에서는 신청서 내용과 전담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대상가구 정보를 종합하여 카드를 제작하고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카드를 수령하도록 해야 함. 단, 예산소요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읍·면·동사무소로 일괄 우송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전달할 수 있음.
- 전자카드와 함께 대상가구에 보내질 우편에는 농식품바우처 사용안내서와 가맹점 정보가 반드시 동봉되어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는 농식품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정보를 통지해야함.
- 카드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 또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다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바우처 참여기관들의 수고와 노력을 덜 수 있을 것임.

■ 농식품 구입

- 농식품바우처 지원가구는 지급받은 농식품바우처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지역내 농식품 바우처 가맹점에서 구입 가능한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음.

1.5. 대금 정산 및 결과 보고

- 대금 정산은 카드사와 펌뱅킹 계약을 체결한 전담기관의 전용계좌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예탁계좌를 통해 자동정산이 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로의 결과 보고를 통해 각 지역내 농식품바우처 사용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함. 각 지자체 담당자는 불용률 점검과 수혜가구별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임.

1.6. 모니터링 및 효과평가, 환류체계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가 매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평가 결과를 차년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대상자의 영양, 건강 상태의 변화 등 수혜자 대상 사업효과를 평가하려면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함. 명확한 사업효과 평가를 위해서는 적절한 성과 지표도 개발되어야 함. 사업운영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성과보고 시스템 또한 필요할 것임.
- 부적정수급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정보(사회보장정보원, 카드사 정보)를 활용하여 즉각적인 확인과 관리를 추진하며, 오남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예방을 강화하며, 정기적으로 부적정 수급을 발굴하고 그 처리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적격자이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과 시·군·구에 정책

홍보를 강화하며, 상담 과정 중 필요한 가구에 신청을 독려하고 관련 제도 신청 시 통합 신청을 추진함. 누락 사례의 발굴 시 누락되었던 사유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의 성과 및 효과평가는 사업의 시행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나 전담기관보다 제3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서는 매년 사업 시행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별도로 있어야 할 것이며, 성과 및 효과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및 분석은 필수적인 요소인 것으로 판단됨.
- 매년 10월 1일에 분석 데이터 수집을 완료하여 10월 중 분석을 실시하고 11월 1일 분석결과를 전담기관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환류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임. 전담기관은 별도로 전담기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함.

표 4-4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최초 1년차 월별 추진계획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농식품바우처운영위원회구성	■					■						■
농식품바우처 전담기관의 선정 및 운영		■	■	■	■	■	■	■	■	■	■	■
카드사 선정 및 계약		■	■									
농식품바우처 가맹점 선정		■	■									
농식품바우처 관리 시스템 및 POS 시스템 개발		■	■	■								
각 지방자치단체로 대상자 선정 협조 공문 발송		■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홍보		■	■									
농식품바우처 지원가구 접수 및 선정		■	■	■								
대상가구에 바우처(전자카드) 지급					■							
식생활 교육					■	■	■	■	■	■	■	■
대금 정산 및 결과 보고					■	■	■	■	■	■	■	■
성과 및 효과평가					■	■	■	■	■	■	■	

<참고 사례> 에너지 바우처

■ 사업의 내용 및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임. 여름바우처(7월~9일)와 겨울바우처(10월~다음해 4월)로 구분되며, 1인 가구 총 9만 1천 원, 2인 가구 12만 8천 원, 3인 이상 가구 15만 6,500원을 지원함.

○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형태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두 종류로 운용함.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구매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할 수 있음. 가상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청구형 난방에너지를 에너지 공급사가 요금을 차감하는 형태임.

- 지원받은 사람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가능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판매처에서 구매함. 또는 가상카드를 지급받은 대상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택하여 읍·면·동 주민 센터에 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참고 표 1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및 내용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여름바우처	5천원	8천원	1만 1,500원	● 요금차감(전기)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겨울바우처	8만 6천원	12만원	14만 5천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지원금액	9만 1천원	12만 8천원	15만 6,5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지원대상

○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은 아래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임.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4.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대상자격이 인정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 해당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 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기타 생계·의료급여를 수급 받지 않는 가구(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사업집행 현황

○ 에너지바우처 수혜 대상 추정가구는 전국 60여만 가구이며, 2017년 54만 6,000 가구가 에너지 바우처의 수혜를 받는데 이어, 2018년 56만 7,000 가구가 혜택을 받음.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2015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4년간 총 2,000억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음.

참고 표 2 에너지 복지사업 집행 현황(2017년)

단위: 백만 원, 만 가구

지원유형	사업명(수행기관)	예산	지원실적
에너지 비용지원	에너지바우처(에너지 공단)	51,168	54.6
	등유바우처(에너지재단)	3,185	0.9
	연탄쿠폰(광해관리공단)	22,093	6.9
에너지 효율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에너지재단)	48,901	2.6
	취약계층 LED 교체 사업(에너지 공단)	23,285	3.2
합계		148,632	68.2

자료: 감사원. 2019. 감사보고서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지원실태-

○ 한편,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7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아동 가정위탁세대까지 지원대상을 넓힐 계획을 발표함. 신규 지원 대상은 현재 지원 중인 노인, 장애인 등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으로서, 최소한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보장 범위를 넓힌 것임. 계획대로 추진되면 약 5만 4,000 가구에 추가지원이 전망하고 있음.

■ 에너지바우처의 정책추진 경과 및 예산

- 에너지바우처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되기 시작함(2013년 5월)
 -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구축(43번과제)
 - 사회서비스 제공방식 효율화 '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공동활용'(60번과제)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KDI)를 거쳐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제도의 도입 확정됨(2014년 8월)
-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 및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함(2014년 12월 ~ 2015년 6월)
-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을 확정함(2015년 8월)
- 2015년 11월부터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부터는 여름바우처(하절기)를 신설함.
- 한편,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음.
 -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에너지 소외계층 지원강화) (37-4번과제)
-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은 612억여 원 수준이며(민간경상보조, 2018년 기준), 재원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임.

■ 에너지바우처의 전달 및 관리체계

- (신청단계)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구두 또는 서면)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선정단계)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을 통해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대상자 여부, 가구특성(노인·영유아·장애·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가구원 여부), 가구원수 등을 확인

○ (발급단계) 행복e음을 통해 시·군·구에서 대상가구·지원금액 정보를 국가바우처 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에 전송하고, 바우처 발급 및 이용.

- 실물카드(보건복지부의 “국민행복카드”), 가상카드(요금차감) 등 2가지 방식으로 발급

○ (사용·정산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보장정보원·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시·군·구·전담기관·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에너지바우처의 수행기관 및 협력체계

○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수행함.

- 에너지법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 에너지 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6-20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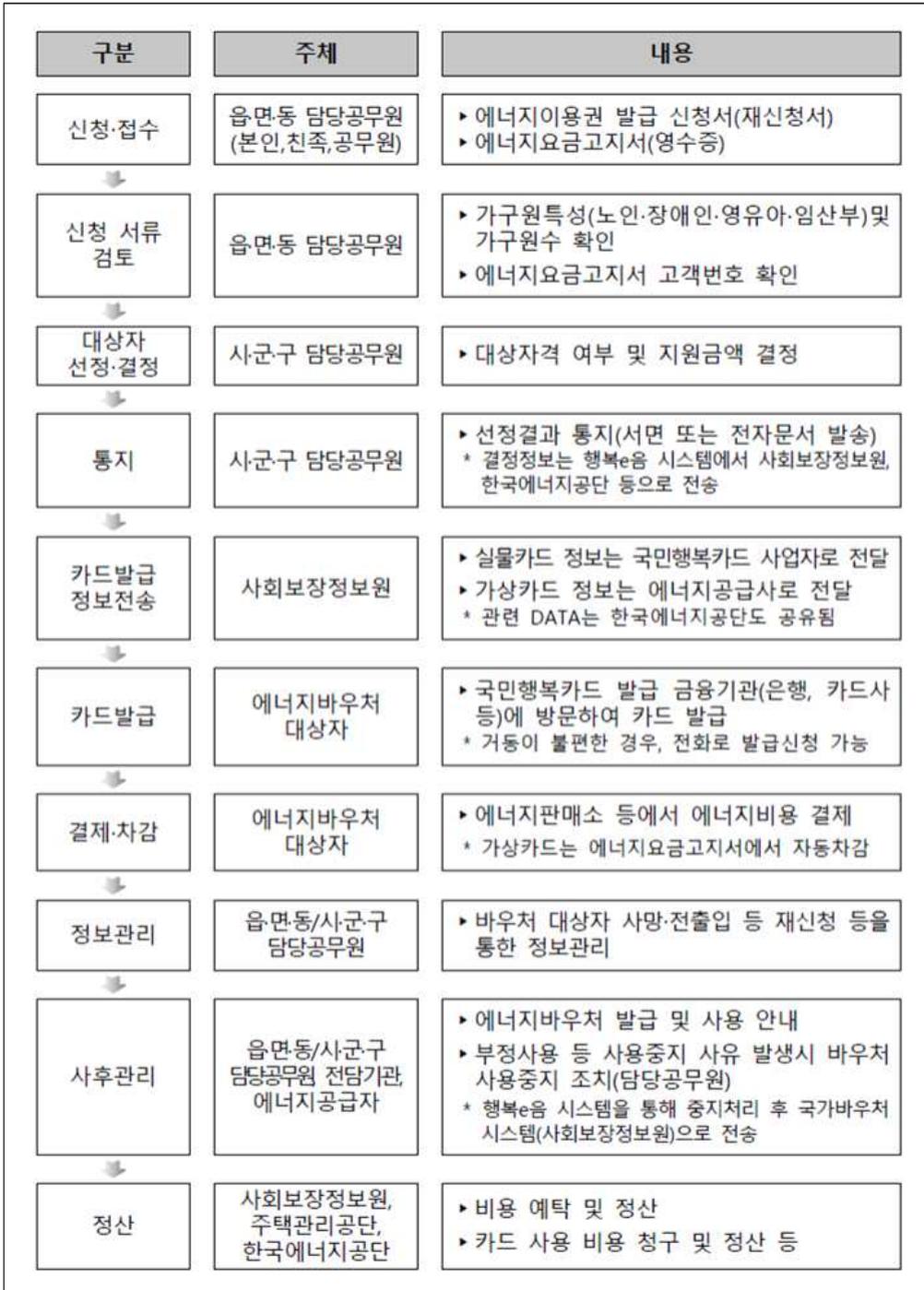
- 한국에너지공단은 조직 내 에너지복지실(10명)을 두고 운영·관리

- 별도로 사업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를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는 사회보장정보원과 주택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위탁받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와 사업비용을 정산함. 주택관리공단은 위탁받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에너지공급사와 사업비용을 정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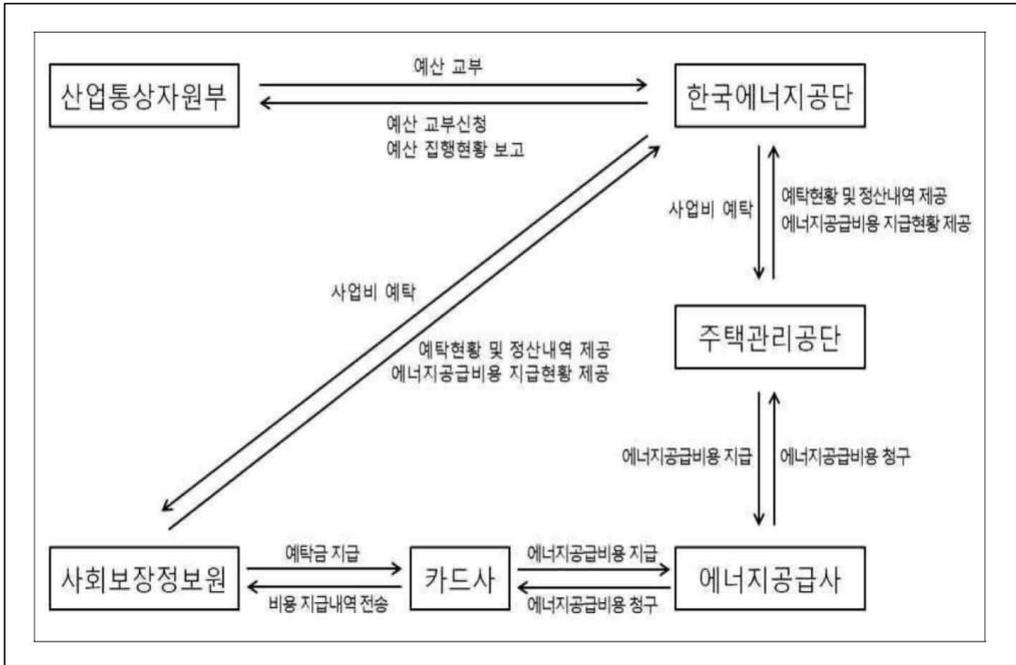
○ 에너지의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에너지원별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함. 에너지원별 공급자(세부 주관기관) 공급망 내 전달체계를 운영·관리하고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홍보와 사후관리에도 협조함.

참고 그림 1 에너지 바우처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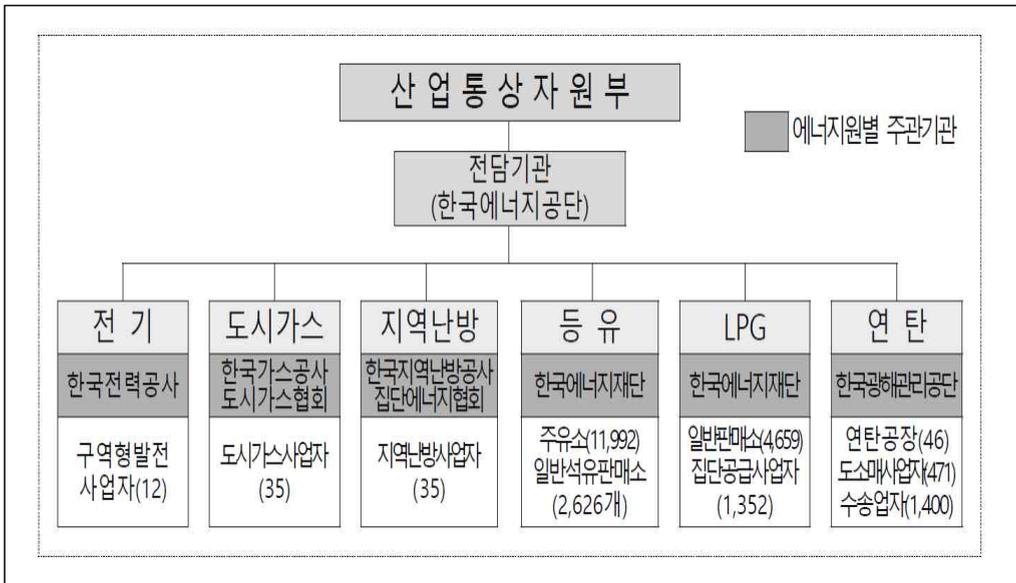
자료: 2018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서

참고 그림 2 위탁 및 추진체계 업무흐름도



자료: 2018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서

참고 그림 3 에너지 공급사 협력체계



자료: 2018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서

■ 부정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벌

- 에너지 바우처는 비정상적인 바우처 사용의 예방, 관리, 사후조치 등을 위해 지자체와 관리 강화하고 있음.
 - 지자체 및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통해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부정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에너지공급사·바우처 대상자 점검 실시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 등 지원이 불가능한 에너지 또는 물품 구입 등)
 -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매매하는 경우 등
- 에너지공급사
 - 대상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공급한 에너지의 대가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판매하는 경우 등
- 부정사용 적발·신고시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등)하고, 대상자에게 결정·통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게 한 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은 현장조사, 부정사용 당사자의 확인 등을 거쳐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에너지바우처 사용중지 처리함.

2. 타 정책과 연계방안

2.1. 식생활교육과 연계 및 활성화 방안

2.1.1. 지역별 식생활교육 체계 현황 - 식생활교육네트워크

○ 식생활교육네트워크는 정부의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로서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별 네트워크-시군 네트워크 체계로 운영됨.

- 총 17개 시도 네트워크와 113개 시군구 네트워크로 구성

○ 식생활교육네트워크는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식생활교육 전문도서관, 바른식생활 교육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음.

표 4-5 식생활교육네트워크 주요 교육내용

교육대상	1차시	2차시	3차시
유아	다양한 과일 및 채소에 대한 노출로 편식 줄이기	식생활 물레방아로 균형잡힌 밥상 차리기	과자, 사탕, 음료 대신 건강간식 선택하기
초등학생	균형잡힌 밥상을 선택하고 바른식생활 형성하기	건강한 식품 선택하기	간단한 간식이나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 키우기
중고등학생	내가 참여하는 함께하는 가족밥상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키우기	아침밥의 중요성 알기
고령자	균형잡힌 식생활 실천하기	만성질환 예방위한 식사지침 실천하기	가정에서 텃밭가꾸기로 건강한 삶 꾸리기
직장인	높은 아침 결식과 잦은 외식으로 무너진 식생활 패턴 바로잡기	직장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 식생활 실천방법 익히기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이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건강밥상 차리기
일반소비자 (가족단위)	식생활 물레방아로 가족구성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족밥상 즐기기	건강한 밥상을 위한 식생활능력 키우기	음식물 자원 낭비 줄이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영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	균형잡힌 한식 밥상 기초 익히기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하기	한식밥상 기초조리 능력 익히기
기타	위의 내용 외 다양한 바른 식생활 교육 주제 선택 가능		

자료: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홈페이지(<http://foodedubank.or.kr/PageLink.do>).

○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상세 내용

- 유아, 초·중·고생, 고령자, 직장인, 일반소비자, 다문화가족 대상
-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보건소 등에서 교육 실시
- 기관당 최소 1회 ~ 최대 3회 교육
- 이론(40분 이상) 또는 이론+실습(60분 이상) 수업으로 진행
- 전문 강사와 강사료 전액 지원, 실습재료비의 50% 지원
- 주요 교육내용은 균형 잡힌 식생활, 지속가능한 식생활, 건강밥상 차리기 등임.

2.1.2. 식생활교육네트워크 운영현황(전북, 강원)

○ 전북네트워크는 7개 농식품부 지정사업과 4개의 지자체 자율사업을 진행하였음.

○ 전북네트워크 산하에는 총 5개 시군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음.

- 전주, 익산, 남원, 고창, 순창에서 지역네트워크 운영됨.
- 현재 완주지역 네트워크는 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일부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은 완주에서 진행하고 있음.
- 향후 완주네트워크 또는 완주·전주 네트워크를 출범시킬 계획임.

○ 현재 강사는 총 50명이며 주장사 25명, 보조강사 25명임.

○ 일반 국민 대상 식생활 교육은 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진행하는 방식, 청년 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집단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됨.

- 고령자 건강밥상 교실은 경로당 등 지역 내 모임장소를 활용하여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총 80개소, 1,600명이 참여하였음.
- 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농업·농촌 체험 및 텃밭활동과 연계하여 식생활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각각 17개, 10개 기관이 참여하였음.

- 청년집밥 프로그램은 총 16회에 걸쳐 요리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강원네트워크는 14개 시·군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음.

- 양양, 양구, 평창, 철원은 네트워크 운영 안 됨.

○ 춘천 네트워크는 아래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유아, 아동, 청소년 식생활교육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센터 등을 찾아가 간단한 실습과 함께 이론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강사는 강원네트워크 전체 70명, 춘천네트워크 5명임.

표 4-6 농식품부 지정사업

단위: 명, 천원, 시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교육현황		교육기간	소요예산 (천원)	교육형태	
			기관수	인원수			이론 시간	실습 시간
농식품부 지정사업 (7개)	지역단위 민·관협력워크숍 등	식생활교육 참여 관계자	30	70	4월~월	2,300	6	
			10	10	8월~9월	1,100	2	
			50	100	12월	7,700	8	
	바른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후 교실 학습지원	초등학교	11	1,219	4월~11월	26,750	4	4
	농업·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7	1,089	4월~11월	39,600	1	3
	텃밭·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0	724	4월~11월	14,700	3	12
	영양(교)사 및 학교조리사 대상 식생활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	학교교사 및 영양 (교)사, 학교조리사	1	40	8월6일~ 8월10일	10,500	14	16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식생활교육 담당자	2	2	9월3일~ 9월6일	900	17	8	
고령자 건강밥상 교실	고령자	80	1,600	4월~10월	30,000	0.5	0.5	
합계			211	4,854		127,550		

자료: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홈페이지(<http://foodedubank.or.kr/PageLink.do>)

표 4-7 지자체 자율사업

단위: 명, 천원, 시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교육현황		교육기간	소요예산 (천원)	교육형태	
			기관수	인원수			이론 시간	실습 시간
지자체 자율사업 (4개)	식생활교육박람회	전 국민	20	20,000	10월 25일~ 10월 29일	55,350	5	40
	학교급식 잔반제로 캠페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00	8,000	4월~12월	19,000	0	0
	청년집밥 프로젝트	청년·대학생		330	3월~11월	10,000	16	48
	지역농산물 활용 식생활교육 강사양성	지역주민		45	6월~8월	9,100	16	10
기타	일반운영비			3월~12월	39,000			
합계			220	28,345		132,450		

자료: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홈페이지(<http://foodedubank.or.kr/PageLink.do>).

표 4-8 강원네트워크 2019년 사업계획

단위: 명, 천원, 시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교육현황		
			기관수	인원수	
농식품부 지정사업	1.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후 교실 식생활교육 학습지원	초등학교	2	2,657	
	2. 농업·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0	1,500	
	3. 텃밭을 활용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5	3,600	
	4. 보육기관 및 학교 교사 등 대상 식생활교육	보육기관/학교 교사	2	40	
	5. 지역단위 식생활교육 워크숍	식생활교육 관계자	50	250	
	6.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	4	4	
	7. 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 교실	고령자	25	1,000	
지자체 자율사업	8. 시군지역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 한 기반조성사업	가. 시군지역민관협력프로그램	시군지역 식생활교육 관계자	420	
		나. 시군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과정	도민 및 시군 활동가	14	40
		다. 시군사업담당자 연석회의	시군사업 담당자		40
	9. 지역농수산물 소 비확대를 위한 교 육 및 홍보	가. 우리지역 생산지탐방	도민	18	360
		나. 로컬푸드 응원 식생활교육체험전	도민	10	3,000
		다.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도민	14	4,200
		라. 농업데이 가래떡데이 캠페인	도민	8	3,200
	10. 전생애 대상 식 생활교육 및 식 문화 개선 프로 젝트	가. 생애주기 식생활교육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56	3,280
		나. 청춘아 잘먹자 캠페인	대학교, 군부대 청년	5	3,000
		다. 캠핑밥상을 건강하게 캠페인	도민	5	500
		라. 전통식문화 확산 찾아가는 '장' 학교	도민, 학부모	20	430
		마. 읍면동 건강리더 양성 과정	읍면동 부녀회, 이장단	3	180

주: 사업총괄 총규모 300,000천원.

표 4-9 춘천네트워크 2019년 사업계획

단위: 명, 천원, 시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교육현황	
				횟수	인원수
제안 사업	1. 고령자 건강밥상 교실		고령자	10	200
	2. 지역농수산물 소비확 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1) 바른식생활 및 전통음식 교육	주부, 학부모, 강원도민	4	80
		2) 지역농산물생산지 탐방 및 교류		2	40
		3)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1	500
		4) 캠핑밥상을 건강하게 캠페인		1	80
		5) 농업데이, 가래떡데이 캠페인		1	400
	3.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프로젝트 (취약계층, 특수학급)	1) 유아, 아동, 청소년 식생활교육	취약계층, 전생애강원도민	30	600
2) 청년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교육체험			1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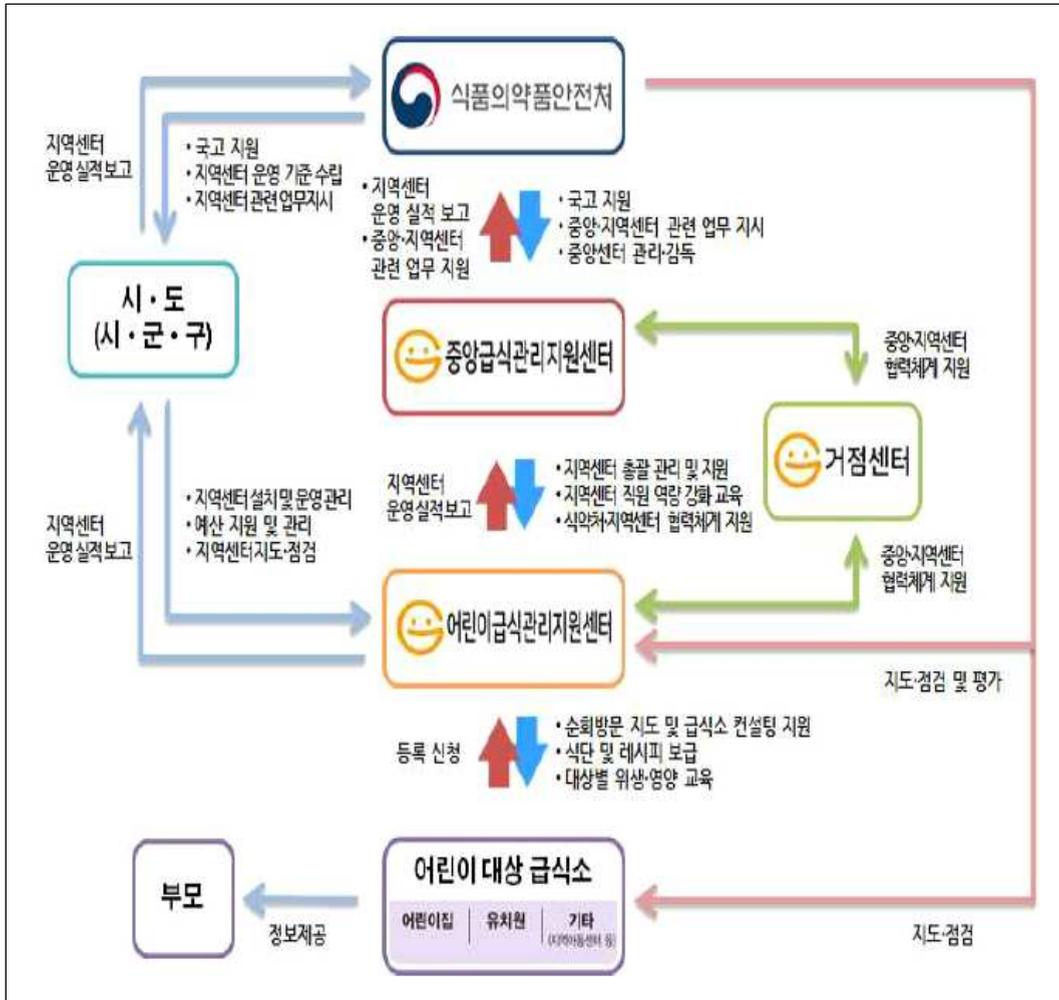
주: 사업총괄 총규모 20,000천원.

2.1.3. 지역별 식생활교육 체계 현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전국에 225개 센터 운영 중이며 시군 단위까지 센터 운영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약처 소관으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각 지역센터를 관리하고 식약처와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 지역관리센터가 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영양 및 위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그림 4-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체계



자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cfsm.foodnara.go.kr/?menu=117>).

○ 완주군 센터의 영양 관련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 (영양관리 지원) 영양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영양관리 자료 개발 및 보급, 현장지도
- (어린이 급식 식단 개발 및 보급) 레시피 개발 및 보급, 1인 1회 분량의 실문 시연, 식단 분석
- (영양교육) 어린이, 조리원, 보육기관 관계자, 학부모 등 대상 영양교육,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영양 및 식사지도 프로그램 운영

- 춘천시 센터의 영양 관련 사업은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로 나눌 수 있음.
 - (위생관리) 급식소 실태 파악 및 컨설팅, 방문위생교육(주방기구 살균소독, 소독액 제조방법, 보존식 보관법, 손씻기 등)
 - (영양관리) 식단 작성 및 보급, 계절별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방문교육(편식, 올바른 식습관, 골고루 먹기 등)

2.1.4. 농식품바우처 수혜자 대상 식생활 교육 방안

■ 교육 기관

- 국내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주체는 식약처 소관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농식품부와 연계된 국민식생활교육네트워크임.
- 두 단체 모두 식생활교육을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단체 설립근거, 인력의 전문성, 운영방식, 교육대상의 범위 면에서 차이가 있음.
 - (설립근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 민간 주도 하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내부 정관에 의해 운영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1조, 제12조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됨.
 - (인력의 전문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은 영양사 면허증, 위생사 면허증, 식품(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일한 경력을 보유해야 함. 식생활교육네트워크의 강사는 30시간의 이론과 실습수업을 수료하면 강사로서 활동 가능함.
 - (운영방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약처로부터 재정지원과 관리감독을 받음. 식생활교육네트워크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단체이나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
 - (지원대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주로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음. 식생활교육네트워크의 교육대상은 전 연령층임.
 - (사업내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병행하고 있음. 식생

활교육네트워크는 식생활 교육을 집중적으로 수행함.

○ 농식품바우처 지원가구 대상 식생활교육 주체로서는 식생활교육네트워크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인력의 전문성이나 조직 설립근거가 분명한 점에 있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우위에 있으나 기존 교육대상이 영유아로 한정되어 있는 점,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점은 한계로 작용함.

- 반면 식생활교육네트워크는 농식품부와와의 관계가 긴밀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우수성, 이점, 생산 방식, 유통과정, 밥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우리 농산물 소비의 의의 등을 교육과정에서 잘 구현할 수 있으며, 기존 교육대상이 전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기존 사업구조에서 농식품바우처 지원가구로의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식생활교육네트워크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강사의 전문성이 약하다는 점은 보완할 부분임.

■ 교육방식

○ 농식품바우처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기존의 바우처 지원가구가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홍보를 함과 동시에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첫 번째 방안은 교육대상이 명확하고 바우처를 이용한 식재료 구매와 활용을 연결하여 바우처와 식생활교육의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별도의 예산 및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원가구의 낙인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임.

- 두 번째 방안은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나 바우처 지원가구의 식생활 교육 이수를 담보할 수 없고 일부 연령대는 기존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없어 식생활교육 지원의 효과가 낮음.

○ 대상자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바우처 지원가구의 식생활교육을 장력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사업을 그대로 이용하되 바우처 지원가구에는 재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교육 내용

- 교육 내용은 건강한 농식품 선택,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 규칙적인 식사 습관, 가정식 등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진행

■ 교육 대상

- 타 교육 프로그램과의 중복성, 교육 참여자의 낙인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식생활 교육 대상을 제외한 전체 취약계층을 포함(바우처 대상 포함)하는 방식을 검토

■ 교육내용 전달 방식

- 개별교육보다는 집합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습과 시청각자료를 사용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식생활교육 내용은 이해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지만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교육효과가 커질 수 있으므로 바우처 수급 기간 동안 최소 3회 이상 수강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2.2. 푸드플랜과 연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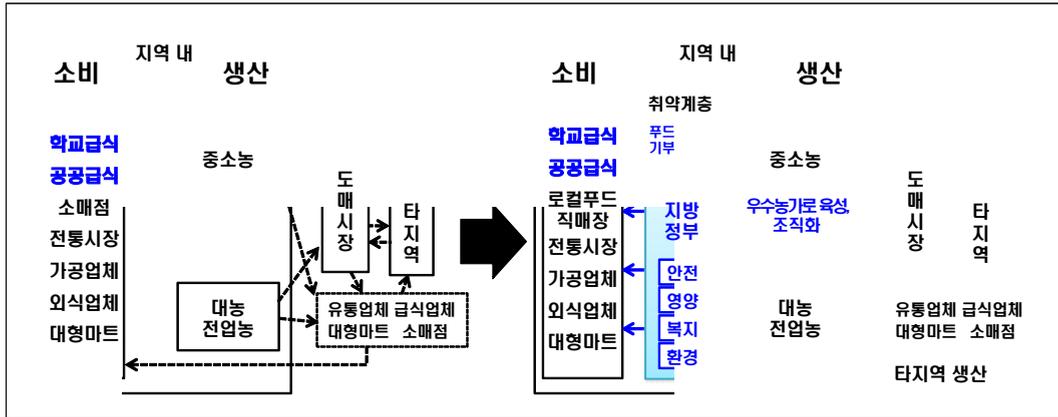
2.2.1.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 및 추진현황

■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

-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산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기획·공급 시스템과 식품안전, 식품복지, 영양·건강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포괄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을 말함.

- 이는 과거 시장중심의 먹거리 유통구조가 효율성 측면만이 강조되면서 야기한 많은 문제점(저품위의 식재료 유통, 대형유통업체로의 쏠림현상 심화, 공해·환경부담, 취약계층의 소외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누구나 안전·신선한 먹거리를 보장받으면서 상생·환경·복지 등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이른바 ‘먹거리 정의 실현’에 기초한 것임.

그림 4-4 지역 푸드플랜으로의 생산-소비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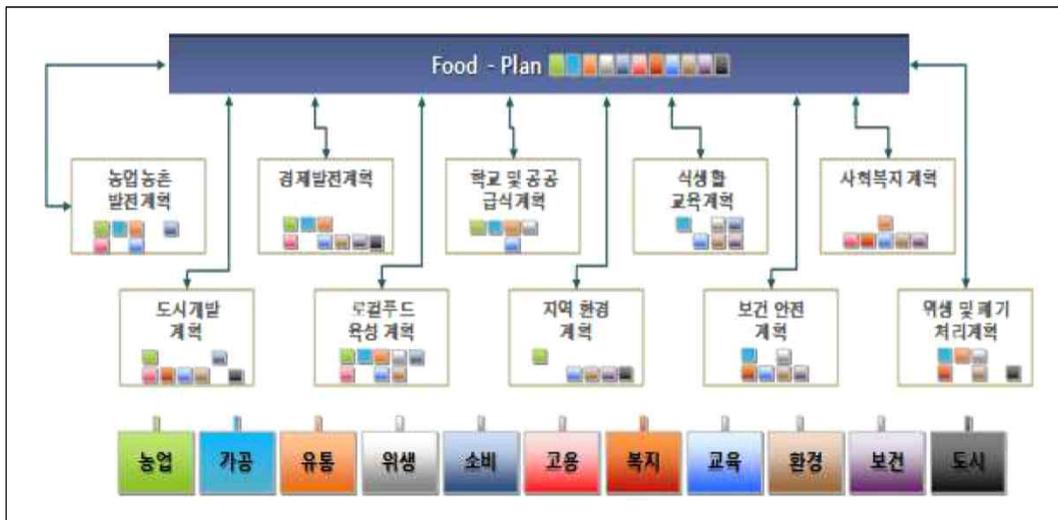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이러한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이를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며, 주요요소로는 ① 로컬푸드의 지역 내 선순환, ② 공공에 의한 맞춤형 생산·공급, ③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④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 등임.
 - ① 로컬푸드의 지역 내 선순환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지역내 수요처(공공급식, 직매장, 하나로마트, 외식업체 및 가공업체)로 순환시키는 것을 의미함.
 - ② 공공에 의한 맞춤형 생산·공급은 지역의 수요에 맞추어 연간 공급계획을 산출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을 뜻함.
 - ③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은 당일수확·당일판매, 저온유통체계 등을 통해 신선도를 보장하고 친환경인증, 우수관리인증(GAP),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
 - ④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먹거리 조달과 안전관리, 식생활

교육, 도농교류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조직들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뜻함.

- 지역 푸드플랜은 전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와 관련된 기존의 사업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이를 보완함으로써 먹거리 관련 사업계획이 총체적으로 연결된 가장 상위의 계획을 의미함.
- 따라서 지역 푸드플랜에는 ‘먹거리 정의 실현’에 관계된 농업의 생산과 가공·유통에서부터 식품의 소비와 위생, 지역 산업의 고용과 복지, 교육, 환경, 보건, 도시계획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정책 분야의 계획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음.

그림 4-5 푸드플랜의 위상



자료: 삼락농정포럼. 2017. 농정현안 4차 정책세미나 자료

■ 지역 푸드플랜의 유형

- 지역 푸드플랜은 해당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크게 ① 도시형, ② 농촌형, ③ 도농복합형, ④ 광역형으로 구분하여 기초모형을 제시하고 있음.
 - ① 도시형은 지역에서의 자체적인 먹거리 생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촌지역과의 연

계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도농상생 및 지역교류 중심의 생산지역과 유기적인 관계형성의 접근이 요구됨. 마찬가지로 도시형은 먹거리 생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먹거리 정의와 복지, 건강, 안전 등이 중심이 되는 특징이 있음.

- ② 농촌형은 먹거리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생산기반의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중심이 됨. 농촌형은 타지역의 수요지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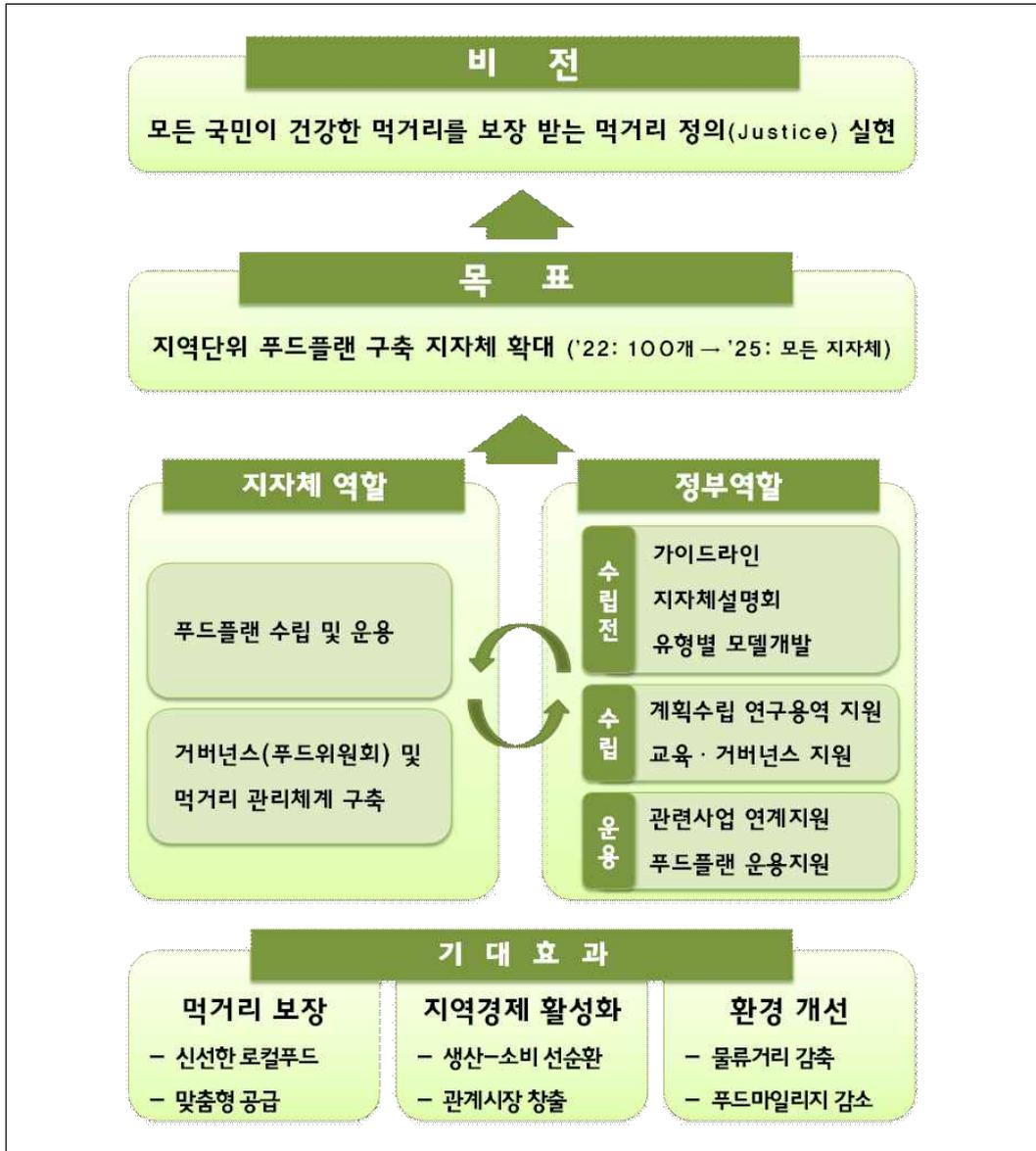
- ③ 도농복합형은 지역내 전반적 생활 수준에 있어서 도-농간의 균형발전과 지역 공동체 강화가 중심이 됨. 도시 거주자의 소비와 농촌 거주자의 생산을 연계시켜 거주지내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전체의 먹거리 보장을 강화하는 방식의 접근이 요구됨.

- ④ 광역형은 지리적으로 도 단위에 걸친 푸드플랜 유형을 말함.

■ 지역 푸드플랜의 정책현황

○ 「지역 푸드플랜 구축·확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선도과제로 선정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12월 지역 푸드플랜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함.

그림 4-6 지역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기본계획의 비전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 받는 먹거리 정의(Justice) 실현”으로 제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을 2022년 100개 지역에서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목표를 설정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의 푸드플랜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메뉴얼)을 제시하고, 지자체 설명회 개최, 유형별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매년 선도지자체를 선정하여 연구용역·교육·관련사업 등의 추진을 지원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공모를 통해 광역형 1개소(충남), 도시형 2개소(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농촌형 2개소(충남 청양군, 전남 해남군), 도농복합형 4개소(강원 춘천시, 전북 완주군,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등 9곳의 선도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함.
 - 선정된 9곳의 선도지자체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국고 404억 원을 지원
 - 2019년 공모에는 총 25곳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금까지 총 34곳이 선도지자체로 선정

표 4-10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선도지자체 선정 현황

지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계
서울		서대문구	1
경기		부천시,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연천(공동)	6
강원		춘천시	1
충북		괴산군	1
충남	충청남도	청양군, 서산시, 부여군	4
대전		유성구, 대덕구	2
전북		완주군,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익산시	5
전남	전라남도	해남군, 나주시, 담양군, 순천시, 장성군	6
경북		상주시, 구미시, 안동시	3
경남		거창군, 김해시, 진주시	3
부산	부산시	-	1
제주	제주시	-	1
계	4	30	3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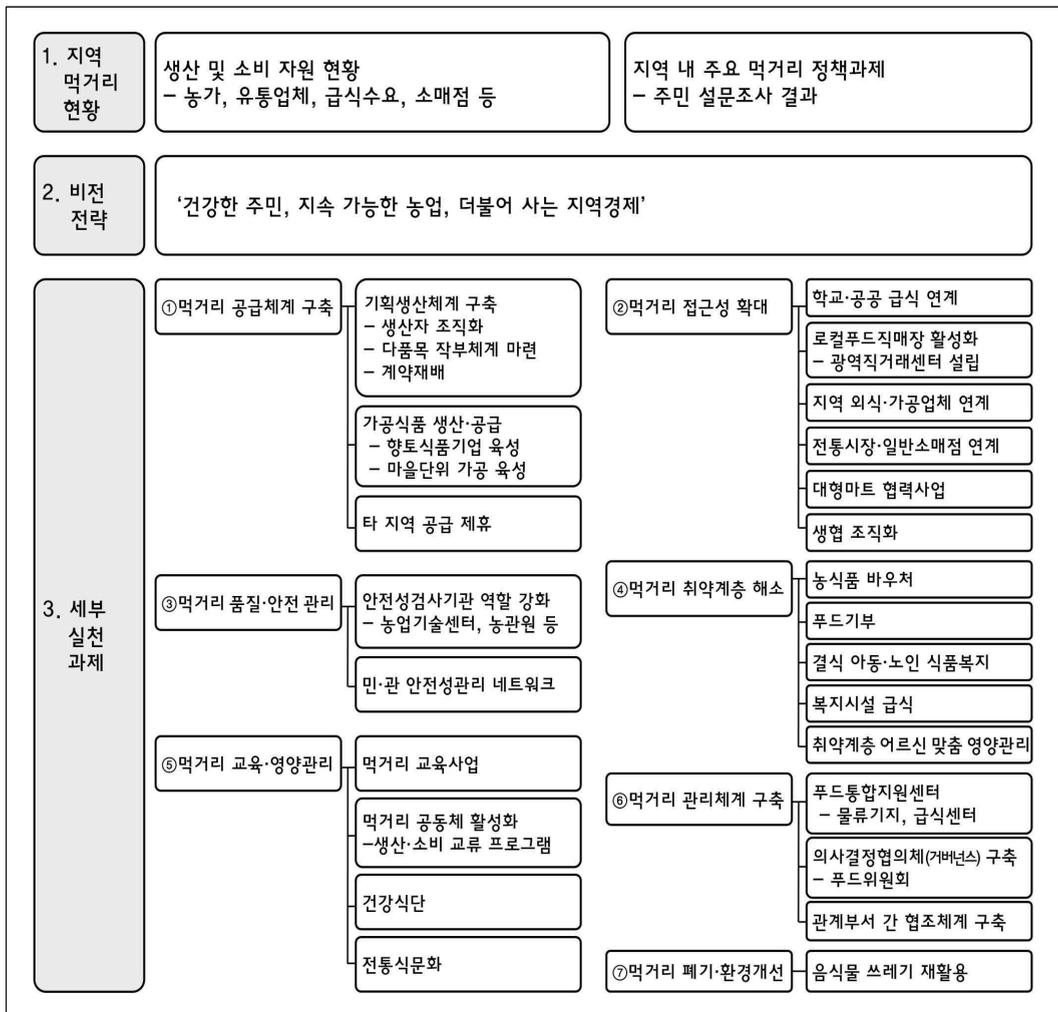
■ 지역 푸드플랜의 수립 및 구성 절차

- 지역 푸드플랜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① 지역 먹거리 현황, ② 비전과 전략, ③ 부문별 세

부실친과제로 구성되며, 세부실친과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별 여건 및 중요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지역 푸드플랜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비전을 수립하고, 지역 먹거리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생산과 소비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의 자원으로서의 기능과 능력을 판단해야 하며, 지역의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친과제를 도출하게 되는 구조임.

그림 4-7 지역 푸드플랜의 일반적인 구성의 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지역 푸드플랜의 주요 추진사례 1: “전주푸드 2025플랜”

- 2015년 11월 전주시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주푸드 2025플랜”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전주시는 푸드플랜의 수립과 함께, 민관거버넌스 조직으로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이 통합지원센터가 푸드플랜의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 내 전담조직으로 ‘전주푸드팀’을 운영하고 있음.
- 전주 푸드플랜은 아래의 표와 같이, 6대 전략과제와 15대 정책과제 그리고 25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5개년 계획이며, 사업비는 시비 140억 원이 소요됨.

표 4-11 전주 푸드플랜의 내용

6대 전략과제		15대 정책과제	25개 실행과제
1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 확립	① 기획생산체계 확립 ② 공동체에 기반한 지역가공 촉진 ③ 상생형 제휴푸드 연결망 구축	- 생산농가 조직화, 역량 강화 - 연중기획생산을 위한 지원 - 농민가공센터 설치, 운영 - 마을 및 지역공동체 가공 활성화 - 제휴푸드 협력시스템 구축
2	시민먹거리 접근성 보장	④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개선 ⑤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혁신 ⑥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 확대 ⑦ 공공조달(관공서, 병원, 대학 등) 혁신 ⑧ 지역상권 연계협력(전통시장, 향토마트, 지역음식점 등)	- 생활권 거점매장 개설(3개소) ■ 전주푸드센터 개설(4개소) ■ 슬로푸드 레스토랑(2개소) ■ 학교급식 전주푸드 연계 강화 ■ 영유아, 어린이 급식, 노인급식 ■ 엄마의 밥상 ■ 전통시장, 향토마트, 지역음식점 공급
3	통합적 관리체계 확립	⑨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HUB)설치, 운영 ⑩ 생산-유통-소비단계 안전성 관리체계 확립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전주푸드 안전성 관리네트워크 구축 ■ 환경농업 전환 촉진 지원
4	음식시민 양성	⑪ 소비자 조직화 및 역할 증진 및 다음세대식-농 교육 활성화	■ 소비자 지역먹거리 교육사업 ■ 시민참여형 동아리 육성 ■ 식-농 교육사업단 육성
5	농업 6차산업화와 협동경제 육성	⑫ 농업의 6차산업화(가공, 음식, 체험, 축제, 도농교류 등) ⑬ 협동경제 육성(창업공동체 육성)	- 도농연계 투어 프로그램 개발 ■ 도-농 연계형 먹거리 협동조합 육성 ■ 창업 아카데미, 지역일자리학교
6	거버넌스 구축	⑭ 전담부서 확대 재편, 역할 증진 ⑮ 공공형 재단법인 설치, 운영	■ 전담부서 확대 재편, 역할 증진 ■ 현장실행조직 역할 수행 ■ 전주푸드플랜 평가, 정책피드백

자료: 전주시청 홈페이지.

- 사업규모는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체계를 관내 2,000농가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급식 수요처 300개소로 확대 등 전주푸드의 광역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실제 전주 푸드플랜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전주푸드 생산자 조직화와 전주푸드 자체 인증 확대, 공공급식 수요처 발굴로 요약할 수 있음. 2018년 전주푸드 생산자회를 결성하고 500농가를 조직화하였으며, 공공급식 수요처 110개소를 발굴함. 또한,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중소형 농기계 등 기획생산을 위한 출하농가에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전주푸드 자체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약 100농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
- 한편, 수원시에 광교직매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서대문구 등과 MOU를 통해 전주 푸드를 지역의 경계를 넘어 공급하고 있음.

■ 지역 푸드플랜의 주요 추진사례 2: “서울시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

- 서울시는 전주시에 이어 2017년 6월,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고 이를 추진 중에 있음.
-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의 비전을 내걸고 건강, 보장, 상생, 안전을 핵심가치로, 5대 분야 26개 과제를 체계화하여 서울 푸드플랜 수립을 완성함.
 - 5대 분야 중 거버넌스 등 기반구축을 제외하면 건강, 보장, 상생, 안전의 핵심가치가 곧 정책과제인 셈

그림 4-8 서울 푸드플랜의 미션



자료: 서울특별시. 2017. 먹거리 마스터플랜.

- 서울시의 푸드플랜은 서울이라는 도시 지역적 특성상 농업의 생산기능이 없으므로 먹거리 보장, 상생, 건강 그리고 안전을 중심 가치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 산지 지자체와 협약 등을 통한 조달체계 마련을 미션으로 삼아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민관 협치의 먹거리 거버넌스를 운영함.

그림 4-9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체계도

비 전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핵 심 가 치	건강, 보장, 상생, 안전	
정 책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역량강화 ○ 모든 시민의 충분하고 질 높은 음식섭취를 위한 먹거리 지원 ○ 먹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농산물의 공공조달 확대 ○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감시 시스템 강화 ○ 먹거리 활동 주체 간 협력과 참여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정 책 과 제 (5대분야 26과제)	① 건강한 먹거리 (5개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2. 생애주기별 바른 식생활 체험교육, 음식수업 3. 건강한 우리음식 계승과 서울의 맛 즐기는 문화 확산 4. 서울 건강 먹거리 제공 기준 설정 5. 모든 정보가 한 곳에 '서울 먹거리 포털' 운영
	② 먹거리 보장 (5개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먹거리 지원 2.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3. 결식아동 맞춤 급식 서비스 제공 4. 사회적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식공동체 활성화 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확대로 소규모 복지관 등 지원
	③ 상생을 위한 먹거리 (5개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조달 직거래 유통체계 확립을 통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 2.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한 교육·홍보 및 거버넌스 구축 3. 도시텃밭의 확대와 안전먹거리 생산 4. 먹거리 상생 가치 실현을 위한 도농 교류 확대 5.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④ 안전한 먹거리 (7개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축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강화 2. 안전관리를 통한 모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 차단 3. 불량식품 4대 핵심 분야 집중점검으로 식품안전 강화 4. 유전자변형식품(GMO)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 5.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시민 신뢰도 제고 6. 시민검사청구권 확대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7. 「시민먹거리 지킴이」 1만명 양성
⑤ 서울의 먹거리 마스터플랜 추진 체계 마련 (기반구축)		
대 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먹거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2.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실행 전략 수립 	내 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2. 서울 먹거리 통계

자료: 서울특별시. 2017. 먹거리 마스터플랜.

○ 서울시는 4대 미션과 관련하여 각각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건강’은 나트륨 섭취량 감소, 과일·채소 섭취량 증가 등 4개의 정책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장’은 식품안전성 확보가구 증가의 1개 정책목표가, ‘상생’은 공공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증가, 공공급식 인원 확대 등 4개, ‘안전’은 식품안전체감율 상승의 1개 목표를 제시함.

그림 4-10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정책목표(2020)

건강	<p>1. 1인 1일 나트륨 섭취량 3,890mg('14년) ⇒ 3,500mg 이하('20년)로 감소 ▶ 2015 식약처 나트륨 저감화 계획 목표 반영 : 4,878('10년) ⇒ 4,831('11년) ⇒ 4,583('12년) ⇒ 4,027('13년)</p> <p>2. 과일채소 1일 섭취량 500g 이상 섭취자 비율 39%('13~'14년) ⇒ 41%('20년)로 증가 ▶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목표 반영, 39.25%('10~'12년)</p> <p>3.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자 비율 27%('13~'14년) ⇒ 30%('20년)로 증가 ▶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목표 반영, 28.3%('10~'12년)</p> <p>4. 적정체중인구 비율 68%('13~'14년) ⇒ 70%('20년)로 증가 ▶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목표 64% 기 달성, 서울시 자체 목표 수립, 67.1%('10~'12년)</p>
보장	<p>5. 식품안전성 확보가구 비율 95%('15년) ⇒ 96%('20년)로 증가 ▶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식품안전성 확보가구 최고치를 목표로 설정</p>
상생	<p>6. 공공급식 친환경 식재료 비율 40%('16년) ⇒ 70%('20년)로 증가</p> <p>7. 공공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공급식대상인원 확대 2만5천명('17년) ⇒ 20만명('20년)으로 증가 ▶ 전체 공공급식이용 식수인원(총299,526명, 학교급식 제외)</p> <p>8.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3,181t('14년) ⇒ 2,545t('20년)으로 감소 ▶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사업 중장기 계획 정책지표 반영</p> <p>9. 도시농업실천공간 118ha('14년) ⇒ 250ha('20년)로 증가 ▶ 도시농업마스터플랜2.0에 의한 정책지표 반영</p>
안전	<p>10. 식품안전체감율 78%('16년) ⇒ 81%('20년)로 상승 ▶ 서울시 식품안전의식조사 전년대비 매년 1%씩 식품안전체감율 상승</p>

자료: 서울특별시. 2017. 먹거리 마스터플랜.

2.2.2. 지역 푸드플랜과 바우처 사업의 연계 방안

■ 연계 사업의 필요성

- 지역 푸드플랜의 핵심은 누구나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먹거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임.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푸드플랜은 먹거리 보장성을 천부인권적 자연권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미임.
-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스스로 충분한 양의 식품을 조달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경제적 약자라 할지라도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 가치에 매우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푸드플랜의 한 축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지역 푸드플랜에서 소비와 영양, 복지의 각 축을 담당할 수 있음.
- 더욱이, 지역 푸드플랜은 과거부터 추진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운동의 연장선으로서, 그 개념과 목표가 추상적인 구호와 같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고 지역 푸드플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정책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 하듯, 지역 푸드플랜의 일반구성 예시로서 세부실천 과제 ④ 먹거리 취약계층 해소의 세부 사업으로 농식품바우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연계사업의 리스트에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포함되어 기본계획이 작성됨.

표 4-12 「지역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에 포함된 연계사업 리스트

사업명	사업연계 내용
산지유통시설(APC) 설립, 개·보수	▶ 중·소농 조직화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센터 신설 및 개보수 비용 지원
원예시설현대화 사업	▶ 지역 중·소농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일반원예시설 현대화 및 ICT 융복합 확산 등 지원 (컨소시엄 참여 가능)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농진청)	▶ 농업인 공동가공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운영 (기반구축, 창업·보육, 제품 생산 등)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	▶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교육·홍보비 지원
레스마켓 조성	▶ 지역 외식업소가 지역농산물 판매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레스마켓 설치비용 지원
지역 하나마트 (농협)	▶ 지역농협 하나마트에 로컬푸드 입점 확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 푸드플랜 연계 농식품바우처 실증사업 실시
건강한 식생활 확산사업	▶ 바른 식생활 교육체험 등 식생활교육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먹거리 취약계층의 해소와 식품 복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산 및 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농촌형 푸드플랜 지역에서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도시형 푸드플랜 지역에서는 도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한편 농촌지역과의 연계 협력을 꾀할 수 있으며, 도농복합형 푸드플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먹거리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도-농, 빈-부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의 사례에서처럼 도시형 모델의 경우 먹거리의 생산, 가공 보다는 소비와 관련하여 먹거리 정의와 복지, 건강, 안전 등이 현안사항이므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빠른 연계추진이 가능

■ 연계 사업의 추진방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푸드플랜 지원정책 매뉴얼』에서는 푸드플랜의 지원 분야를 다음의 <표 4-13>와 같이 기반구축, 공급기반, 소비기반, 안전성 관리로 구분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총 32개의 사업을 푸드플랜 지원정책에 연계 사업으로 담아 추진하고 있음.

○ 지원분야별로는 공급기반 분야 연계사업이 17개로 가장 많고, 기반 구축분야 7개, 안전성 관리 5개, 소비기반 분야는 3개로 지원 분야 중에서는 연계사업의 수가 가장 적음.

○ 담당 부서별로는 원예경영과 사업이 10개로 가장 많고, 유통정책과 5개, 식생활소비급 식진흥과 4개 순이며, 농촌산업과와 식품산업진흥과, 친환경농업과 사업이 3개씩 차지하고 있음. 지역개발과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3개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함.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의 담당 정책으로 소비기반 분야 연계 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임.

표 4-13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지원분야별 주요 정책사업

지원분야	주요 사업	담당 부서	지원형태
기반구축 (7)	바른 식생활 교육·체험 확산 사업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보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융자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지역네트워크 구축)	농촌산업과	보조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농촌산업과	보조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산업과	보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유통정책과	보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신활력플러스)	지역개발과	보조
공급기반 (17)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 APC) 지원	유통정책과	보조
	산지유통활성화(융자)	유통정책과	융자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시설 및 수송차량)	원예경영과	보조
	시설원예현대화	원예경영과	보조, 융자
	ICT융복합확산	원예경영과	보조, 융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원예경영과	보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원예경영과	보조, 융자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원예경영과	보조, 융자
	과원규모화사업	원예경영과	융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	원예경영과	보조
	유통시설현대화	원예경영과	보조
	농식품 시설 현대화(융자)	식품산업진흥과	융자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융자)	식품산업진흥과	융자
	광역 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 지원	친환경농업과	보조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친환경농업과	보조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식품산업진흥과	보조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보조
소비기반 (3)	직매장 설치·교육·홍보 지원사업	유통정책과	보조
	전통시장 농산물 판매 촉진 사업	유통정책과	보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원예경영과	보조
안전성 관리 (5)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사업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보조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보조
	GAP 생산여건조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보조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농업과	보조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보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지원 정책 매뉴얼.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지역 푸드플랜 안에서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지원내용을 확정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임.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100% 보조사업 으로서, 국비와 지방비의 구성비는 국비 90%, 지방비 10%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부담은 해소하는 대신 정책 추진에 대한 관심과 책무를 담보하여야 함.
- 지방비의 구성비중은 최초 10%로 시작하되,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식품 접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민의 영양과 건강을 증진하며, 지역산 농산물의 소비증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점차 지방비의 구성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 함. 국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지역산 농산물의 소비 증진을 위해, 지역 내 로컬푸드 매장과 농산물 직매장 등을 농식품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정
-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 푸드플랜은 관련사업의 ‘패키지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패키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사업을 각각 신청할 필요 없이 푸드플랜에 각 사업 투자계획을 포함시켜 통합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며, 이에 따르면,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개별 신청할 필요 없이, 지역 푸드플랜의 패키지로 통합 신청할 수 있음.

2.3.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연계방안

2.2.1.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개요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시장 개방화로 인한 복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시행됨에 따라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산업계가 피해를 입는 농업과 농어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임.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논의가 시작되어 2017년 3월 경 출범하였으며 장학사업, 복지사업, 생산·유통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에 의해 시행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금 운영과 사업 추진을 담당

표 4-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 1의2.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중 농림·해양·수산에 관한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농학·수의학·수산학 등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협력 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6. 상생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2.2.2.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바우처 사업의 연계 방안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제외한 '건강상태'나 '설치능력'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두기 어려움. 가령, 단독으로 거주하는 1인 가구이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농식품바우처를 이용한 농식품 구매·교환활동과 취사·조리활동에 제약으로 인해,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따라서, 농식품바우처 지원가구가 스스로가 농식품을 구매할 능력과 조리할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농식품바우처 도우미'로 하여금 지원가구를 대신하여 농식품의 구매와 조리활동을 대신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임.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서 지역단위 농식품바우처 도우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사업모델은 상생협력형과 상생지원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상생지원형 모델에는 돌봄·보육·상담 등 농어촌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인력유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지역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창출 등으로 지역사회 상생 및 발전에도 기여

표 4-15 농어촌상생 사업모델 유형

구분	유형	내용
상생협력형	판로지원형	신상품 · 신서비스의 개발, 제공, 판로개척
	원료구매형	생산기술 전수, 시설 개선, 영농자재 공급, 안정적인 수급 보증을 위한 계약 거래 지원
	자원순환형	농수산물 가공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비료/사료로 만들어 생산자에게 재공급
	융·복합형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제공
	컨소시엄형	농업생산, 자재조달, 판매, 자원순환 등 역할분담을 통해 공급체인을 구축
	도농상생형	농촌은 도시민에게 농촌의 환경, 체험 등을 제공 기업은 임직원의 복지와 연계한 농촌관광 유도
상생지원형	생활필수항목 패키지 지원형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생활필수 항목(예술공연, 미용, 의료지원 등)을 패키지로 월별 지원
	사회서비스지원형	농어촌 지원을 위한 사회 서비스(돌봄·보육·상담 등) 인력 유입 지원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fund.or.kr>.

○ 또한,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게 찾아가는 푸드트럭 지원 혹은 지역의 돌봄형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등 지역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정책 연계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부 록 1

2020년 시범사업 추진(안)

- 지원대상: 중위소득 30% 이하(혹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또는 5세 이하 포함 가구
 - 지원가능 여부 확인: (1) 가구주가 생계급여 수급권자인지 여부 혹은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가구주의 소득이 중위소득 30%보다 낮음을 증명한 자료, (2) 65세 이상 또는 5세 이하 가구원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지자체 복지계 담당자가 지원가능 여부 최종 판단
 - 다만, 지원대상자 확보가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0%가 기준인 경우 지원가능 여부 확인은 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가구주의 소득이 중위소득 50%보다 낮음을 증명한 자료 선정
 - 차상위계층만 대상자로 할 경우 지원대상자 식별은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혹은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로 판단(보다 엄밀한 식별이 가능할 것이나,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 자발적 신청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참여율을 높이고 예산의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이 단순하고 명확해야 함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4~8만 원)

부표 1-1 가구원 수별 지급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	40,000원	57,000원	69,000원	80,000원

주: 영양보충차액지원(3만 원) = 최저식품비(24만 원) - 사용가능식품비(21만 원)

자료: 이계임 외, 2018.

- 대상 지역: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유형별로 2개 시군구 공모
 - 2017년 12월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

부표 1-2 생계급여 대상자(2017년 12월 기준)

구분	가구수	가구원수	평균 가구원 수	전체가구 중 비중
대도시	390,450	561,898	1.44	47.3%
중소도시	344,550	485,354	1.41	41.7%
농어촌	90,567	122,612	1.35	11.0%

주: 2017년 12월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 825,567가구(1,169,864명)를 분석.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원자료 분석.

부표 1-3 특정 가구 유형별 가구 수 및 비율

구분	가구 수(A)	가구비율 (A/전체 가구 수)
중위소득 30% 미만	1,565,374	8.29
중위소득 30% 미만/65세 노인 있는 가구	1,148,983	6.08
중위소득 30% 미만/5세 이하 있는 가구	42,954	0.23
중위소득 30% 미만&비수급자	682,901	3.61
중위소득 30% 미만&비수급자/65세 노인 있는 가구	399,816	2.12
중위소득 30% 미만&비수급자/5세 이하 있는 가구	7,689	0.04
중위소득 50% 미만	3,801,185	20.13
중위소득 50% 미만/65세 노인 있는 가구	2,375,685	12.58
중위소득 50% 미만/5세 이하 있는 가구	192,017	1.02
중위소득 50% 미만&비수급자	2,918,712	15.45
중위소득 50% 미만&비수급자/65세 노인 있는 가구	1,609,669	8.52
중위소득 50% 미만&비수급자/5세 이하 있는 가구	27,575	0.15

주: 2017년 12월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 825,567가구(1,169,864명)를 분석.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원자료 분석.

부표 1-4 지역구분별·유형별 가구 수 및 비중

구분	비중(%)	도시지역	도농복합 지역	농촌지역
해당 지역 평균 가구 수		51,569.1	40,432.8	11,520.7
중위소득 30% 미만	8.29	4,275.1	3,351.9	955.1
중위소득 30% 미만/65세 노인 있는 가구	6.08	3,135.4	2,458.3	700.5
중위소득 30% 미만/5세 이하 있는 가구	0.23	118.6	93.0	26.5
중위소득 30% 미만&비수급자	3.61	1,861.6	1,459.6	415.9
중위소득 30% 미만&비수급자/65세 노인 있는 가구	2.12	1,093.3	857.2	244.2
중위소득 30% 미만&비수급자/5세 이하 있는 가구	0.04	20.6	16.2	4.6
중위소득 50% 미만	20.13	10,380.9	8,139.1	2,319.1
중위소득 50% 미만/65세 노인 있는 가구	12.58	6,487.4	5,086.4	1,449.3
중위소득 50% 미만/5세 이하 있는 가구	1.02	526.0	412.4	117.5
중위소득 50% 미만&비수급자	15.45	7,967.4	6,246.9	1,779.9
중위소득 50% 미만&비수급자/65세 노인 있는 가구	8.52	4,393.7	3,444.9	981.6
중위소득 50% 미만&비수급자/5세 이하 있는 가구	0.15	77.4	60.6	17.3

주: 2017년 12월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 825,567가구(1,169,864명)를 분석.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원자료 분석.

- 30% 미만/65세 노인 또는 5세 이하 있는 가구 기준, 4개 지역씩 선정할 경우, 산술적으로로는 13,065가구가 대상 가구가 됨. 다만, 지원률 50% 정도를 감안할 경우, 3개 지역씩 선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19,597가구)

○ 대상 판매점: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참여가능한 판매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1) ① 쌀·잡곡, ② 우유, ③ 채소·과일, ④ 계란 4개 농식품군 중 3종류 이상의 식품을 판매할 것(단, 모두 국내산이어야 함)

- 2)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품목만 POS기기를 통해 결제가 되도록 할 것

- 3)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결제될 수 있도록 할 것

- 국내산·지역산 농산물만 취급하는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는 포함 노력 강구

○ 카드사 선정: 시범사업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시중 카드사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낮음. 본 사업 시 우대혜택 등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POS시스템 개발: 품목제한 및 바우처카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대상 판매점포별로 POS시스템을 완비해야 함.

○ 지원 기간 및 시기: 3개월 지원(2020.7~2020.9)

○ 소요예산: 국비 30억 원/국비 100%

- 바우처 지원 : 15천 가구(19.5천명*) × 4.6만원** × 3개월 = 2,100백만 원

- * 2017년 생계급여 수급자(n=825,567) 중 노인가구와 18세 이하 아동 포함가구 수를 기준으로 추정

- ** 2017년 생계급여 수급자(n=825,567)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 시 가구당 평균 약 4.6만 원을 지원(2017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가구 비중 73.79%, 2인가구 비중 16.215%, 3인가구 6.297%, 4인 이상 가구 3.698%를 적용할 경우, 4.6만 원 도출)

- 사업운영 및 판매·정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900백만 원
- 농식품바우처 사용가능 유통업체 대상 POS시스템 구축 지원 등

○ 타임라인

- 1~4월: 사업 홍보, POS시스템 구축, 카드사 모집, 가맹점 신청, 지원대상자 신청/선정
- 5~10월: 사업 진행
- 5월: 사전 설문조사 진행/통계 샘플링 활용(n=3,000)
- 10월: 사후 설문조사 진행/통계 샘플링 활용(n=3,000)
- 11월: 사업 마무리, 조사결과 분석, 지원대상자 및 판매점 대상 FGI 개최, 사업 평가
- 12월: 연차보고서 작성

○ 기타 착안사항

- 지난 실증연구 사업과 차별화 본사업을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 시범사업을 통한 사각지대의 발견 및 해소방안 강구
- 온라인 판매점의 참여 유도
- 거동 불편자를 위한 인적 도우미 서비스 방안 검토
- 소상공인 판매점을 위한 카드사 수수료 부담 문제 해소 노력

부 록 2

농식품바우처 지원 국회토론회 주요 내용

- 일시 : 2019. 11. 4(월) 10:00~12: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발표주제 및 세부일정

사회: 홍연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분(시간)	주요내용	비고																							
< Session I > 개회사 및 축사																									
09:30~10:00	등록 및 안내																								
10:00~10:20	개회사	공동주최 국회의원																							
10:20~10:30	축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농림축산식품부) 김홍상 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Session II > 주제발표																									
10:35~10:50	“취약계층 식생활 및 영양섭취 실태”	연미영 박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50~11:05	“해외 주요국의 식품지원제도 사례와 시사점”	임소영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05~11:20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김상효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Session III > 종합토론																									
11:25~12:30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성명</th> <th>기관명</th> </tr> </thead> <tbody> <tr> <td>좌장</td> <td>이계임</td> <td>한국농촌경제연구원</td> </tr> <tr> <td rowspan="8">토 론 자</td> <td>구인회</td> <td>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td> </tr> <tr> <td>이현주</td> <td>한국보건사회연구원</td> </tr> <tr> <td>임은경</td> <td>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td> </tr> <tr> <td>임정빈</td> <td>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td> </tr> <tr> <td>송이목</td> <td>원주군청</td> </tr> <tr> <td>김성훈</td> <td>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td> </tr> <tr> <td>이행신</td> <td>한국보건산업진흥원</td> </tr> <tr> <td>최범진</td> <td>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td> </tr> </tbody> </table>			성명	기관명	좌장	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 론 자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송이목	원주군청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이행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	기관명																						
	좌장	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 론 자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송이목	원주군청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이행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주제발표 (1)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섭취 실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섭취 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미영

국회토론회 2019. 11. 04

1

› 취약계층의 정의

Vulnerable groups is that experience a higher risk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than the general population.

<WHO definition>

Children, pregnant women, elderly people, malnourished people, and people who are ill or immunocompromised, are particularly vulnerable when a disaster strikes, and take a relatively high share of the disease burden associated with emergencies. **Poverty – and its common consequences such as malnutrition, homelessness, poor housing and destitution – is a major contributor to vulnerability.**

<National Collaborating Centre for Determinants of Health (NCCDH), CANADA>

Vulnerable populations are groups and communities **at a higher risk for poor health as a result of the barriers they experience to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as well as limitations due to illness or disability.**

▶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먹거리·건강상태 관련 현황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 pp. 62-71,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62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한국 성인의 식품안정성과 우울증 연관성

Association

학술저널

한국 노인에서 식품불안정 (food insecurity) 이 건강상태 및 식이섭취상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1차년도 (2010-2012)
Nutritional and health consequences are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저소득 아동 10%, 일주일에 6번 라면섭취..건강도 양극화

요약 식품 불안정성(Food insecurity)을 야기한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결과변수로 우울감, 중등도 우울증, 우울증 진단 여부와 우울감, 우울증의 관련성 높은 빈도를 보였다. 전체 표본 모음에서 우울감, 우울증을 포함한 그룹에 비하여 여성은 1.69배 증가 결과를 보였으나 식품불안정성을 감소시킨 집단이 아니라 정상, 건

이승재(이화여자대학교), 이경원(이화여자대학교) / Journal of Nutrition, 519-529 (11 pages) SCOPUS, KCI

학술저널

부모소득 1% 오르면 자녀가 높아질수록 부모의 소득과

초록

본 연구는 식품불안정이 일련적 특성, 신체적 약점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939명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
1) 식품불안정은 측정항목의 담보에 따라 insecure (FI) 2로 분류하여 분석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식품불안정에 따른 일련적 특성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별을 앞둔 3)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적 건강과

CBS·인뉴스 정규서 기사 10 | 2013-07

한국개발연구원 김연수 연구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1-2%p 증가하는 것으로 분

건강이 오랜 시간에 걸쳐 누

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식생활과 밀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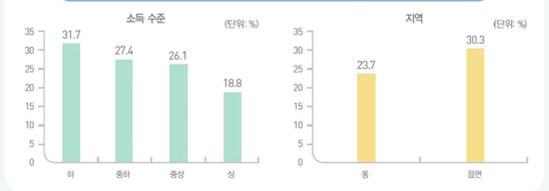
고소득일수록 자녀의 식생활

높기 때문이다.

성인 여자의 소득 수준별, 지역별 비만 유병률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비만 유병률이 높아지는 양상이 뚜렷하였다. 거주 지역별 성인 여자의 비만 유병률은 동 지역(도시 지역)보다 읍·면 지역(농·어촌)에 거주할 경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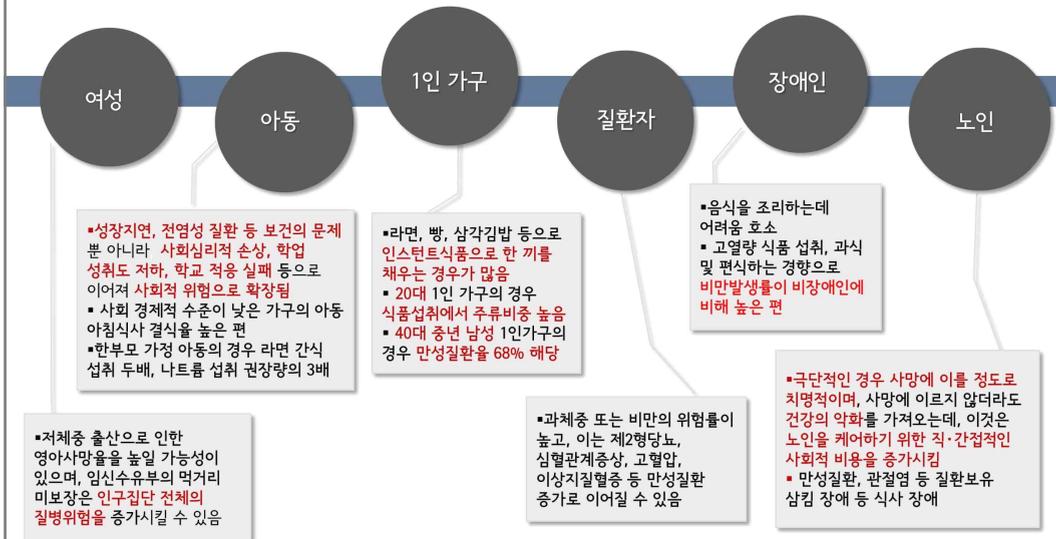
2016 Stats & Facts in Korea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2016

(그림 3-9) 19세 이상 성인 여자의 소득 수준별·지역별 비만 유병률 (2013-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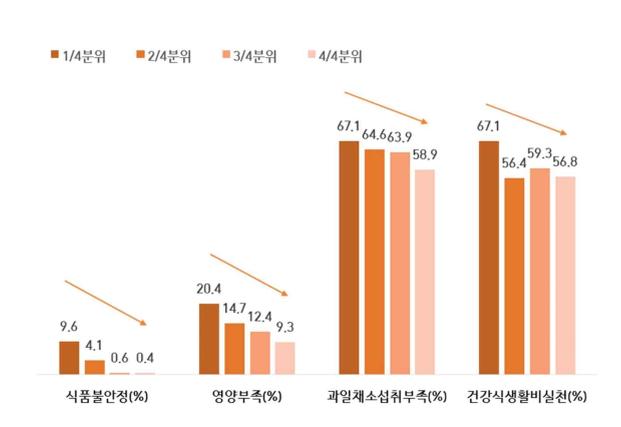
주: 2005년 추계인구로 표준화함.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4년

▶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먹거리·건강상태 관련 현황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건강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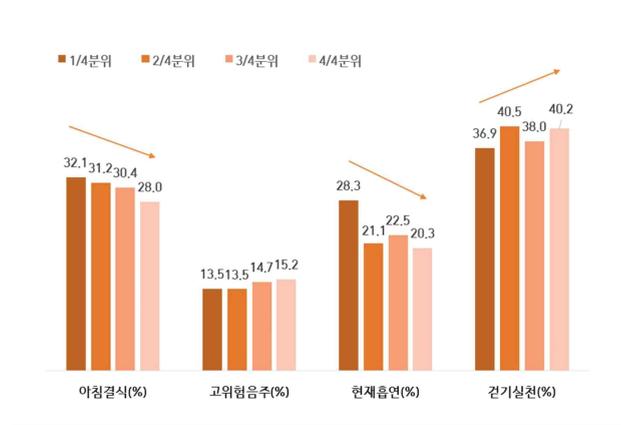
소득수준별 식생활 형편 및 행태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근거]



1/4분위 소득자의 식품불안정율은 약 10%에 달하고, 영양부족자분율도 4/4분위 소득자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음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건강 실태

소득수준별 식생활 형편 및 행태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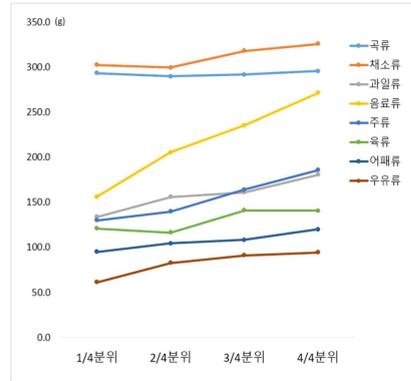


1/4분위 소득자는 아침결식율과 흡연율이 높았고, 경기실천율은 가장 낮아 식생활 및 건강행태가 나쁜 수준임

▶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건강 실태

소득수준별 식품군 섭취량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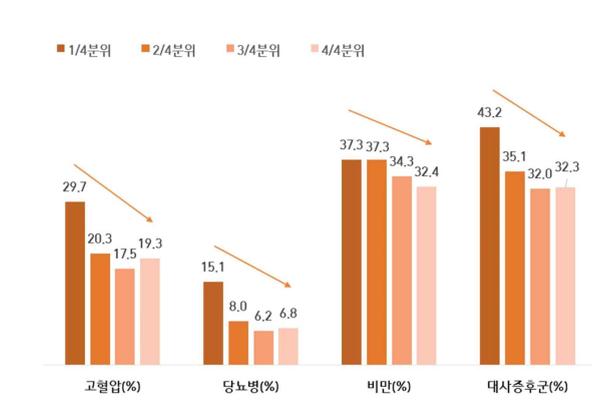
	1/4분위	2/4분위	3/4분위	4/4분위	4/4분위와 1/4분위 간 차이
곡류	293.3	289.7	291.9	295.8	2.4
채소류	302.6	299.6	318.1	325.9	23.3
과일류	134.0	156.0	161.2	180.7	46.7
음료류	156.3	205.5	235.3	271.3	115.0
주류	130.1	139.7	163.9	185.7	55.6
육류	120.9	116.5	141.2	140.6	19.7
어패류	95.0	104.5	108.2	119.9	24.9
우유류	61.4	82.6	91.0	94.4	33.1



- 1/4분위 소득자와 4/4분위 소득자 간 가장 큰 섭취량의 차이를 나타낸 식품군은 음료와 주류였으나, 원재료성 식품군 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식품군은 과일류와 우유류였음

▶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건강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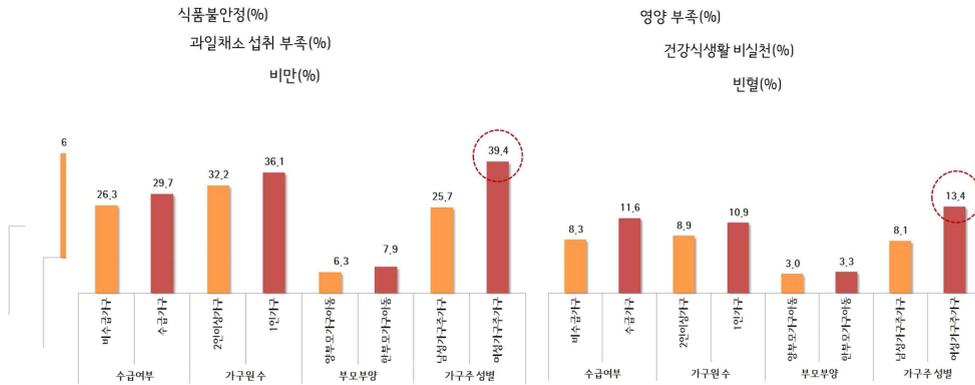
소득수준별 유병율 실태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근거]



- 고혈압,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유병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나타냄

▶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건강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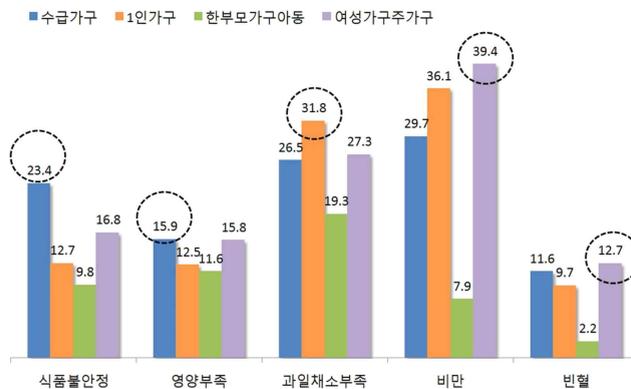
가구특성별 식생활 실태 [2010-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근거]



- 기초생활수급가구, 1인가구, 한부모가구 아동, 여성가구주가구의 식품불안정과 영양부족율이 높아 식생활이 취약한 대상군으로 보임

▶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건강 실태

가구특성별 식생활 및 건강 실태 [2010-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근거]



- 식품불안정과 영양부족 위험은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가장 높았고, 과일채소부족은 1인가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비만과 빈혈은 여성가구주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도시 취약계층의 대상군별 식생활 및 건강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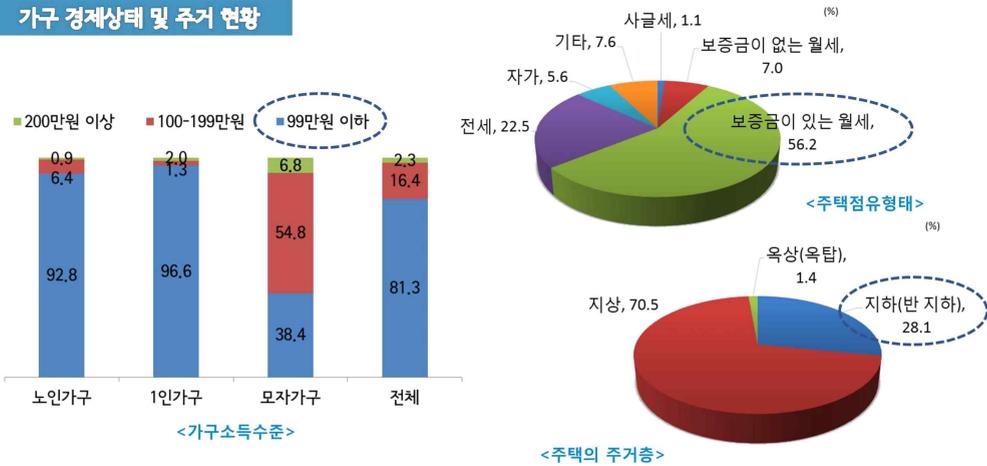
- 서울시 먹거리보장 구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연구(2018, 서울시)
- 2018년 서울시 25개 구, 53개 동, 641가구, 총 1,023명 조사
- 노인 498명, 1인가구 148명, 모자가구 377명



11

도시 취약계층의 대상군별 식생활 및 건강 실태

가구 경제상태 및 주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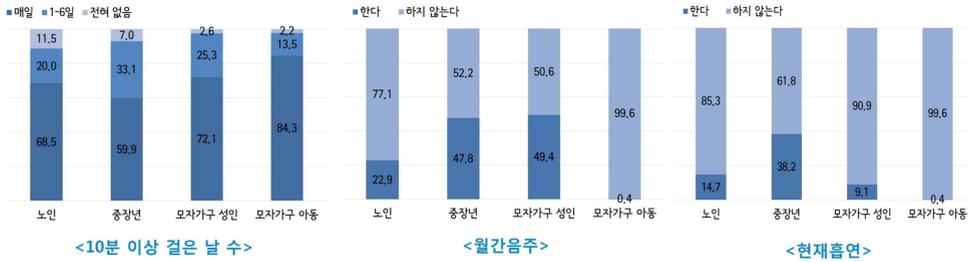


- 취약계층 대부분 가구의 소득은 99만원 이하에 속했고, 조사된 취약계층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세를 지불하는 주택점유형태였으며, 주택의 거주층이 지하인 경우가 28.1%였음

12

도시 취약계층의 대상군별 식생활 및 건강 실태

사회적 활동 및 건강 행태



- 식품불안정과 영양부족 위험은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가장 높았고, 과일채소부족은 1인가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비만과 빈혈은 여성가구주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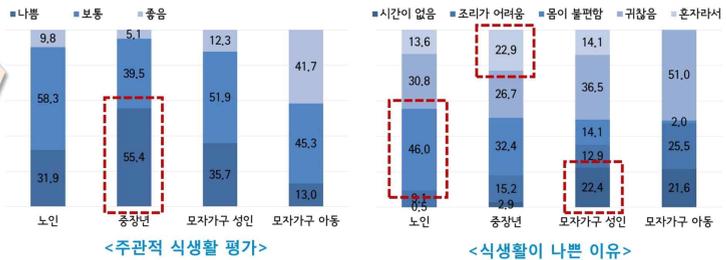
도시 취약계층의 대상군별 식생활 및 건강 실태

식생활 행태



- 취약계층 성인의 아침결식율이 높은 수준이었고, 모자가구 아동의 11.2%는 저녁식사를 혼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 노인과 성인의 주관적 식생활평가는 나쁜 편이었으며, 이들이 식생활이 나쁜 이유는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냄



14

▶ 도시 취약계층의 대상군별 식생활 및 건강 실태

식품군별 섭취량

식품군	노인		성인		아동/청소년		전체(국건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곡류	204.4	147.4	197.5	151.4	230.5	163.3	285.9	2.7
감자류	27.1	85.9	23.7	75.5	21.6	47.4	36.4	1.6
당류	3.2	8.7	4.4	14.8	8.3	20.7	10.8	0.3
두류	34.9	85.3	27.0	70.2	17.9	53.8	34.5	1.2
종실류	1.5	6.8	1.1	3.8	1.0	2.8	6.4	0.5
채소류	234.8	225.0	179.1	143.9	129.6	132.3	280.8	4.4
버섯류	1.0	6.0	1.9	9.3	3.3	10.0	5.9	0.3
과일류	48.8	122.6	59.5	139.7	104.5	176.5	191.2	5.3
해조류	7.4	36.4	5.6	25.2	2.2	8.3	24.7	1.7
음료류	28.9	77.7	137.0	268.3	125.5	254.8	185.4	5.4
주류	21.8	128.6	54.3	245.7	3.4	48.6	115.6	5.5
조미료류	18.7	31.7	21.8	44.5	20.0	30.6	35.1	0.7
유지(식물성)	2.4	4.7	4.1	7.0	5.1	7.1	7.7	0.2
기타(식물성)	0.4	6.2	0.1	1.0	0.4	2.1	0.3	0.1
육류	27.9	62.4	49.0	84.2	103.0	124.2	117.5	3.1
난류	15.5	41.6	30.6	64.5	33.3	51.5	36.9	0.6
어패류	30.6	82.3	30.9	70.9	26.7	43.9	88.0	2.8
우유류	44.5	123.0	49.5	120.0	145.0	176.8	101.6	3.0
유지(동물성)	0.0	0.1	0.1	0.8	0.3	1.3	0.2	0.0
기타(동물성)	0.0	0.0	0.1	1.9	0.0	0.0	0.1	0.0

- 취약계층에서는 대체로 식품섭취량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노인과 성인에서 **과일류, 육류, 유류의 섭취량**이 매우 낮은 편임

15

▶ 도시 취약계층의 대상군별 식생활 및 건강 실태

영양소별 섭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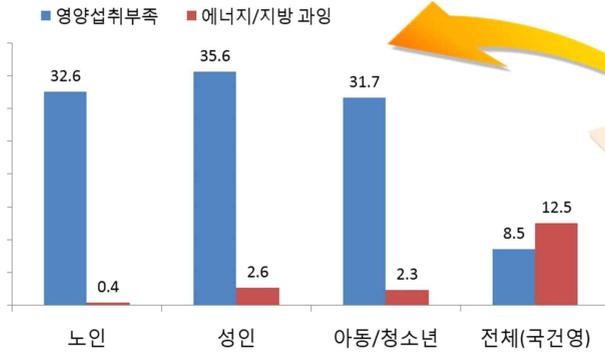
영양소	노인		성인		아동/청소년		전체(국건영) 섭취량	영양소	권장수준 (남자성인)
	섭취량	전국평균대비 비 섭취비율	섭취량	전국평균대비 비 섭취비율	섭취량	전국평균대비 비 섭취비율			
에너지(kcal)	1,053.9	0.5	1,175.9	0.6	1,459.6	0.7	2,007.8	에너지(kcal)	2000-2600
단백질(g)	35.5	0.5	41.4	0.6	53.2	0.7	71.8	단백질(g)	55-60
지방(g)	16.2	0.3	26.3	0.5	39.6	0.8	49.4	지방(g)	
탄수화물(g)	185.5	0.6	184.1	0.6	217.6	0.7	292.9	탄수화물(g)	
당(g)	25.7	0.4	32.7	0.5	54.0	0.8	67.2	당(g)	50-100
칼슘(mg)	283.5	0.6	293.8	0.6	346.5	0.7	470.1	칼슘(mg)	700-750
인(mg)	578.4	0.6	635.2	0.6	765.5	0.7	1,051.3	인(mg)	700
철(mg)	10.3	0.6	10.9	0.7	11.4	0.7	16.3	철(mg)	9-10
나트륨(mg)	1,641.1	0.4	1,711.7	0.5	1,798.8	0.5	3,668.9	나트륨(mg)	2,000
칼륨(mg)	2,197.1	0.8	2,331.3	0.8	2,391.7	0.8	2,853.8	칼륨(mg)	3,500
비타민 A(μg RE)	348.5	0.9	428.8	1.1	652.3	1.6	400.1	비타민 A(μg RE)	700
티아민(mg)	1.1	0.6	1.2	0.6	1.4	0.7	1.9	티아민(mg)	1.2
리보플라빈(mg)	0.7	0.5	1.0	0.7	1.1	0.8	1.4	리보플라빈(mg)	1.5
니아신(mg)	7.2	0.5	8.7	0.5	9.4	0.6	15.9	니아신(mg)	16
비타민 C(mg)	41.8	0.4	37.9	0.4	44.4	0.5	96.7	비타민 C(mg)	100

- 취약계층의 1일 평균 영양소 섭취량은 거의 모든 영양소에서 한국인영양섭취기준에 비하여 낮음.
- 특히, 노인과 성인은 전국평균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여 영양부족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임.

16

도시 취약계층의 대상군별 식생활 및 건강 실태

영양섭취부족자분율/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분율



취약계층 노인, 성인, 아동/청소년 그룹 모두에서 영양섭취부족자가 30%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평균의 4배 정도로 이들 취약계층의 영양부족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임

17

도시 취약계층의 대상군별 식생활 및 건강 실태

다소비식품/음식섭취가짓수

순위	노인				성인				아동/청소년				국민전체			
	식품	섭취량	섭취율	누적섭취율	식품	섭취량	섭취율	누적섭취율	식품	섭취량	섭취율	누적섭취율	식품	섭취량	섭취율	누적섭취율
1	백미	124.6	16.3	16.3	백미	98.8	11.9	12.0	우유	105.5	9.9	9.9	백미	143.1	9.2	9.2
2	배추김치	55.6	8.7	24.9	김치	54.2	7.4	19.4	백미	97.8	10.2	20.0	우유	65.5	4.2	13.4
3	우유	32.2	5.5	30.4	우유	36.5	5.4	24.8	육수	22.5	2.2	22.2	배추김치	62.4	4.0	17.4
4	감자	20.6	3.7	34.1	달걀	30.3	4.7	29.5	돼지고기	22.5	2.2	24.4	달걀	22.4	1.4	28.8
5	오이	19.8	3.7	37.8	맥주	29.1	4.8	34.3	배추김치	22.5	2.2	26.6	콜라	19.8	1.2	30.0
6	양파	18.8	3.7	41.5	감자	22.3	3.8	38.1	달걀	22.5	2.2	38.8	과일음료	18.8	1.1	39.9
7	호박	17.3	3.5	45.0	라면	20.1	3.6	41.7	콜라	17.3	1.6	40.5	감자	17.3	1.0	40.9
8	멸치	16.9	3.5	48.5	콜라	17.9	3.3	45.0	달고기	16.9	1.5	42.0	라면	16.9	1.0	41.9
9	고추	15.3	3.3	51.8	오이	16.0	3.1	48.0	과일음료	15.3	1.3	43.3	빵	15.3	0.9	42.8
10	토마토	14.8	3.3	55.1	돼지고기	14.9	2.9	51.0	감자	14.8	1.2	44.5	참외	14.8	0.9	43.7
11	열무김치	14.0	3.2	58.4	참외	14.8	3.0	54.0	라면	14.0	1.2	45.7	수박	14.0	0.9	44.6
12	두부	13.6	3.3	61.6	육수	14.6	3.1	57.0	빵	13.6	1.1	46.8	떡	13.6	0.9	45.5
13	두유	13.5	3.4	65.0	막걸리	13.8	3.0	60.0	참외	13.5	1.0	47.8	사이다	13.5	0.9	46.4
14	달걀	13.3	3.4	68.4	양파	13.7	3.1	63.1	아이스크림	13.3	1.1	48.9	소고기	13.3	0.9	47.3
15	돼지고기	12.8	3.4	71.8	고추	13.1	3.0	66.1	수박	12.8	1.0	49.9	포도	12.8	0.9	48.2
16	사과	11.8	3.3	75.1	달고기	13.0	3.1	69.2	떡	11.8	1.0	50.9	기타탄산음료	11.8	0.8	49.0
17	복숭아	11.7	3.3	78.4	두부	12.9	3.1	72.3	사이다	11.7	1.0	51.9	클	11.7	0.8	50.8
18	육수	11.4	3.3	81.7	멸치	12.3	3.1	75.4	소고기	11.4	1.0	52.9	꿀	11.4	0.8	51.6
19	양배추	10.6	3.2	85.0	과자	11.6	3.0	78.4	포도	10.6	0.9	53.8	커피	10.6	0.8	52.4
20	국수	10.3	3.3	88.2	떡	11.2	3.0	81.5	기타탄산음료	10.3	0.9	54.7	우유	10.3	0.7	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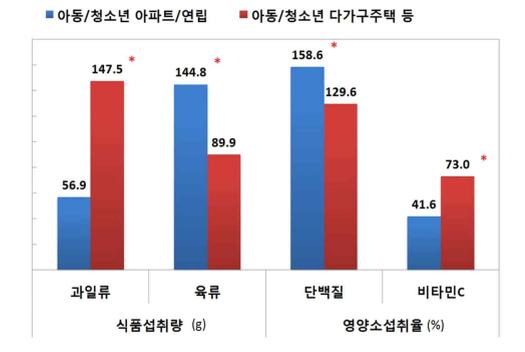


육류와 과일섭취가 전체 국민에 비해 낮았고, 상위 20위까지 식품 누적섭취율이 노인 88.2%, 성인 81.5%, 어린이/청소년 97%로 매우 높았으며, 1일 평균 음식섭취가짓수는 10여가지로 식사의 다양성에 크게 떨어짐

18

도시 취약계층의 대상군 특성별 식생활 및 건강 실태

아동/청소년의 주거형태에 따른 식품섭취량 비교



주거형태	지역아동센터 식품지원(O)	지역아동센터 식품지원(X)	전체
아파트/연립		126	126
다세대주택 등	13	239	252
총합계	13	365	378

주거형태	꿈나무카드(O)	꿈나무카드(X)	전체
아파트/연립	68	58	126
다세대주택 등	105	147	252
총합계	173	205	378

▪ 모자가구 아동/청소년의 과일섭취량이 아파트/연립 거주인 경우 보다 다가구주택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아동센터 과일제공 사업이 다세대주택 위주로 이루어진 효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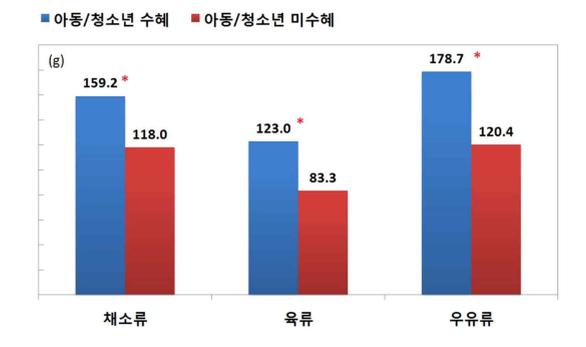
애들이 과일먹자 사업'

- 대상 : 217개 지역아동(복지)센터 이용 아동 6,223명
- 사업내용
 - 과일제공 : 주2회 아동 1인당 200g의 원물형태로 제공(신선도 등 확보)
 - 영양교육 : 월1회 보건소에서 지원
 - 영양평가 : 전/후 신체계측, 건강상태, 식품섭취내용 등 조사

19

도시 취약계층의 대상군 특성별 식생활 및 건강 실태

아동의 식품지원서비스 수혜 여부에 따른 식품섭취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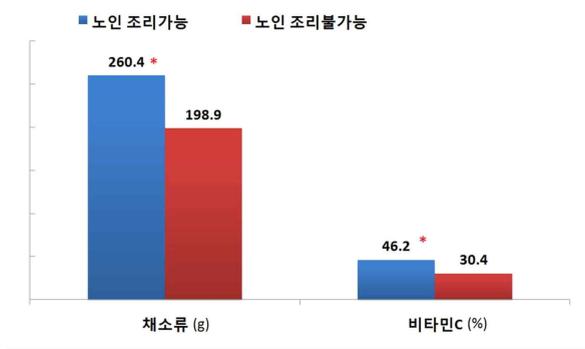


▪ 식품지원서비스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채소류, 육류, 우유류 섭취량 모두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대상 식품 지원서비스가 식품섭취량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

도시 취약계층의 대상군 특성별 식생활 및 건강 실태

노인의 조리능력 여부에 따른 식품 및 영양소섭취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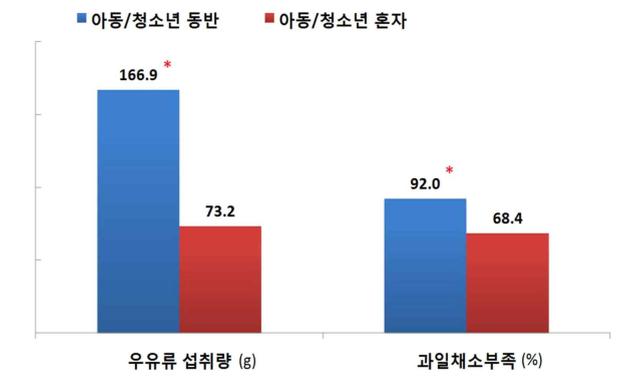


- 노인의 경우, 조리가 가능한 노인에서 채소류 섭취량과 비타민 C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아 노인의 경우 조리능력이 식생활 관리의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됨

21

도시 취약계층의 대상군 특성별 식생활 및 건강 실태

아동/청소년의 동반식사 여부에 따른 식품섭취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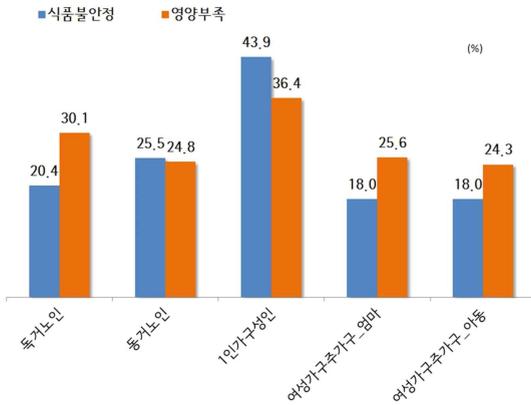
- 모자가구 아동/청소년에서 가족동반식사가 가능한 경우 우유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음.

1) Less than 500 grams of fruit & vegetables intake per day

22

도시 취약계층의 대상군 특성별 식생활 및 건강 실태

세대유형별 식품불안정 및 영양부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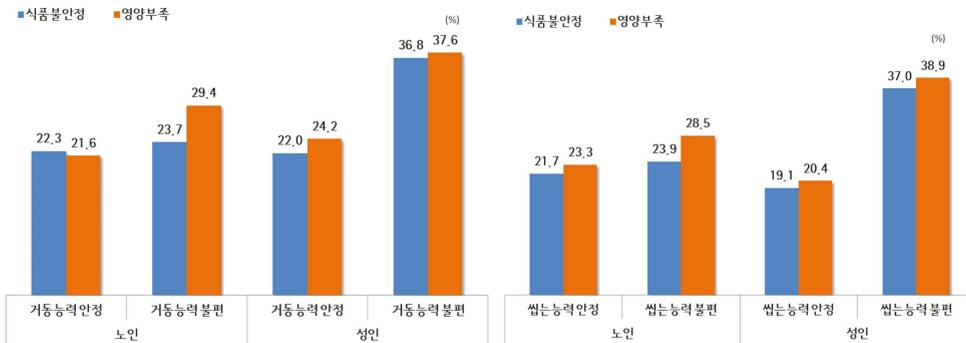


▪ 1인가구성인의 경우 노인에서보다 식품불안정과 영양부족 비율이 높아, 위험집단으로 나타남

23

도시 취약계층의 대상군 특성별 식생활 및 건강 실태

노인과 성인에서 신체기능에 따른 식품불안정 및 영양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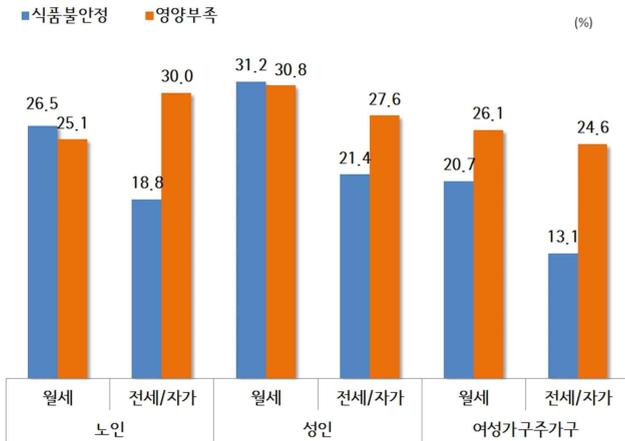


▪ 노인과 성인은 거동 능력과 씹는 능력이 불편한 경우 식품불안정과 영양부족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들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24

도시 취약계층의 대상군 특성별 식생활 및 건강 실태

월세 소요 여부에 따른 식품불안정 및 영양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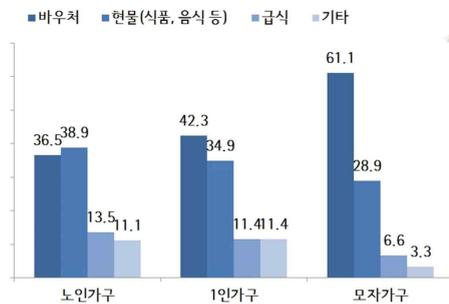


▪ 모든 집단에서 월세를 지불하는 거주형태일 경우 식품불안정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영양부족도 마찬가지로 경향이었으나 노인에서만 양상이 다름

25

취약계층의 대상군 특성별 식생활 지원 관련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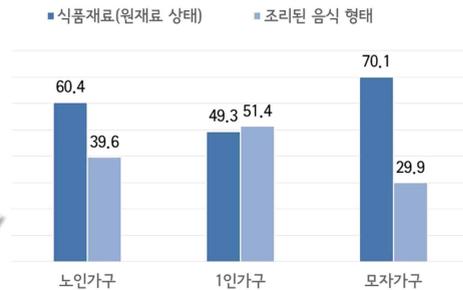
식품지원서비스 관련 요구사항



<식생활지원서비스 선호 형식>

▪ 선호하는 현물서비스는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의 경우 식품재료(원재료)를 더 선호하였고, 1인가구의 경우 조리된 음식을 더 선호함

▪ 식생활지원서비스로 현금을 가장 많이 원했으나, 현금을 제외하고 바우처, 현물, 급식 순이었으며, 특히 모자가구에서는 바우처의 요구도가 높았음



<선호하는 현물 서비스>

26

▶ 취약계층의 대상군 특성별 식생활 지원 관련 요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 여부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소득 1/4분위	
	수급	비수급
곡류	266.4	303.4
채소류	322.7	295.1
과일류	117.0	140.3
음료류	137.5	163.4
주류	205.3	101.9
육류	80.5	136.0
어패류	141.9	77.5
우유류	57.3	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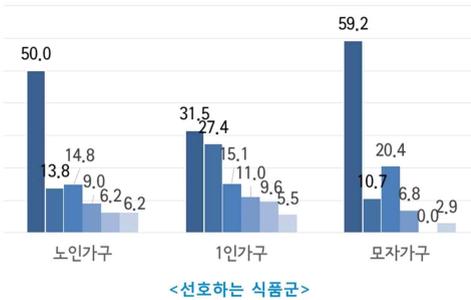
	소득 1/4분위	
	수급	비수급
에너지섭취량(Kcal)	1845.2	1968.9
단백질섭취량(g)	68.3	76.3
지방섭취량(g)	35.0	51.5
탄수화물섭취량(g)	275.1	296.2
칼슘섭취량(mg)	496.6	483.3
철섭취량(mg)	13.1	12.7
나트륨섭취량(mg)	3835.7	3528.3
비타민A섭취량(μgRE)	322.3	313.5
티아민섭취량(mg)	1.3	1.5
리보플라빈섭취량(mg)	1.4	1.5
나이아신섭취량(mg)	12.6	14.6
비타민C섭취량(mg)	46.9	52.1

- 소득 1/4분위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식품과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수급자의 경우 주류섭취량이 높아 수급비가 주류섭취로 이어질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음

▶ 취약계층의 대상군 특성별 식생활 지원 관련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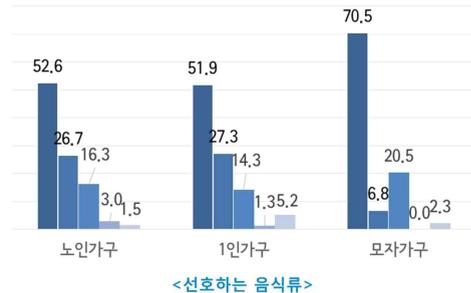
식품지원서비스 관련 요구사항

■ 육류 ■ 생선류 ■ 과일류 ■ 곡류군 ■ 채소류 ■ 기타



- 모든 대상군에서 식생활지원 시 가장 선호하는 식품군은 육류였고, 다음으로 과일, 생선 순이었음

■ 반찬류 ■ 도시락류 ■ 국/찌개/탕류 ■ 죽류 ■ 기타



▶ 취약계층의 식생활 관련 영향 요소

건강 상태 특성



- 취약계층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약 복용 중인 대상자가 많았으며, 다리가 불편하거나 걷기가 어려워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다수였음.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질병을 가진 대상자가 많아 이들의 식생활 관리를 위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남.

31

▶ 취약계층의 식생활 관련 영향 요소

드시고 싶은 식품이나 음식



- 고기, 생선, 과일 등 식재료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이 등장했음.
- 계절음식 또는 기호음식에 대한 요구도도 나타났는데, 이들의 식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바우처 등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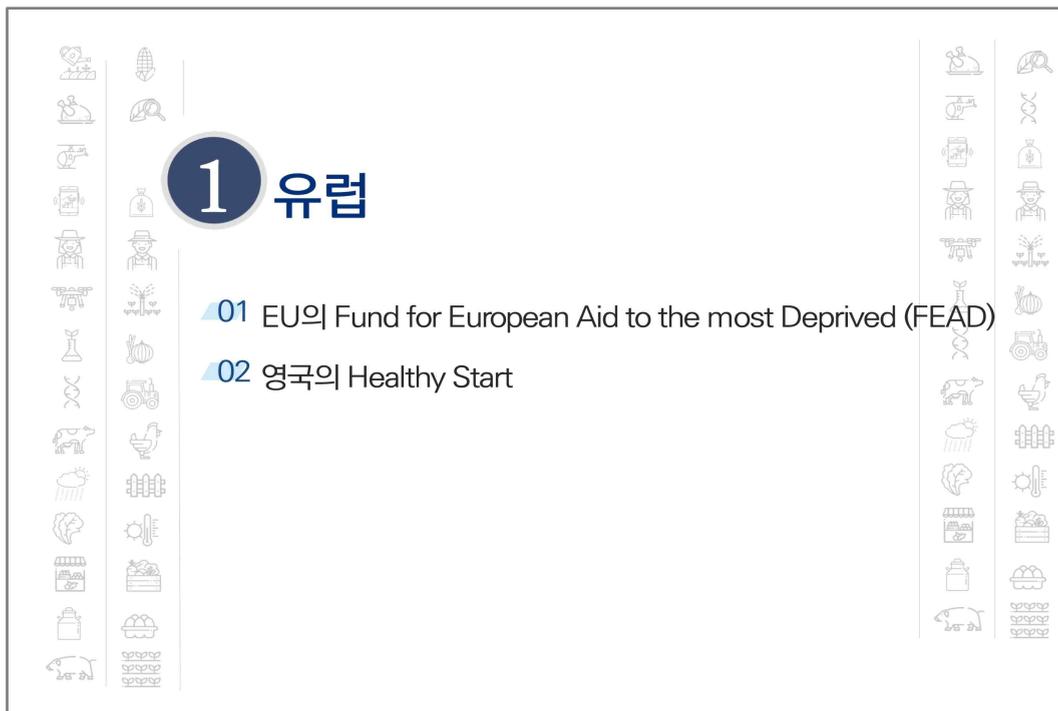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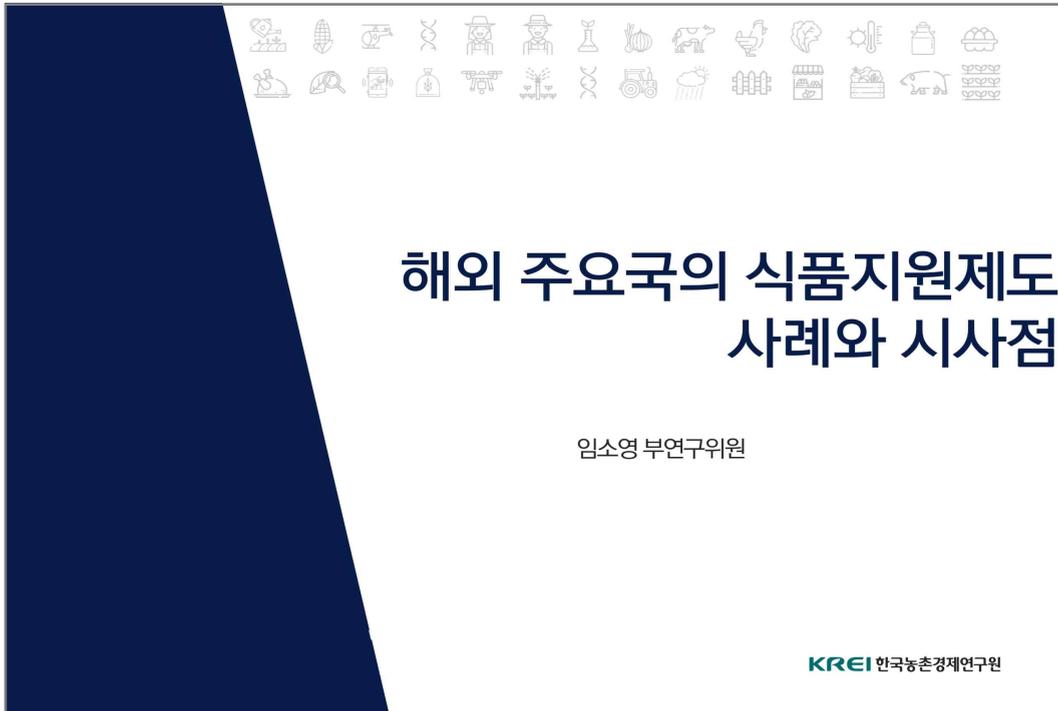
32

▶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섭취 실태의 시사점

- ✓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는 아직 절대적 섭취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식사의 질 역시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여 이들의 영양부족이 건강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재가 시급하나, 기초생활수급 등 현금지원은 식생활의 양적/질적 개선 용도로 쓰여지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보임.
- ✓ '지역아동센터 과일제공사업' 과 같이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서비스는 수혜자의 영양소 섭취량 증가와 같이 직접적인 효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지원을 통한 영양소 섭취량의 증가는 신체적/생리적 기능 향상 뿐 아니라 정서적 위로의 기능도 함께 하므로 체감도가 높은 복지서비스로 판단됨
- ✓ 취약계층의 식생활 문제는 먹거리의 양적 부족 뿐 만 아니라, 주거, 가족구성, 건강상태 등 여건이 식생활을 건강하게 영위하기 어렵게 만드는 복합적 원인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경우 우울감, 고립감 등 정서적 요소도 식생활과 관련이 있으므로 먹거리 재료와 함께 네트워크, 조리공간, 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식품지원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신체적 조건이 양호한 취약계층의 경우 **신선식품에 대한 요구가 크고, 육류, 생선, 과일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실제 육류와 과일류의 섭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요구와 식품섭취 실태가 일치하므로 **신선식품류의 공급과 품목 다양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 아직은 전체적으로 **공급확대를 통한 양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먹거리의 보장을 기본권 차원으로 논의해야 한다면 기존 식품지원서비스의 **접근성 개선과 품목 확대를 통해 기호와 만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 주제발표 (2) 해외 주요국의 식품지원제도 사례와 시사점



1. EU의 FEAD

01 개요

대상

- 빈곤아동, 노숙자 등 식품 빈곤 집단

지원방식

- 식품지원 민간단체(NGO)에 식품구매자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여 민간단체가 구호활동에 사용

예산

- EU와 회원국의 공동자금 조성
- 회원국은 소요 예산의 15% 이상 의무부담

지원내용

- 식품 and/or 기초생활필품 현물지원(지원내용은 국가별 자율)
- 식생활교육, 영양·재무상담, 컨설팅, 복지정보 제공 병행

1. EU의 FEAD

02 지원내용

- ❖ 지원식품은 수혜자의 균형잡힌 식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관리
 - 수혜자의 요구나 식품영양 전문가의 조언 반영
 - 탄수화물, 소금, 설탕,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섬유질,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 선정
 - 지원된 식품의 2/3는 유제품, 곡물류, 빵, 감자, 기타 녹말이 많은 농산물
- ❖ 일부 국가는 쿠킹 클래스나 워크샵 등을 진행하여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교육



1. EU의 FEAD

03 지원실적

(단위: 백만 유로, 톤, 명)

국가	총 예산 (2014-2020)	식품지원량 (2014-2017 누적)	식품 지원수혜인원 (2017년)
벨기에	88.2	30,587	311,205
체코	27.4	1,555	108,308
크로아티아	43	7,328	208,401
에스토니아	9.4	2,172	28,453
핀란드	26.5	4,359	284,352
프랑스	587.4	293,518	4,459,019
그리스	330.6	17,502	263,976
아일랜드	26.8	978	95,922
이탈리아	788.9	179,412	2,700,012
라트비아	48.2	5,387	63,799
리투아니아	90.8	21,600	193,795
룩셈부르크	4.6	4,993	12,453
몰타	4.6	499	13,246
폴란드	556.9	189,194	1,365,491
루마니아	518.8	166,398	3.2
슬로바키아	64.8	7,120	175,448
슬로베니아	24.1	11,831	166,448
스페인	662.8	314,942	1,423,288

❖ 자료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2. 영국 Healthy Start

01 개요

대상

- 임산부, 4세 미만 영유아 양육가구 중 실업급여, 자녀장려금, 펜션크레딧 등 정부보조 수급자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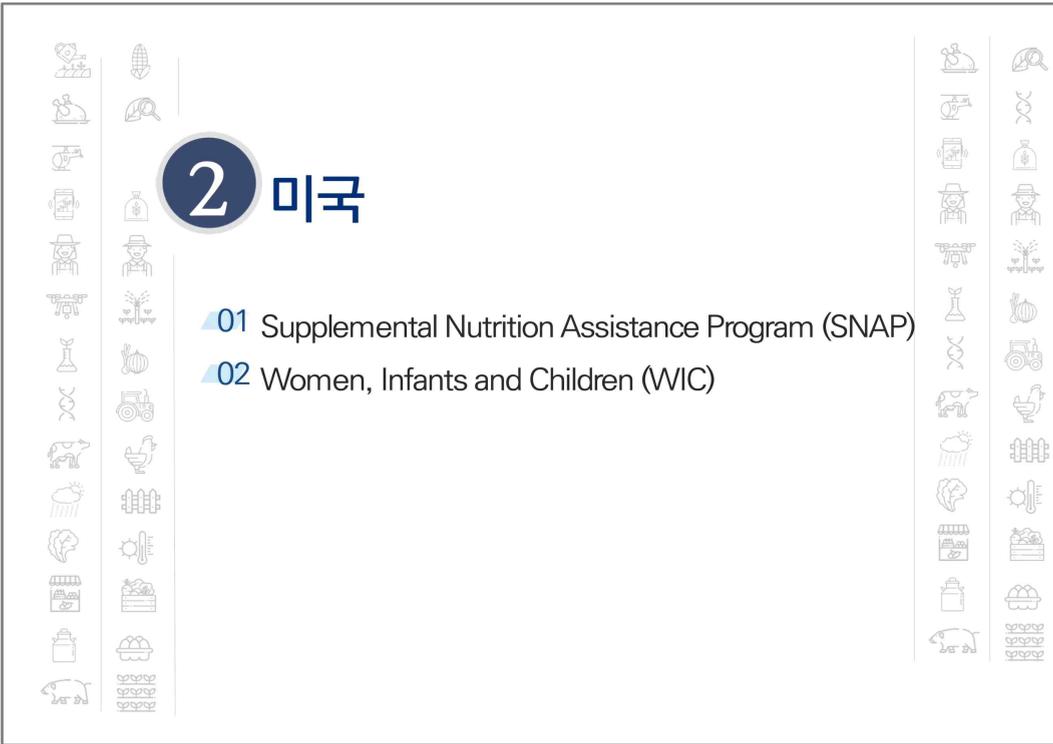
지원내용

- 우유, 신선 또는 냉동 과일과 채소, 분유, 비타민
- 여성과 1~4세 유아: 주당 3.10 파운드
- 1세 미만 영아: 주당 6.20 파운드

지원방식

- 종이 바우처 발급
- 온라인 신청, 이메일 및 우편 신청 가능





1. SNAP

01 도입배경

- ❖ 대공황으로 인하여 식품 구매여력이 감소한 도시 빈곤층을 지원하고 농산물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939년에 푸드스탬프 도입
- ❖ 농산물 공급과잉과 실업 문제가 맞물린 상황에서 실업자의 기본 식품구입을 지원하는데 활용
- ❖ 초기에는 오렌지색 스탬프와 파란색 스탬프를 발급하였으며, 오렌지색 스탬프는 모든 식품, 파란색 스탬프는 공급과잉으로 판정된 식품만 구매 가능
- ❖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농산물 공급여력이 떨어지고 실업이 감소하는 등 상황 변화로 중단
- ❖ 케네디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재도입
 - 기존 스탬프 방식에서 쿠폰으로 변경, 지원식품은 가족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데 목표를 두고 가구원 수에 맞추어 지원



1. SNAP

02 지원대상과조건

소득·자산 기준

- ❖ 소득기준
 -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의 합계액)이 빈곤선의 130% 미만
 - 순소득(총소득에서 공제 적용한 금액)이 빈곤선 100% 미만
- ❖ 자산기준
 - 금융자산 2,250달러 이하(단,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3,500달러)

근로조건

- ❖ 일반원칙
 - 근로자로 등록
 - 비자발적 실업 또는 근로시간 단축
 - 취업
 - 직업훈련 참여
- ❖ 피부양자 없는 성인(ABAWD)
 - 36개월 내 최소 3개월 이상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

9

1. SNAP

03 지원내용과규모

가구당 지원금액

(단위: 달러)

가구원수	1	2	3	4	5	6	7	8	추가 가구원 1인당
최대지원금액	192	353	505	642	762	914	1,011	1,155	144

지원범위

지원품목

- 채소
- 과일
- 육류
- 유제품
- 빵, 곡물
- 스낵류, 비알콜음료
- 종자, 채소재배용 화분

비지원품목

- 주류
- 담배
- 비타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 살아있는 동물
- 즉석섭취식품
- 기타 비식용제품



10

1. SNAP

04 지원방식

- ❖ Electronic Benefit Transfer (EBT) 카드
 - 체크카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SNAP 사용처에서 사용가능한 카드
 - 가구별 EBT 카드에 자동으로 지원금이 매달 입금
 - 과거 종이 바우처의 낙인효과, 불법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도입
 - SNAP가맹점은 EBT 사용 가능 단말기로 결제 가능
 - 결제 대금은 해당 식료품점 계좌로 입금
 - EBT는 전문 회사가 관리(발급, 분실처리, 잔액 확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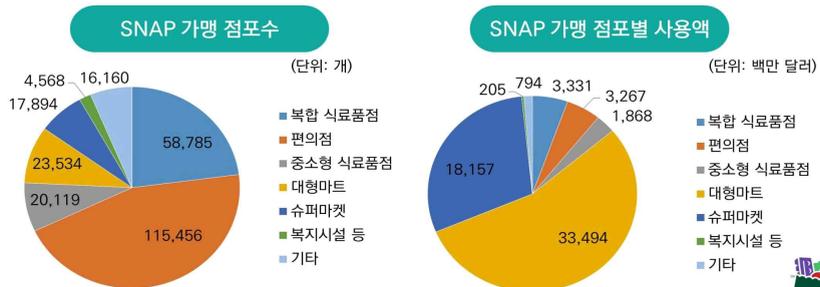


11

1. SNAP

05 사용처 및 사용 실적

- ❖ SNAP 사용처 (FY 2018 현재 총 256,516개)
 - Convenience Store, 중·소형 마트, 대형마트, 베이커리 등 다양한 사용처
 - 2014년부터 파머스 마켓 및 농산물 직거래 사용 증가
 - 온라인 시장 활용 시도



❖ 자료 : USDA/FNS, Fiscal Year 2018 Year End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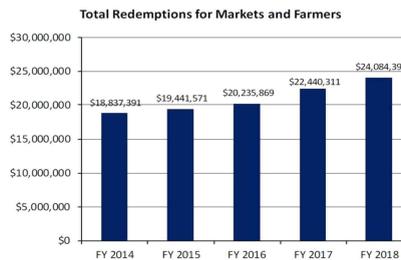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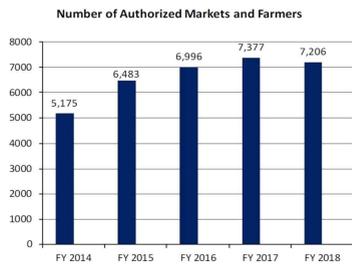


12

1. SNAP

06 농산물 직거래 및 파머스마켓의 성장

- ❖ 미국 정부는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 공급을 위해 파머스마켓 또는 직거래 사업자에게 수수료 없는 EBT 전용 단말기 지원
- ❖ 파머스마켓/직거래 참여자 수와 SNAP 사용액은 꾸준히 증가



❖ 자료 : USDA/FNS, Fiscal Year 2018 Year End Summary



13

1. SNAP

07 지원규모 및 비용

회계연도	월평균 수혜자 수 (천명)	1인당 평균 지원금액 (달러)	지원금 총액 (백만 달러)	기타 비용 (백만 달러)	총비용 (백만 달러)
2014	46,664	125.01	69,998.84	4,061.49	74,060.33
2015	45,767	126.81	69,645.14	4,301.51	73,946.64
2016	44,220	125.40	66,539.27	4,367.23	70,906.50
2017	42,133	126.01	63,711.05	4,458.43	68,169.48
2018	39,652	126.96	60,407.79	4,467.32	64,875.11

- ❖ 주: 기타 비용은 행정비용, 직업훈련, 영양교육 등 운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합
- ❖ 자료 : USDA/FNS 홈페이지

- ❖ SNAP은 농무부 예산에서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2019년 예산의 51%



14

1. SNAP

08 식생활 교육 지원(SNAP-Ed)

- ❖ SNAP 참가가구, 그 외 보조 프로그램 참가가구,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제공
- ❖ 건강한 식품 선택, 건강하게 요리/섭취하는 방법, 신체활동 장려 등을 교육
- ❖ 1대1 강습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학교, 직장,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그룹 강의를 진행
- ❖ 종이 또는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강의와 실습을 병행
- ❖ 주별 담당기관은 매년 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 제출



15

2. WIC

01 지원배경과 대상

도입 배경

- ❖ 1960년대 빈곤과 그로 인한 영양부실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부상
- ❖ 1972년 빈곤가구의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상태 악화에 대한 우려로 시범 도입
- ❖ 1974년 켄터키를 시작으로 45개 주에서 WIC 도입
- ❖ 1975년 영구 프로그램으로 법제화, 전 출산모와 5세 미만 유아로 대상 확대

지원대상

- ❖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185% 미만인 임신·수유부, 출산모, 5세 이하 영유아
- ❖ SNAP, TANF 등 타 보조 프로그램 참여자는 자동으로 WIC 지원대상에 포함
- ❖ 신청자는 반드시 영양 또는 건강 상 위험요인에 대해 증빙



16

2. WIC

02 자원내용

- ❖ 보충적 영양 식품
 - 유아·여성: 주스, 우유, 씨리얼 치즈, 달걀, 과일, 채소, 통곡물 빵, 생선, 콩, 피넛버터
 - 영아: 분유, 씨리얼, 과일 및 채소, 육류
- ❖ WIC 클리닉에서의 영양교육 및 상담
- ❖ 건강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
- ❖ 모유수유 권장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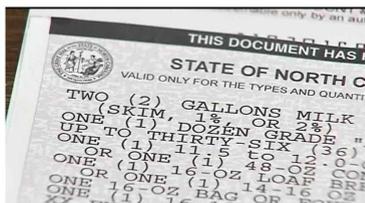


17

2. WIC

03 지원방식

- ❖ 종이바우처를 WIC 사용처에서 지원 식품으로 교환
 - 종이바우처에는 지원대상자 성명, 일련번호, 식품명, 지원량, 유효기간 명시
- ❖ EBT 전환 계획
 - 아동영양 및 WIC 재승인 법 2010에 의거, 모든 주가 2020년 10월 1일까지 EBT로 전환



18

2. WIC

04 지원 인원 및 비용

월평균 지원 인원 및 비용

참여인원 및 비용		FY2015	FY 2016	FY2017	FY 2018
참여인원(명)	여성	1,923,171	1,838,293	1,737,991	1,633,864
	영아	1,939,741	1,875,706	1,787,331	1,712,401
	유아	4,160,831	3,982,440	3,760,839	3,523,863
	전체	8,023,742	7,696,439	7,286,161	6,870,128
식품비(억 달러)		41.8	39.5	36.1	33.8
행정비용(억 달러)		19.2	19.5	19.7	19.8
1인 평균 식품비(달러)		43.4	42.8	41.2	41.0

❖ 자료 : USDA/FNS 홈페이지



19

2. WIC

05 파머스 마켓 영양 프로그램(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개요

- ❖ 의회는 1992년에 WIC 참여자가 인근 지역에서 재배된 신선 과일 및 채소를 섭취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파머스 마켓 영양 프로그램을 도입
- ❖ WIC 수혜자는 파머스 마켓에서 사용가능한 쿠폰을 추가로 발급받아 파머스 마켓, 개인 농가,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을 구매

운영 실적

		2016	2017	2018
총 지원액(백만 달러)		21.0	22.3	23.0
수혜자(명)		1,650,791	1,739,716	1,727,234
1인당 지원 수준		\$23	\$23	\$23
판매자(명/개)	농민	18,225	16,815	16,902
	마켓	3,236	3,312	2,788
	가판대	2,433	2,367	2,974

❖ 자료 : USDA/FNS, WIC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Profiles

20



1.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필요성

01 농식품 지원이 식품소비에 미치는 효과

식품소비 증가

Fraker(1990), Levedahl(1995)
 현금지원보다 현물지원의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음

Hanson et al. (2002)
 푸드스탬프 혜택을 줄이거나 현금 지원할 경우 식품 수요 및 농산물 생산 감소

Levedahl and Oliveira(1999), European Commission(2019)
 저소득층의 식품 소비량 증가

식품보장성 증가

Jensen and Wilde(2010)
 식품지원프로그램은 식품을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며,
 식품가격과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식품 미보장성과 배고픔 완화

단, 가공식품까지 허용하는 식품지원제도(SNAP)가 수혜자의 섭취 식품의 질이나 건강 및 영양상태를 개선한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음

1.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필요성

02 농식품 지원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경제활성화

Canning and Stacy(2019)

SNAP의 GDP 승수는 1.5로 추정

SNAP 지출 10억 달러

→ GDP 15억 4,000만 달러 증가, 13,560개의 일자리 창출, 3,200만 달러의 농업소득 증가

빈곤감소

Tiehen et al.(2013)

SNAP으로 빈곤이 14~16% 가량 감소

특히 극빈층과 어린이가 있는 빈곤가구의 빈곤 감소에 효과적

USDA(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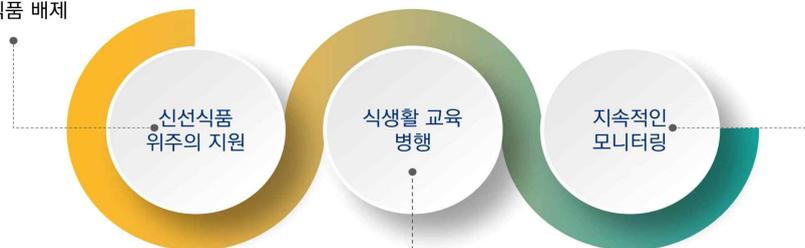
아동과 비대도시지역 취약계층에서 빈곤의 강도를 낮추는데 효과적

23

2. 농식품 지원정책의 방향성

- SNAP의 건강/영양 증진 효과 불명확 (가공식품 허용이 원인일 수 있음)
- 근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 우선
- 가공식품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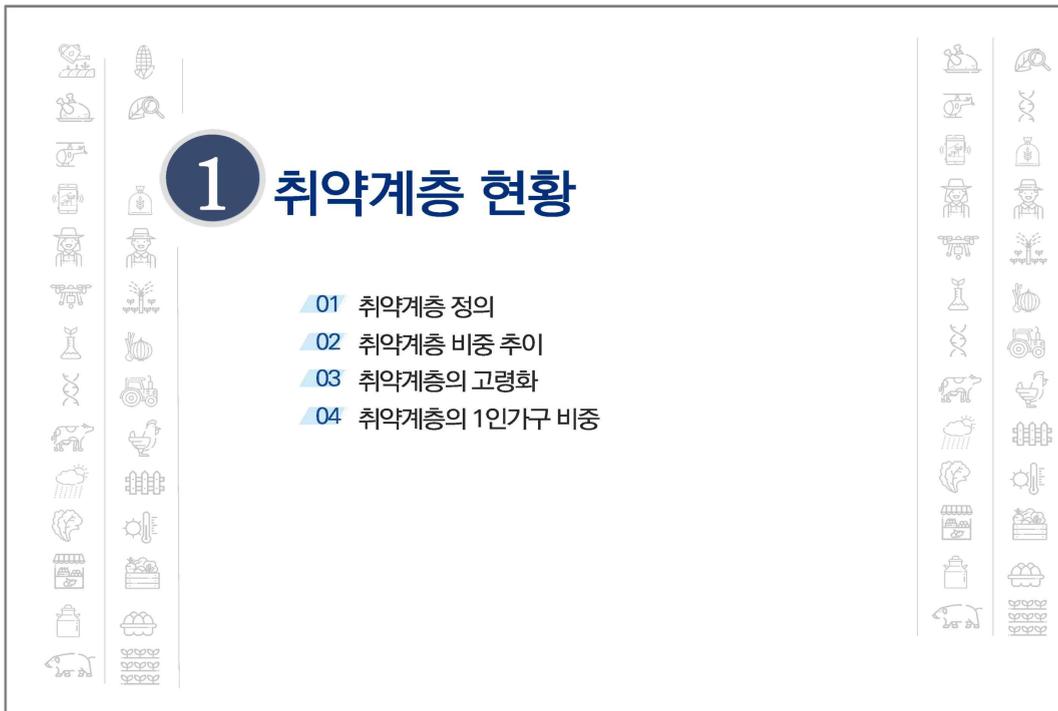
- 수혜자의 낙인효과 발생 여부 확인
- 부정사용, 불법거래 등의 방지
- 사후 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 수혜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대상 식생활 교육 실시
- 저소득 가구의 균형 있는 식생활 지원

24

□ 주제발표 (3)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필요성과 도입 방안



1. 취약계층 현황

01 취약계층 정의

선진국에서의 취약계층



- **사회적 취약계층** (socially disadvantaged individual/group) -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사회적 편견이나 차등대우, 배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집단
- **경제적 취약계층** (economically) - 사회적, 제도적 자원체계나 보호가 없으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개인/단체

본 연구에서의 취약계층

- **경제적 취약계층(빈곤계층)**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나, 사회적 취약계층도 고려
- **절대적 빈곤** - 소득이 객관적으로 산출된 기준인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상태
- **상대적 빈곤** - 한 시점에 한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보유한 상태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OECD는 40, 50, 60%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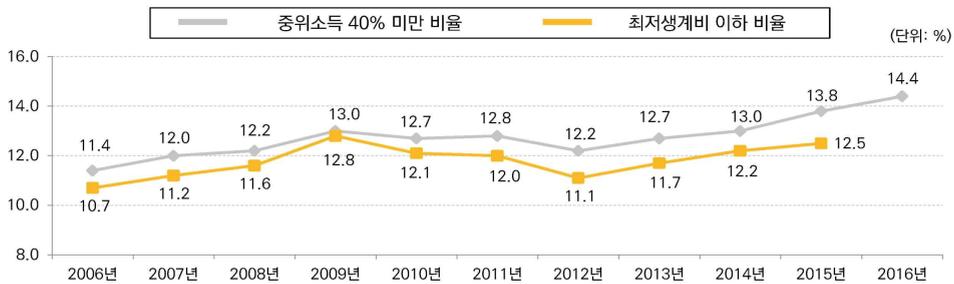


3

1. 취약계층 현황

02 취약계층 비중 추이

개인 기준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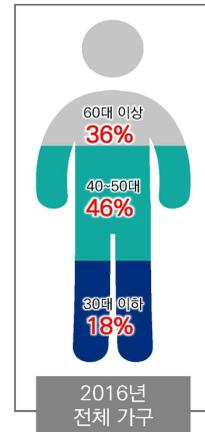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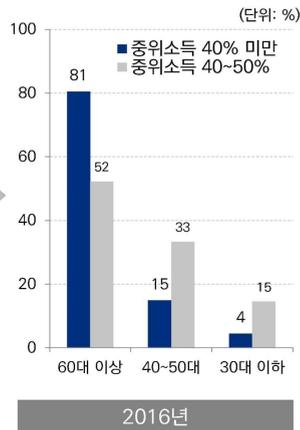
- ❖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모두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
- ❖ 주 : 1인가구 포함하여 계산 / 시장소득 기준 (시장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 ❖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4

1. 취약계층 현황

03 취약계층의 고령화

2006년 vs.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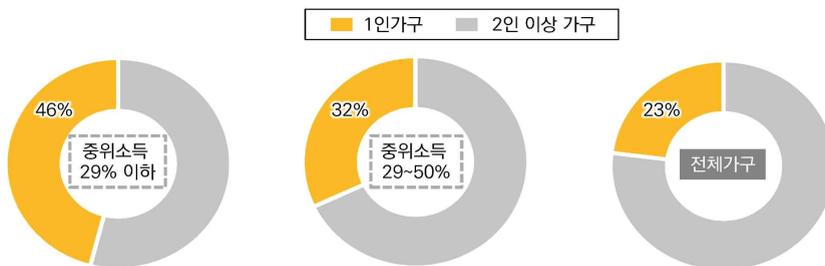
❖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5

1. 취약계층 현황

04 취약계층의 1인가구 비중

2016년 가구원수별 구성



-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29% 이하 가구에서 1인가구의 비중은 46%
 - 취약계층 두 가구 중 한 가구 꼴로 1인가구
 - 전체 가구 23%의 두 배인 수치



❖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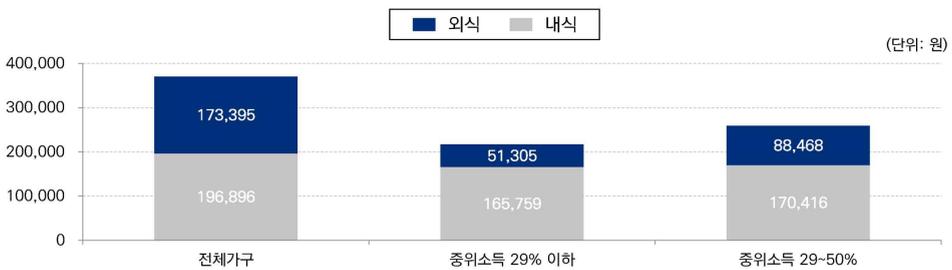
취약계층의 식생활 실태

- ▶ 01 취약계층 식품비 지출
- ▶ 02 취약계층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 ▶ 03 취약계층 비만 및 대사증후군
- ▶ 04 취약계층 식생활 특징

2. 취약계층의 식생활 실태

01 취약계층 식품비 지출

1인 단위 식품비 구성



- ❖ 중위소득 29% 이하 가구에서 1인당 가정 내 식품비 지출액은 전체 평균의 84.2%, 외식비는 29.6% 수준
 - 특히 육류(73.5%), 우유류 및 계란류, 과일류 지출액이 70% 수준
- ❖ 차상위계층의 외식비는 전체 평균의 51.0%로 외식의 그룹 간 격차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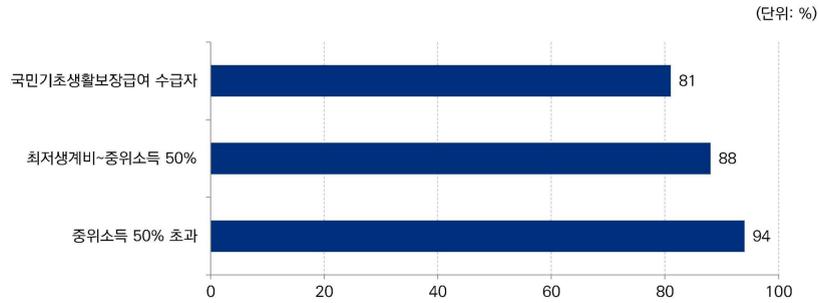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2. 취약계층의 식생활 실태

02 취약계층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권장섭취량 대비 에너지 섭취 비율



-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에너지 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의 81% 수준에 불과
- ❖ 차상위계층의 에너지 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의 88%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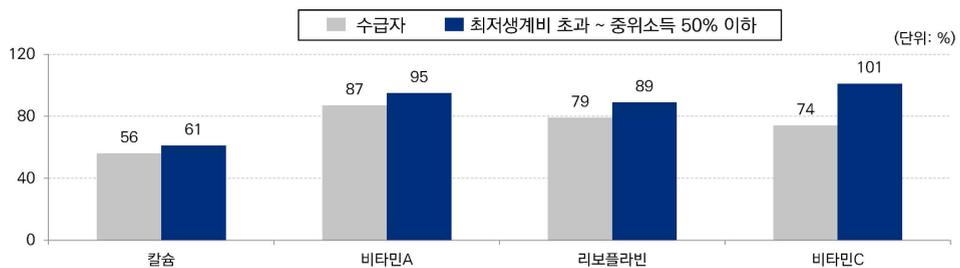
❖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분석



2. 취약계층의 식생활 실태

02 취약계층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권장섭취량 대비 영양소 섭취 비율



-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권장섭취량 대비 칼슘 56%, 비타민 A 87%, 리보플라빈 79%, 비타민 C 74% 섭취
- ❖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은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15.5%),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자(11.6%), 최저생계비~중위소득 50% 이하(10.0%), 중위소득 50% 초과(6.9%)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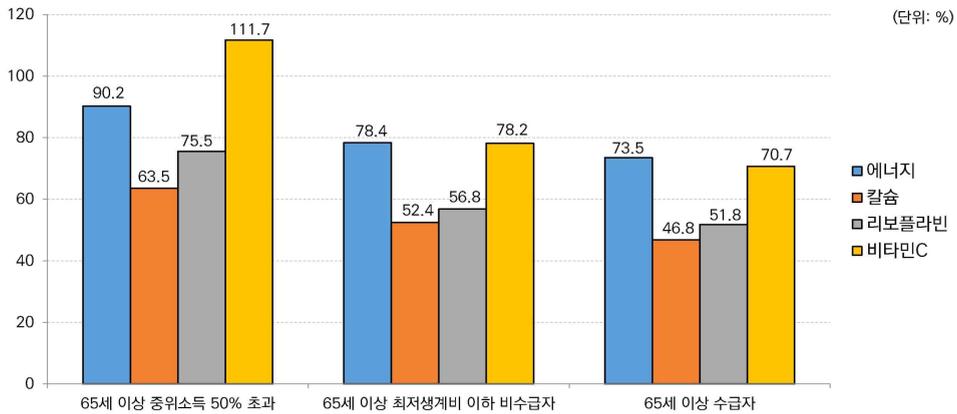
❖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분석



2. 취약계층의 식생활 실태

02 취약계층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고령 취약계층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 비중



❖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분석

11

2. 취약계층의 식생활 실태

03 취약계층 비만 및 대사증후군

취약계층 저체중·비만·대사증후군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자	최저생계비 초과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
저체중	4.4	4.7	4.6	3.8	4.4
비만	32.9	35.1	35.8	38.7	32.0
대사증후군	19.0	22.8	24.9	21.5	17.5

- ❖ 저체중은 그룹별 차이가 크지 않음
- ❖ 최저생계비 초과~중위소득 50% 이하 그룹의 비만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자, 수급자 순
- ❖ 대사증후군은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자가 전체 평균보다 5.9%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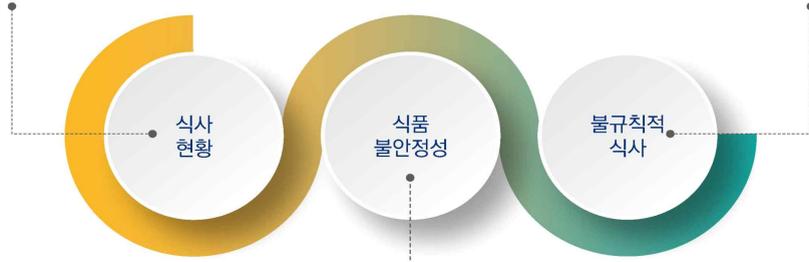
❖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분석

12

2. 취약계층의 식생활 실태

04 취약계층 식생활 특징

- 점심식사 중 평균 11.4%를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거나 복지기관에서 배달된 도시락/반찬으로 식사
- 점심/저녁 식사의 경우 편의점과 포장마차 등 길거리에서 식사하는 빈도가 높음
- 규칙적 식사 비중은 전체 평균 57.3%인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50.3%로 상대적으로 불규칙적



- 식품 안정성은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의 능력(2013~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18개 문항 종합)
- 중위소득 50% 초과 그룹의 경우 식품 안정단계 비중이 95.0%에 달하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의 경우 식품 불안정 단계에 속하는 비중이 33.1%로 매우 높음

❖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분석

13



3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 현황

- 01 식품지원 관련 법률 현황
- 02 식품지원 사업 현황
- 03 식품지원 사업별 예산규모
- 04 식품지원 방식별 예산 운영 현황



3.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 현황

01 식품지원 관련 법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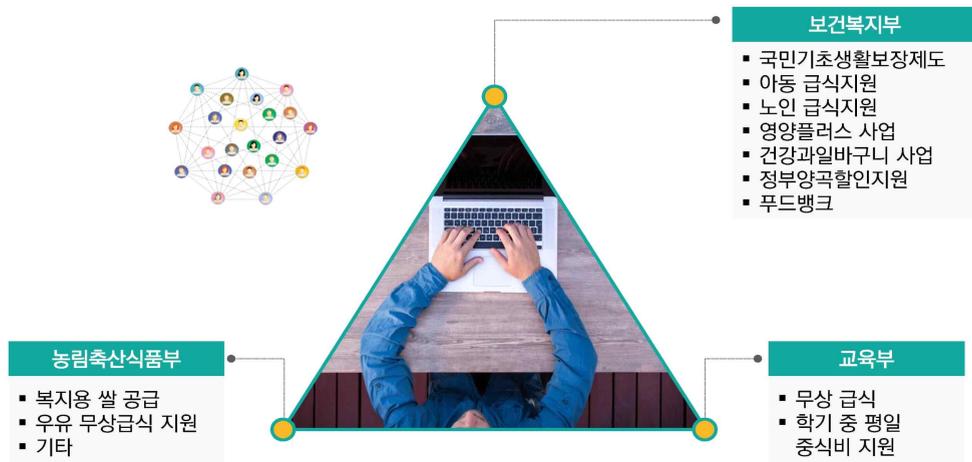


- ❖ 다수의 법률에 근거, 다원적 행정체계로 운영 - 2개 기본법, 20여 개 개별법과 관련 제도가 연계되기 어렵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존재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은 '전국민 대상' 식품지원제도 운영 및 활성화에 한계
→ 식생활, 영양, 건강 지원 관련 유사 제도를 하나의 기본법에 담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성 제기

15

3.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 현황 및 평가

02 식품지원 사업 현황



16

3.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식품지원 관련 정책은?

03 식품지원 사업별 예산규모

광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단위: 천 원, %)

제도명	예산총액(2016년)	예산비중(2016년)	비중				
			중앙정부	광역	기초	민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528,390,452	78.6	81.1	11.9	7.0	-	
긴급지원(생계지원)	35,823,332	1.8	77.2	9.0	13.8	-	
정부양곡할인지원	71,067,765	3.7	86.0	6.5	7.5	-	
노인급식	경로식당	54,349,770	2.8	-	49.8	50.1	0.2
	식사배달	36,793,129	1.9	-	44.3	55.7	-
	소계	91,142,899	4.7	-	47.3	52.6	0.1
결식아동 급식지원	189,207,939	9.7	3.1	50.3	46.6	-	
영양플러스	26,671,555	1.4	43.1	17.4	39.4	0.1	
건강과일바구니	1,113,415	0.1	16.8	49.4	33.8	-	
합계	1,943,417,357	100.0	69.3	17.1	13.6	0.0	

- ❖ 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은 생계비 중 식품비 비중 37.1%를 적용
- ❖ 자료 : 지자체 제출 통계자료(전수조사)

17

3.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식품지원 관련 정책은?

04 식품지원 방식별 예산 운영 현황

광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단위: 천 원, %)

구 분	예산총액(2016년)	예산비중(2016년)	비중			
			중앙정부	광역	기초	민간
현금보조	1,564,213,784	80.5	81.0	11.8	7.2	-
현물보조	308,135,808	15.9	5.7	46.6	47.7	0.0
가격보조	71,067,765	3.7	86.0	6.5	7.5	-
합 계	1,943,417,357	100.0	69.3	17.1	13.6	0.0

- ❖ 주 : 현금보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 지원, 긴급지원의 생계지원이, 현물보조에는 노인무료급식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이 포함되며, 가격보조에는 정부양곡할인지원이 포함됨
- ❖ 자료 : 지자체 제출 통계자료(전수조사)

18

4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 평가

- ▶ 01 식품지원 규모에 대한 평가
- ▶ 02 소비군별 지출액에 대한 효과
- ▶ 03 식품비 지출액에 대한 효과
- ▶ 04 질병/영양상태에 대한 효과
- ▶ 05 취약계층 및 사업 담당자 평가

4.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 평가

01 식품지원 규모에 대한 평가-미국 식품지원프로그램 예산과 비교

구 분	우리나라	우리나라 - 미국 비율	미국
식품지원제도 예산	1조 9,434억	1.71%	113조 5,249억
GDP 1억 원 당 식품지원제도 예산	122,000원	22.53%	541,000원
주요 지원방식	현금지원 : 80.5%		현물지원 : 80% 이상
주요 전담부서(예산 비중)	보건복지부:90% 이상		농무부 : 99% 이상

❖ 환율 : 1,130원/\$ 기준(2017.10월 기준)



4.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 평가

0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소비군별 1인당 실질지출액에 미친 효과

처리효과모형 분석 결과(평균처리효과)

$$y_i = \alpha_0 + \alpha_T T_i + Z_i' \theta + \epsilon_i$$

구분	식품비 지출	주거/광열/수도 지출	가구/가사/피복/신발 지출	보건의료 지출	교육 지출	교통/통신/교양오락 지출
PSM	-0.8442 *	+2.5931 ***	+1.8568 ***	-4.1339 ***	+2.0767 ***	1.6746

- ❖ 주 : *** p < .01, ** p < .05, * p < .1
- ❖ 자료 : 2011~15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분석



21

4.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 평가

03 수급 및 식품지원제도 수혜여부가 식품비 실질지출액에 미친 효과

고정효과 패널모형 분석 결과

$$Y_{i,t} = \alpha + \beta X_{i,t} + \sum_{j=1}^7 \theta_j D_j + \mu_i + \epsilon_{i,t}$$

구분	추정치	t-통계량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0.724	0.93
가구 급식지원 이용 여부	5.131 ***	5.45
가구 식사배달서비스 이용 여부	-2.260 **	-2.37
아동가구 무료급식 이용 여부	-2.617	-1.21
영유아보충식품지원 이용 여부	5.712 ***	3.47
노인가구 무료급식 이용 여부	-0.0531	-0.16
노인가구 식사배달서비스 이용 여부	2.703 **	2.42
가구주 성별	-1.215	-1.22
가구주 연령	0.138 ***	2.65
가구주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이상)	6.707 ***	2.65
가구주 결혼 여부	-2.128 **	-2.05
가구원 수	8.693 ***	15.64
경상소득	0.0459 ***	13.53
가구 내 상용근로자 수	2.705 *	1.71
가구 내 임시근로자 수	1.657 ***	4.93
상수항	6.976 *	1.76
표본수	11,322	

- ❖ 주 : *** p < .01, ** p < .05, * p < .1,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표에서 삭제
- ❖ 자료 : 2011~15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분석

22

4.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 평가

04 수급 및 식품지원제도 수혜여부가 질병/영양상태에 미친 효과

결과변수		추정 방법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식생활지원프로그램 이용여부
질병	당뇨병	PSM	0.007	0.032
		IPW	0.013	-0.051 ***
	고지혈증	PSM	-0.01	-0.043 ***
		IPW	-0.012	-0.065 ***
	고혈압	PSM	-0.032	-0.052
		IPW	-0.029	-0.168 ***
협심증	PSM	0.012	-0.006	
	IPW	0.025	-0.016 ***	
영양상태	심근경색	PSM	0.017	-0.002
		IPW	0.032	-0.007 ***
	뇌졸중	PSM	0.021	0.001
		IPW	0.027	-0.017 ***
	영양섭취 부족 여부	PSM	0.003	-0.001
		IPW	-0.009	-0.052 ***
에너지권장섭취 미만 섭취 여부	PSM	0.022	0.011	
	IPW	0.012	-0.007	
섭취기준 미만 영양소 수	PSM	0.368 **	0.009	
	IPW	0.18	-0.803 **	

❖ 주 : *** p < .01, ** p < .05, * p < .1 | PSM : Propensity Score Matching, IPW : Inverse Probability Weight
 ❖ 자료 : 2013~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분석

23

4.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 평가

05 취약계층 및 사업 담당자에 의한 평가

바람직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식품비 지원 방식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수	현금 지급	식품 구입권	식품 형태	급식 (도시락)	식사조리/보조서비스	기타	계
취약계층	553	49.7	26.6	14.3	6.0	2.7	0.7	100
대상가구	일반	132	50.8	28.8	15.2	3.0	2.3	100
	노인	142	69.7	9.2	9.9	7.0	3.5	100
	아동	185	42.7	34.1	15.7	5.9	0.5	100
	영양플러스	94	31.9	35.1	17.0	8.5	6.4	100
사업 담당자 전체	356	39.3	39.0	10.1	5.3	4.2	2.0	100
조사대상	지자체	129	51.2	35.7	4.7	3.1	2.3	100
	기관	227	32.6	41.0	13.2	6.6	5.3	100
거주지역	시/구	189	39.7	41.8	9.0	4.2	4.8	100
	군	167	38.9	35.9	11.4	6.6	3.6	100

❖ 자료 : 취약계층 및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24

4.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 평가

05 취약계층 및 사업 담당자에 의한 평가

농식품 형태 지원제도별 지원방식 평가

(단위: 점, 5점 만점)

구 분	정부양곡		영양플러스		과일바구니		푸드뱅크		
	취약층	담당자	취약층	담당자	취약층	담당자	취약층	담당자	
지원 기준	대상자당 지원 물량	3.73	3.40	3.38	3.30	3.00	3.14	3.15	2.71
	대상자 선정조건	3.60	3.39	3.71	3.17	3.50	3.34	3.41	3.19
	낙인받을 우려	3.61	2.86	3.71	3.29	3.00	3.50	3.38	3.00
	전달(배송) 방법	4.10	3.37	4.29	3.79	3.50	3.43	3.36	3.20
	전달(배송) 주기	3.74	3.34	3.99	3.78	4.00	3.52	3.24	3.25
	1회 전달 규격	3.75	3.43	3.69	3.71	4.00	3.52	3.32	3.15
평 균	3.76	3.30	3.80	3.51	3.50	3.41	3.31	3.08	
식재료	식품의 안전성	3.68	3.30	3.95	3.78	4.00	3.48	3.38	2.95
	식품의 신선도	3.35	3.18	3.95	3.74	4.00	3.45	3.32	2.86
	식품 품질수준	3.36	3.11	3.95	3.73	4.00	3.45	3.40	2.92
	식품 종류(다양성)	-	-	3.19	2.99	3.50	3.14	3.18	2.56
	식품 조달업체 선정	-	-	-	3.39	-	3.34	-	-
평 균	3.46	3.20	3.76	3.53	3.88	3.37	3.32	2.82	

❖ 자료 : 취약계층 및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25

4.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 평가

05 취약계층 및 사업 담당자에 의한 평가

급식 형태 지원제도별 지원방식 평가

(단위: 점, 5점 만점)

구 분	아동급식소 급식		아동급식카드 급식		아동식사 배달		노인급식소 급식		노인식사 배달		
	취약층	담당자	취약층	담당자	취약층	담당자	취약층	담당자	취약층	담당자	
지원 기준	1회 지원단가 수준	4.12	2.65	2.73	2.34	3.20	2.47	4.00	2.45	4.25	2.46
	주당 지원 횟수	4.12	3.51	2.91	3.03	2.40	2.98	3.93	3.42	4.00	3.12
	대상자 선정조건	3.92	3.09	3.06	2.97	2.80	3.00	3.85	3.04	3.75	2.99
	전달 방식	4.09	3.34	3.41	3.21	3.60	3.05	3.96	3.39	4.13	3.11
	수급자 낙인 우려	3.53	2.96	3.06	2.59	3.20	2.67	3.78	2.96	3.38	2.87
평 균	3.96	3.11	3.03	2.83	3.04	2.83	3.90	3.05	3.90	2.91	

❖ 자료 : 취약계층 및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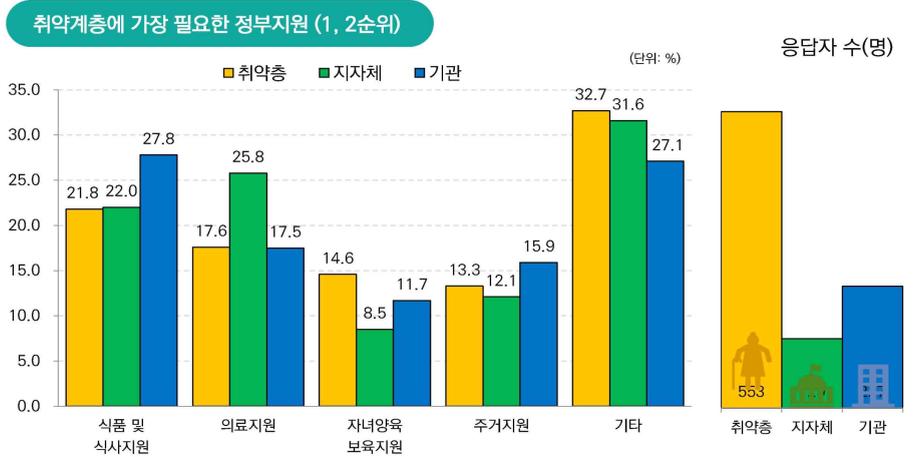
26

5 농식품바우처 지원 도입 방안

- 01 농식품 지원의 필요성
- 02 농식품 지원의 기본방향
- 03 농식품바우처, 왜 (전자)바우처인가?
- 04 농식품바우처, 누구를 지원한 것인가?
- 05 농식품바우처,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 06 농식품바우처, 어떤 식품을 지원할 것인가?
- 07 농식품바우처, 어디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것인가?
- 08 농식품바우처,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추진 체계
- 09 농식품바우처 도입의 기대효과

5. 농식품바우처 지원 도입 방안

01 농식품 지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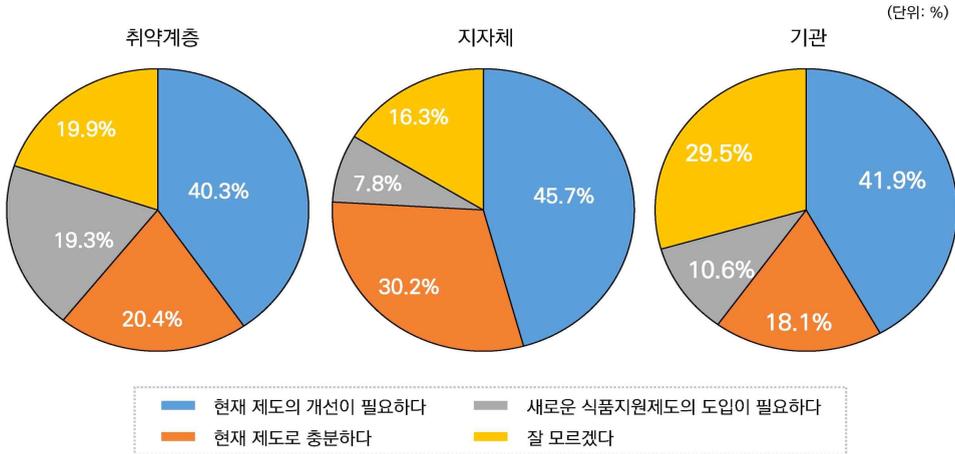


❖ 자료 : 취약계층 및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5. 농식품바우처 지원 도입 방안

01 농식품 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

현행 식품지원제도의 개선 필요성



❖ 자료 : 취약계층 및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29

5. 농식품바우처 지원 도입 방안

02 농식품 지원의 기본방향



30

5. 농식품바우처 지원 도입 방안

03 농식품바우처, 왜 (전자)바우처인가?

구분	가격보조	직접보조	
		현물보조	현금보조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소비 증대 효과가 가장 큼 타 용도 사용 가능성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소비 증대에 효과적 타 용도 사용 가능성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적 수혜자의 높은 만족도 운영 비용 절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 적음 이용매장 제한 가능성이 크므로 특정매장 혜택 논란이 발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효용을 제한적으로 증대, 소비자선택권 미보장 운영상 비효율성 발생 낙인효과 발생 일부 공급자 물량 조달 시 시장 교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소비 확대 어려움 타 용도 사용 가능성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거나 세대주나 특정 가구원의 선호에 의해 소비결정이 이루어짐

31

5. 농식품바우처 지원 도입 방안

03 농식품바우처, 왜 (전자)바우처인가?

구분	종이바우처	전자바우처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비용 부담 적음, 매장 접근성 제고 이용방법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비용 절감, 감시기능 강화, 정보분석 가능 타 서비스 연계 가능, 낙인 감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비용 증대, 부정사용 감시 어려움 수급자 및 공급자 정보 수집·분석의 어려움 타 지원서비스와 연계 어려움, 낙인감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기반조성 부담, 이용 매장 제한 일부는 이용방법 어려워 접근성 제약



32

5. 농식품바우처 지원 도입 방안

03 농식품바우처, 왜 (전자)바우처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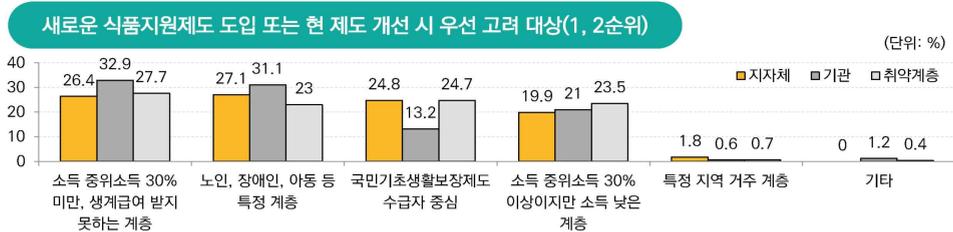
주의사항

- 본 농식품 바우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 제작 되어 대상자에 한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 본 농식품 바우처 앞면에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이며, 복제와 매매행위를 금합니다.
- 본 농식품 바우처는 지정된 매장에서 특정 농식품에 대해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농식품 바우처 이용 안내서 참조).
- 농식품 바우처로 구매한 물품은 반품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본 농식품 바우처는 잔액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액면 금액에 맞추어 모두 사용하실 것 권장합니다.

※ 문의사항 또는 본 농식품 바우처를 습득하신 분께서는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문의처 010-3296-8816 문의시간 09시-18시

5. 농식품바우처 지원 도입 방안

04 농식품바우처,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



농식품 지원제도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단위: %)

구분	소득	가구 유형	재산	연령층	장애 여부	영양 상태	부양 가족	질환 여부	거주 지역	합계
취약계층	18.1	12.0	8.8	16.3	11.0	9.6	11.1	9.3	3.6	100
지자체	18.1	17.2	12.9	17.8	7.8	10.6	7.2	6.3	2.0	100
기관	16.5	13.0	10.9	15.1	8.4	15.5	10.2	7.2	3.2	100

※ 자료 : 취약계층 및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5. 농식품바우처 지원 도입 방안

04 농식품바우처,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

- (보편성) 소득/재산 수준을 중심으로 고려하여 제도의 보편성 확보 필요
- (특수성) 고령가구, 독거노인, 아동가구, 한부모가정, 비만아동 가정 등 특정 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
- (중복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식품비(생계급여)를 지원 → 중복성 고려 필요
- (확장성) 전체 먹거리 현금 중심의 지원체계를 현물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 고려 필요

지급 대상	가구 수	비중
중위소득 50% 미만 & 비수급자	2,918,712	15.45
중위소득 50% 미만 & 비수급자 & 무료급식 제외	2,340,364	12.39
중위소득 50% 미만 & 비수급자 / 독거노인	915,225	4.84
중위소득 50% 미만 & 비수급자 / 모두 65세 이상	1,342,788	7.11
중위소득 50% 미만 & 비수급자 / 65세 노인 있는 가구	1,609,669	8.52
중위소득 50% 미만 & 비수급자 / 5세 이하 있는 가구	27,575	0.15
중위소득 50% 미만 & 비수급자 / 17세 이하 있는 가구	144,789	0.77
중위소득 50% 미만 & 비수급자 / 결혼가구	17,627	0.09

35

5. 농식품바우처 지원 도입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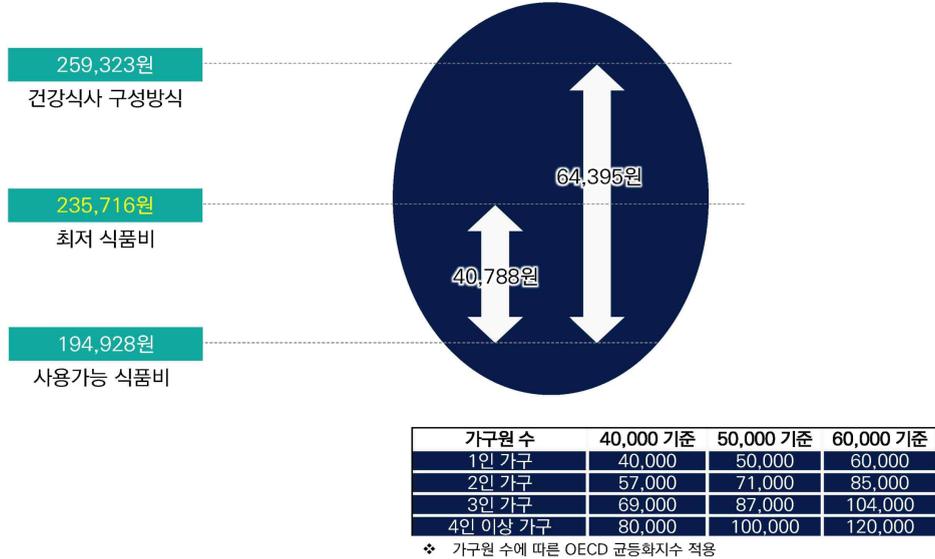
05 농식품바우처,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36

5. 농식품바우처 지원 도입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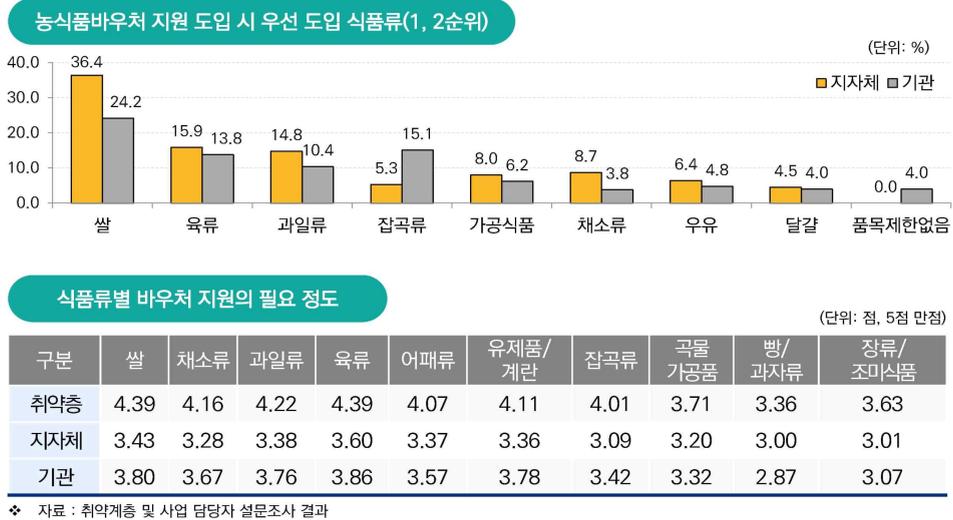
05 농식품바우처,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37

5. 농식품바우처 지원 도입 방안

06 농식품바우처, 어떤 식품을 지원할 것인가?



38

5. 농식품바우처 지원 도입 방안

06 농식품바우처, 어떤 식품을 지원할 것인가?

- (건강 식생활) 부족한 식품 및 영양소를 적극 반영
- (농업과 연계) 국내 농업과 연계를 위해 국내 자급수준 및 생산여력 고려, 시장격리(산지폐기) 품목 고려
- (선택권 보장) 취약계층의 선택권 최대한 보장, 제도 안정단계에서 품목 확장 고려
- (운영 현실성) 제도 운영 상의 난이도 및 실현 가능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 고려
- (희망 품목) 다소비식품 고려, 과일, 채소, 계란, 쌀, 육류 등 선호(실증연구 설문조사)
- (중복성) 쌀의 경우 정부양곡할인지원과 중복 가능하므로 검토 필요



39

5. 농식품바우처 지원 도입 방안

07 농식품바우처, 어디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것인가?

농식품바우처 도입 시 이용 의향 식료품점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취약계층	지자체	기 관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27.7	28.5	23.8
재래시장	20.0	16.5	20.0
대형할인점	15.3	16.2	17.7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14.2	11.7	13.7
편의점	8.2	9.1	6.7
로컬푸드직매장	4.5	8.4	6.6
친환경매장	5.6	3.9	4.4
파머스마켓	2.7	3.2	3.7
백화점 식품코너	1.7	1.9	3.1
기타	0.1	0.6	0.3
합계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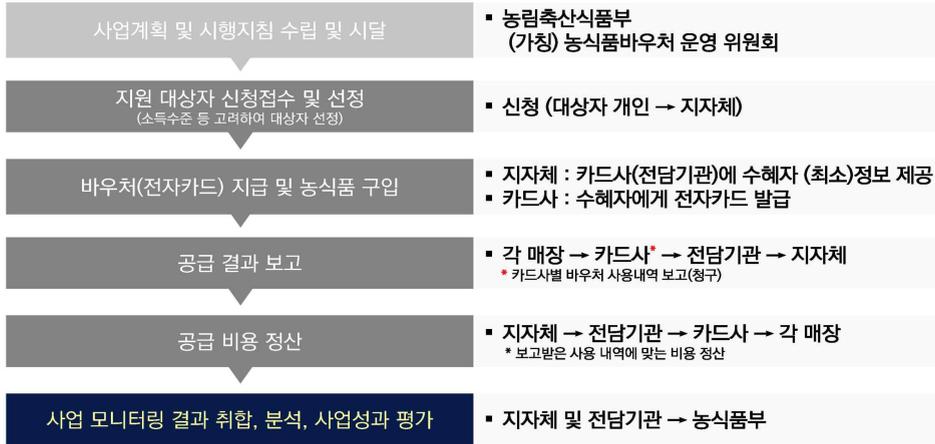
❖ 자료 : 취약계층 및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40

5. 농식품바우처 지원 도입 방안

08 농식품바우처,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추진 체계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추진체계(안)



41

5. 농식품바우처 지원 도입 방안

09 농식품바우처 도입의 기대효과

- 국내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효과(5만 원 기준)

단위: 억 원

지급 대상	소요 예산	과일	채소	곡물	우유
중위소득 50% 미만 & 비수급자	26,619	4,470	5,090	8,137	1,601
중위소득 50% 미만 & 비수급자 & 무료급식 제외	21,344	3,585	4,082	6,524	1,284
중위소득 50% 미만 & 비수급자 / 독거노인	8,347	1,402	1,596	2,551	502
중위소득 50% 미만 & 비수급자 / 모두 65세 이상	12,246	2,057	2,342	3,743	737
중위소득 50% 미만 & 비수급자 / 65세 노인 있는 가구	14,680	2,465	2,807	4,487	883
중위소득 50% 미만 & 비수급자 / 5세 이하 있는 가구	251	42	48	77	15
중위소득 50% 미만 & 비수급자 / 17세 이하 있는 가구	1,320	222	253	404	79
중위소득 50% 미만 & 비수급자 / 결손가구	161	27	31	49	10

- ❖ 식품비에 행정비용 20% 가정
- ❖ 구축효과 0.87 가정(실증연구 결과)

42

5. 농식품바우처 지원 도입 방안

09 농식품바우처 도입의 기대효과

- 농식품산업 파급효과: 1,164~1,181억 원 생산유발, 1,872~2,892명 취업유발
 - ✓ 소득분위 1/10분위 대상 총 2,200억 원 규모의 사업 시행 가정(2018.2. KREI)
- 신선식품 지출 비중 증가로 건강한 식생활로의 전환
 - ✓ 농식품바우처 지원 전/후 과일 4.98%p, 채소 7.08%p, 곡물 9.69%p, 우유 3.50%p 증가, 가공식품은 전체 식품비 지출의 55%에서 38%대로 감소
 - ✓ 신선식품 중심으로 식품소비/식생활을 바꾸는 효과
- 국내산 및 지역산 농산물 관심도 증가, 식생활 도움 정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영양섭취 및 건강 개선으로 취약계층 의료비 지출 및 국가의료부담 완화
 - ✓ 총 의료비 감소액 241억 원(취약계층 88억 원, 국가 153억 원 절감)
 - ✓ 1인 가구 기준 4만 원 지원, 약 23만 가구 대상 분석, 구축효과 0.2 가정 시나리오(2018.2. KREI)
- 취약계층 불평등도 완화 효과 등

43



감 사 합 니 다
Thank you!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종합토론

- 최범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생산자 입장에서 바우처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산농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음. 농업이 자생 및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기반 확대가 필요함. 바우처 사업 시행 시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가능함. 생산과 연계 시 수급조절도 용이함. 주요 품목에 대한 통계조사 필요함. 현물 지원과 식생활 교육이 동반 실시되어야 함. 농업에 대한 이해와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잠재적 수요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임.

- 이계임(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생산자 입장에서 바우처 사업이 수급조절과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셨음. 식생활 교육을 강조하셨음.

- 임은경(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영양과 최저생계비 이하, 차상위 계층 중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함. 수원시에서 2년간 쌀 우유 지원 했는데 현물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농가소득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임. 중복문제도 있는데 초등 돌봄 교실과는 중복으로 볼 수는 없음. 다른 중복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발표에서 들었던 것이 같이 먹는 식사가 고려되지 않으면 영양에 대한 문제가 발생. 현재 식품 소비가 즉석식품이나 간편조리식품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사업에 녹아낼 것인가 대상 식품을 고려할 필요 있음. 바우처 사업에 이러한 부분들을 농식품 소비연계가 세부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음.

- 이계임(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소비자 입장에서 과일간식 같은 경우에는 중복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시고 그 사업이 긴축되지는 않을까 우려를 표현 해주셨음.

- 송이목(완주군청) : 준비한 부분은 앞에서 다 말씀하셨음. 동네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창피했다고 관내 이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음. 영양실조였음. 돈 없고 못사는 분이 아니었음. 생계비로 돈을 주는데 식품비로 안 쓰는 것이 문제임. 학원비가 급하다고 얘기하고 주류 구입에도 사용함. 경로당 간식비도 안 쓰고 모아서 놀러가는 경우도 있

음.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돈이 사용됨.

- 완주군에서 2018년에 바우처 사업을 했었는데 카드는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음. 종이 바우처는 업체에서 어려움을 토로했었음. 바우처 사업을 할 때 법제화가 필요함. 부처 간의 협력도 필요함. 취약계층 명단 만들 때부터 개인정보동의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음. 취약계층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 아니면 대화를 안 함. 신청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힘들었음.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도 바우처를 사용하면서 자국의 농산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농식품부도 영양적인 관점 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에 대한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음.
- 이계임(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제 실증연구 대상자 입장에서 전자카드와 종이 바우처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전자카드로 가되 어떻게 보완적으로 진행할 것인가가 고민이 필요해 보임. 지자체 안의 복지과와 농업담당과의 협조문제가 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음.
- 이행신(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의 WIC 제도와 유사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진행했었음. 대상은 보편성, 특수성 고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연구를 해보니 복지패널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소득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긴급 지원 대상층이 있음. 혼자 사는 남자들의 경우 너무 식생활 관리를 안 해서 긴급히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도 있음. 농식품바우처를 주는 대상을 어디까지 줘야 하는가에 대해, 먹거리 불안정 계층이 어디까지 인가 고민이 더 필요함. 현물을 지원하는 체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줄 것인가도 고민이 필요함. 신선 농산물을 줄것인데 대상자들의 요구가 다양함. 실제 필요한 것을 바우처를 통해서 제공해야하는데 바우처의 품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과일, 채소, 육류 다 중요한데 전달 방식도 원재료로 줄 것인지 반찬 형태의 식품으로 줄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지역 칸막이를 없애야 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예산 투입시 효과를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예를 들자면 영양 플러스 사업

시 아이들의 빈혈 상태를 지표로 했을 때 큰 변화가 있어서 중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계임(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편성과 특수성 어디에 바우처가 이상을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명확해야 할 것임. 현물지원에서 품목을 어떻게 설정하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 등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말씀 해주셨음.
- 구인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반적으로 이사업의 취지에 공감함.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공급자 위주의 시각과 수요자 위주의 시각을 균형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저소득층 지원 취지는 쉽게 공감되나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이 가장 큰 푸드스탬프 사업을 하는 것인데 미국만 유일함. 미국의 복지정책은 굉장히 예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정상적인 선진국의 포맷은 아님. 미국의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음. 선택권을 보장하는 현금지원이 기본 원칙으로 가지고 있음. 수요자가 다양한 욕구가 있음. 의류나 주거에 대한 현물성 급여를 확대하고 그 의의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식품에 대해서도 과연 그럴 것이냐. 식품불안정성이나 영양상태 개선에 효과가 있는가가 논의의 핵심임. 약간 조심해야 할 부분은 식품지원 제도가 없어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사람의 욕구에 따라 다른 부분을 먼저 써야할 수가 있음. 현재의 원인 지적이 균형이 필요함. 다른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식품비가 줄었을 경우도 있을 것인데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음. 연령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수급, 비수급으로만 나누는 것은 부적절해보임.
- 전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야할 논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확대의 필요성 속에서 식품지원도 확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가야지 마치 현재 현금급여가 과다하고 비효율적이다를 강조하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있음. 제도를 잘 설계하고 집행해야 하고 지속적인 평가 사업이 매우 중요함.
- 급여 수준을 정하는 것에 균등화지수를 사용하셨는데 식품의 경우 균등화지수를 고려하는게 부적절한 영역일 수도 있다고 봄.

- 이계임(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소득층 지원이 충분한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의도가 아니라 지원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방법도 좀 더 실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이런 식의 접근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심. 현금이 수요자들이 원하고 선택권이 넓기 때문에 바우처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선택의 제한성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균등화 지수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고민이 필요해 보임. 연령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효과분석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연구진이 고려를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라 나중에 연구진이 답변을 해주실 것임.

-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 기초보장 연구가 주이고 얼마 전에 에너지 바우처 도입과정에 연구지원을 했었음. 사회적으로 가치제에 대해서는 바우처 등의 현물지원에 대한 동의가 됨. 건강이나 의료에 관련된 에너지, 식품 등의 바우처 제도 도입에도 동의함. 의료는 보건복지부와 담당을 하고 있지만 건강과 관련해서 식생활을 운영하고 있는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운동과 관련된 문체부가 협력해야지 국민 건강이 확보되기 때문에 역할분담이 잘되었다고 생각함.

- 제도화의 경우 많은 말씀해주셨는데 현물지원의 경우 고려할 부분이 복잡함.

- 현금은 행태를 반영하지 않는 구성이지만 현물을 전제로 한 바우처는 행태를 반영해야 함. 식품과 관련된 가장 큰 요인은 소득뿐만 아니라 시간도 중요한 요소임. 한국문화 1인가구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행태를 반영한 반찬구매, 반조리식품도 같이 고민해야 함. 시간 부족, 활동능력 부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식품지원과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가 적지 않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목적도 다르고 대상도 달라서 중복으로 보기 힘들다 것에는 동의함. 양쪽 제도에 대한 건강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 대상에 대해서 기준이 쉬워야 함. 알기 쉬워야 함. 정부가 계속 찾아주겠다는 생각 버리고 국민이 쉽게 알아서 신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유도해야함. 대상 설계는 정교하게 연구하되 기준은 알기 쉽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균등화지수는 아이템별로 굉장히 다른데 이럴 때는 제도별 균등화지수를 뽑는데 예를 들면 식품비가 1인, 2인 3인, 4인 가구에서 어떻게 다른지 하고 가구 규모별 차이를 찾게 되는데 대부분의 가치제에서 위험한건 1인가구를 기준으로 만들면 상당히 낮게 설정될 우려가 있음. 4인가구를 기준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계임(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물 지원이 복잡하더라 말씀 하셨는데 실증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깨닫고 정교하게 나름대로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음. “정교하되 쉬워야 한다” 이게 가장 핵심 지적인 것 같음. 대상자가 “내가 대상자 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임. 실제로 많은 제도들의 경우 굉장히 복잡한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알 수가 없어 대상자는 많으나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균등화지수 관련해서도 고민해야할 중요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음. 대상품목 선정 시 식생활 행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도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임.
- 김성훈(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바우처가 시의적절하고 공감이 됨. 좋은 제도라고 생각됨. 다른 시각으로 보면 사용자 관련해서는 식생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바우처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네트워킹 기능을 구성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식생활, 식습관, 기타 등등 정보를 제공, 사용상의 어려움을 피드백 받고 주는 것 필요. 공급측면에서 예산을 얼마나 할 것이냐, 농산물 공급과잉과 소비여력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조금과 연계활용 필요함.
- 자조금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 의무자조금이 10개 품목이 있고 16개로 확대 예정임. 한우, 한돈 자조금 1년 예산이 300~400억 원인데, 이중 소비 홍보와 수급안정에 156~200억 원 정도 사용함. 바우처를 활용하는 창구에 해당되는 편의점이나 온라인 몰에서 자조금 단체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가 필요함.
- 이계임(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생활 교육 관련한 추가적인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음. 예산 관련해서 연구진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임. 자조금과 연계를

활용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임정빈(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농식품 정책을 연구하는데 최근에 농정에 있어서 선진국형 농정이 크게 두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현재 실현이 되고 있고 오늘 두 번째가 실현이 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공익형 직불제임. 두 번째가 바로 이 국민의 삶, 복지와 연관되는 식품영양지원제도인데 이게 농업과 연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가 선진국형 농정제도라고 생각함. 이번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함.
- 왜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은 앞선 발표자께서 상당히 잘 말씀해주셨음.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고 봄.
- 큰 틀에서 발표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많지만 이것을 강조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낼 것임.
- 첫 번째로 농식품바우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식품영양지원제도가 부처 개별적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정책영역 싸움으로 비춰져 왔다고 봄. 어느 부처가 뭘 하던지 유기적으로, 협력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김상호 박사님 발표에서 식생활, 영양, 건강지원 관련 유사제도를 하나의 기본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에 상당히 동의함. 이렇게 해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국민에게도 동의를 얻을 수 있음.
- 두 번째로 국내농업과의 연계성이 미흡함. 보건 복지부로 전담으로 하는 식품영양지원 제도가 이루어져 와서 국내 농업과의 연계가 부족함. 최근에 선진국들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식생활영양지원, 식생활 교육정책을 연계하고 좀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환경,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등 좀 더 큰 틀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세 번째로 식품영양지원사업이 점검 및 평가체계가 미흡하고 현물이든 지원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향후에 건강상태나 좀 더 나은 식생활을 위한 식생활 교육과의 연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함.

-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면 첫 번째는 정책의 중복성을 줄이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지원하는 제도들의 조화성, 일관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두 번째는 법으로는 국내산 이런 제한 필요 없음. 신선은 무조건 국내산임. 로컬도 국내산임. 농촌경제, 로컬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내용적으로 국내산이 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계임(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이나 신선 쪽으로 용어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것은 좋은 지적임.
- 김상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함. 변화하는 식품소비 트렌드 때문에 hmr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되나 정책 반영 초기단계에는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서 심플하게 할 필요가 있고 향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오용이나 남용에 대한 관리,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전자바우처가 더 효율적이라고 봄.
- 이계임(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바우처 제도가 현금지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려해야할 요인도 많기 때문에 3년 정도 연구를 진행을 했고, 실증연구,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도 반영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음.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 록 3

SNAP 신청서 양식

LDSS-4826-KO (Rev. 2/18) 뉴욕주 일시장애인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신청 / 재인증

본 신청서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신청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눈이 안 보이거나, 시력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이 신청서를 다른 형식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에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형식의 유형 및 귀하가 대체 형식으로 된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첨부된 설명서 (LDSS-4826A)를 참조하거나 www.otda.ny.gov를 방문하십시오.

귀하가 눈이 안 보이거나, 시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 다른 형식으로 서면 고지서를 받으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예”일 경우, 원하는 형식 유형을 체크하십시오: 큰 활자체, 데이터 CD, 오디오 CD, 점자, 다른 대체 형식들이 귀하에게 동일하게 효과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해당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NAP 만 신청하는 경우 간단판본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지원, 아동 양육 지원, 가정 에너지 지원 또는 Medicaid 같은 기타 수당을 신청하려면 다른 신청서를 요청하십시오.

SNAP 을 신청하는 때

- 신청서를 받은 당일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최소한 귀하의 이름, 주소(있을 경우), 서명이 기재된 경우, 우리는 귀하의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정보는 귀하의 신청서 제출 날짜를 확인할 것입니다.
- 귀하가 SNAP 수급 가능자인지를 확인하려면 인터뷰 하기 및 신청서/재인증 8 페이지에 있는 인증 내역에 서명하는 것을 포함한 신청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급 가능자로 판명되는 경우 신청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 귀하 또는 귀하 가구의 다른 구성원이 비자 상대 때문에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귀하는 자격을 갖춘 가구 구성원을 위해 SNAP 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격을 외국인 부모이며라트 자녀를 위해 SNAP 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자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임시 지원 시한에 도달한 경우에도 SNAP 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DSS-4826-KO (Rev. 2/18) 페이지 1

SNAP 급여가 당장 필요합니까? 귀하는 SNAP 신청서의 신속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구에 소득이나 현금성 재산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경우, 또는 귀하의 입차료와 유틸리티 경비가 귀하의 소득 및 현금성 재산보다 많은 경우, 또는 귀하가 신청할 때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이주 또는 계절 농경근로자인 경우, 귀하는 신청일로부터 5영업 일 이내에 SNAP 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관 거주자가 기관에서 전 SSI 및 SNAP 을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서의 기록 관리원은 신청자가 기관에서 떠나는 날까가 됩니다.

SNAP 을 신청할 수 있는 곳

뉴욕시 외곽에 거주하는 경우 myBenefits.ny.gov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의 사회복지사무소로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신청 패키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신청 패키지는 우편 발송이 가능하고 해당 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거주 카운티 사회복지사무소 주소와 전화번호는 수신자 부담 전화 1-800-342-3009 로 전화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에 거주하면서 임시 지원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myBenefits.ny.gov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무 SNAP 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청서 패키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1-718-557-1399 로 전화하거나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1-800-342-3009 로 전화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SNAP 신청 약속을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귀하가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SNAP) 인터뷰 약속을 위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에는 직장, 건강 문제, 교통 또는 육아 문제가 포함될 수 있음), 어떤 상황에서는 저희가 귀하를 전화로 면접할 수 있으며 아니면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신청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생긴 경우나 귀하가 전화 인터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경우, 또는 인터뷰 일정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 귀하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

차별 금지 고지서 - 연방 인권 법률과 미국 농무부(USDA) 인권 규정 및 정책에 따라, USDA, 그 소속 기관, 사무소, 직원 및 USDA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성별, 종교적 신념, 장애 여부, 연령,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으며, 또는 USDA 가 실시하거나 자금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이전에 인권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하는 앙갚음이나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장애인으로서 프로그램 정보를 전달할 대체 연락 수단(예, 점자책, 큰 인쇄물, 오디오 테이프, 미국 수화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수당을 신청한 기(또는 현재)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점자 장애인이나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은 Federal Relay Service(800) 877-8339)를 통해 USDA 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프로그램 정보는 영어 외에 다른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차별 행위에 관한 불만사항을 제기하려면, USDA Program Discrimination Complaint Form (AD-3027)(온라인으로는 http://www.ascr.usda.gov/complaint_filing_cust.html)에서 제공되며, USDA 사무소 어디에서나 제공됨)을 작성하거나, 이 서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기재한 서신을 USDA 에 보내십시오. 민원 양식 사본을 요청하려면, (866) 632-9992 로 문의하십시오. 작성이 완료된 양식이나 서한은 다음 방식으로 USDA 에 보내주세요:

- 우편: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 팩스: (202) 690-7442
- 이메일: program.intake@usda.gov

본 기관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SNAP 신청서/재인증서

신청일	연락일	센터/사무소	부서	담당자	케이스 타입	케이스 번호	등록번호	비행	<input type="checkbox"/> 신청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재인증	연락
법적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본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다른 전화번호: _____ 거주지 주소: _____ Apt# _____ City _____ 뉴욕 우편번호 _____ 우편주소(다른 경우) _____ Apt# _____ City _____ 뉴욕 우편번호 _____ 기타 이름: _____ 귀하는 <input type="checkbox"/> 신청중 또는 <input type="checkbox"/> 재인증중 귀하는 통지를 받고 싶은 언어는: <input type="checkbox"/> 스페인어 및 영어 또는 <input type="checkbox"/> 영어 전용										

신청서에 최소한 귀하의 이름, 주소(있을 경우)와 이 난에 서명이 기재된 경우, 우리는 귀하의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대리인 서명 _____ 서명일 _____

그들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본인을 먼저 기재하십시오.

L N	이름	M I	성	신청자의 사회보장번호(SSN) (없는 경우, 'NONE'으로 기입)	생년월일	혼인 여부	성별 M 또는 F	이 사람이 신청자입니 까?		귀하는 이 사람과 함께/ 식당을 구입 및/또는 조리합니까?	허스패니 또는 라티노? 예 아니오	각 인종에 대해 Y(예) 또는 N(아니오)을 기입하십시오. (코드는 아래 설명되어 있음)					
								예	아니오			A	B	P	W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아니오				
2																	
3																	
4																	
5																	
6																	
7																	
8																	

*인종(민족 코드): 1-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A-아시아인, B-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P-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섬 출신, W-백인
 본 정보 계층은 자발적인 사항으로 신청자의 자격 여부나 수혜를 받는 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본 프로그램 수당이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과 상관없이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귀하 그리고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인가요? 예 아니오 "아니오"일 경우, 누가 시민권자가 아닙니까?
 귀하 또는 귀하 가족의 누군가가 다른 곳에서 SNAP 또는 임시지원을 신청하거나 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귀하 또는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가 퇴역군인입니까? 예 아니오 있다면 누구입니까?
 귀하 또는 누군가가 약물 또는 알코올 치료 센터, 주 인증 집단 거주 시설 또는 주 인증 감독/후원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귀하가 영장보충지침프로그램(SNAP)을 위해 재인증하고 있는 경우, 귀하의 마지막 신청 또는 재인증 후에 바뀐 것 (예: 이사, 출산, 누군가가 귀하의 가구로 전입 또는 결혼)을
 9 페이지에 기재하십시오.

더 많은 입력란이 필요하거나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기타 정보가 있으면 9 페이지를 사용해도 됩니다. 3 페이지로 가십시오.

소득

귀하의 소득 및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의 소득을 모두 기입하십시오. 소득에는 임금, 자영업 소득에서 자영업 비용을 뺀 소득 (예: 베이비시터, 청소, 입주자 또는
 하숙인으로 부터의 수입), 아동 양육비, 연금, 퇴역군인 급여, 장애, 사회보장 또는 생활 보조금 (SSI), 입차료 또는 식물을 위한 보조금 또는 장학금, 임시 지원 및 친구
 또는 친척으로부터의 수입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받는 분의 성함	소득원	월 근로 시간	소득을 받는 빈도? (예: 주 1 회, 2 주 1 회, 월 1 회)	받는 총액 공제 전

귀하 또는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취업 또는 교육 관련 아동/배우자/부양인 부양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있다면 누구입니까?
 지급액 \$ _____ 지급 빈도 (예: 주 1 회, 월 1 회) _____

귀하 또는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근로 시간 또는 소득의 감소를 포함하여 지난 30 일 동안에 직장을 변경 또는 중단했거나 어떤 형식의 소득이
 줄었습니까? 예 아니오
 귀하 또는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아직 받지 않은 잠재적 수입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일 경우, 9 페이지에서 설명하십시오.
 귀하 또는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가 파업에 참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있다면 누구입니까?

귀하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사람, 수양자녀, 또는 수양 성인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일 경우, 기숙사 생활자인 경우 B에 표시하고 수양 상대인 경우 F에 표시한 후 그들의 이름을 기입하십시오. B F 이름: _____

재산

재산은 SNAP을 신청하는 대부분 가구의 자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어떤 재산 정보는 귀하가 신청서 신속 처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이용됩니다.

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귀하 본인에게, 귀하의 가정에, 공동 보유 계좌를 포함하여 당좌 및 저축 계좌 또는
 다른 장소에) \$ _____ 귀속
 기타 금융 자산? (예를 들어, 주식, 채권, 퇴직 예금 계좌, 저축 채권, 뮤추얼 펀드, IRA, 신탁기금, 시장 금리 연동계 예금) 예 아니오
 "예"일 경우 금액 \$ _____ 형식 _____ 소유자 _____

귀하 또는 귀하 가족의 사람이 몇 대의 승용차, 트럭 또는 기타 차량을 갖고 있습니까?
 #1 연식 _____ 제조사 _____ 모델 _____ 소유자 _____
 #2 연식 _____ 제조사 _____ 모델 _____ 소유자 _____

귀하 또는 신청자가 귀하 자신의 주택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일 경우, 기입하십시오
 부동산 _____ 소유자 _____
 신청자가 SNAP 자격을 얻기 위해 지난 3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부동산을 매각, 기부 또는 양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교육/훈련 및 언어

16 세 이상의 가구 구성원 중 자신을 포함하여 신청인 가족의 이름을 기입하십시오. 신청인 가족, 아래의 교육 및 훈련 코드를 이용하여 "최종 학력" 기입란의 해당 상자에 "X"를 기입하십시오. ...

Table with 4 columns: Name, Education/Training Code (0-8), SNAP-eligible years, and English proficiency. Includes handwritten number 7.

* 교육 및 훈련 코드: 0- 고교 졸업장은 그에 해당하는 학위 미만,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동등 학위, 2- 군위인 학위 (2년제 대학 학위), 3- 학사 학위 (4년제 대학 학위), 4- 대학원 학위 (석사 이상), 5- 개별화 교육 계획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 수료, 8- 알 수 없음

주거 형태 및 정비

귀하 가구에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표시하십시오:
□ 자택 소유 또는 집을 위해 지불 □ 임대 □ 이주/계절 농경 노동자 □ 영구 주거지 없음 □ 원칙 또는 친구와 동거
정비를 열거하십시오.
월 임대료 또는 도기거 지급액 \$ _____ 연간 주택 관련 세금 \$ _____ 연간 주택 관련 보험금 \$ _____
난방비 별도 지불? □ 예 □ 아니오 "예"일 경우, 난방 유형을 명시하십시오. □ 가스 □ 전기 □ 석유 □ 목재 □ 석탄 □ 프로판 □ 기타 (기입하십시오) _____
난방회사 이름 _____ 난방회사 계약 No. _____
난방 비용을 전기료에 포함하여 또는 별도로 지불합니까? □ 예 □ 아니오
유틸리티 비용을 별도로 지불합니까 (난방/냉방 이외)? □ 예 □ 아니오 (예: 조명, 조리 가스, 음식물 쓰레기쓰레기, 수도, 조기 유틸리티 설치)
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이러한 정비를 지불합니까/일부 예는 섹션 8 또는 기타 보조금 프로그램입니까? □ 예 □ 아니오 "예"일 경우 누가 무엇을 지불합니까? _____
귀하 또는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며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있다면 누구입니까 _____
양육비 지급 대상 아동(들)의 성명 _____
지급액 \$ _____ 지급 빈도 (예를 들어 주별, 격주별, 월별) _____
귀하 및/또는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입니까? □ 예 □ 아니오 있다면 누구입니까 _____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 의료비 청구서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일 경우, 무엇을 위한 청구서인지, 금액이 얼마인지와 지불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9 페이지에 기입하십시오.

8

동거 형태 및 생활비 (계속)

귀하 및/또는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재산 중계 메디케어 (Medicaid) 프로그램 (spenddown)의 대상입니까? □ 예 □ 아니오
"예"일 경우 누가 _____ 금액 \$ _____
귀하 또는 귀하와 함께 사는 사람(16세 또는 17세)이 학교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일 경우 누가 _____ 학교/교육 프로그램 이름 _____
귀하 또는 귀하와 동거하는 사람(18세 -49세 사이)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교육 프로그램(고등학교 이상)을 이수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있다면 누구입니까? _____
학교/교육 프로그램 이름 _____ 풀타임(FT) □ 예 □ 아니오 소액 □ 예 □ 아니오 지출 □ 예 □ 아니오
16 세 이상의 가구원 (신청자 포함)중에 어른이 있는 경우 누구:
임신부입니까? □ 예 □ 아니오 있다면 누구입니까 _____
자신의 일하는 능력이나 수행할 수 있는 일의 유형이 제한받을만큼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있다면 누구입니까 _____
본 질문에 답하십시오:
귀하 또는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상태를 위반한 사람이거나 중죄 혐의로 처벌, 구금 또는 감금을 피해 도망 중이고, 사법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 예 □ 아니오 있다면 누구입니까 _____
귀하 또는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법원에 따른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을 위반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있다면 누구입니까 _____
귀하 또는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사기 또는 고의적 프로그램 위반 때문에 SNAP 수령 자격을 박탈 당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있다면 누구입니까 _____
귀하 또는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1996년 9월 22일 이후 화기, 단약 또는 폭발물, 또는 약물을 얻기 위해 SNAP 수당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있다면 누구입니까 _____
귀하 또는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1996년 9월 22일 이후 합계 금액 500 달러를 얻기 위해 SNAP 수당을 구입 또는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있다면 누구입니까 _____
귀하 또는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1996년 9월 22일 이후 어느 주에서 부정하게 SNAP 수당을 중복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있다면 누구입니까 _____
더 많은 입력면이 필요하거나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기타 정보가 있으면 9 페이지를 이용해도 됩니다.

8

아래의 중요 정보를 읽어보십시오

SNAP 처벌 경고 - SNAP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연방, 주 및 지역 관리의 확인을 받습니다.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SNAP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수당의 수령 자격이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확한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아래의 중요 정보를 숙독하십시오 (계속)

다음 사유로 인한 개인이 영구적 자격 상실:

- 소액 허가, 반약 또는 폭발물 판매와 관련된 거래에서 SNAP 수당을 이용하거나 수령했음이 법원 판결로 인정된 사실에 기초하는 첫 번째 고의적 SNAP 위반 행위.
- 합계 500 달러 이상의 SNAP 수당 밀기 때문에 법원 유효판결을 받은 사실에 기초하는 첫 번째 고의적 SNAP 위반 행위(위태에는 SNAP 공인 카드 또는 액세스 기기의 불법적인 사용, 양도, 취득, 변경 또는 소지가 포함함).
- 금지 약물 판매가 연부된 거래에서 개인이 SNAP 수당을 사용하거나 받은 법원 판결에 기초한 두 번째 SNAP-IPV. (불법 약물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특정 약물)
- 모든 세 번째 SNAP-IPV 고의적인 프로그램 위반.

SNAP 공인 카드 또는 액세스 기기를 고의적으로 사용, 양도, 취득, 변경 또는 소지한 것을 이유로 하는 중범죄로 유효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250,000 달러까지의 벌금이나 최장 20년까지의 구금, 또는 양자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은 적용되는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SNAP 부적격자로 판정되거나 고의적 프로그램 위반행위를 범한 것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수당을 받을 자격을 갖추거나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서 허위 또는 오도하는 진술을 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폐 또는 유폐하는 경우
- 예치액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제동을 폐기하고 용기를 반환함으로써 현금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SNAP 수당으로 제동을 구매하는 경우
-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시스템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SNAP 수당, 승인 카드 또는 계사용 문서를 사용, 제시, 양도, 취득, 수별, 소지 또는 밀매할 목적으로 연방법 또는 주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저지트려고 하는 경우.

또한, 다음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이 포함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SNAP 수당을 받을 자격을 박탈 당하고,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것이 아닌 EBT 카드를 카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소지할 경우
- 주류나 담배 등 비식품 품목을 구입하기 위해서, 또는 이전에 의상으로 구입한 식품 금액을 결제하기 위해서 SNAP 수당을 사용하는 경우
- 현금, 화기, 반약, 폭발물 또는 약물을 얻기 위해서 또는 SNAP 가구권이 아닌 사람을 위해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타인에게 EBT 카드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실제 반이하는 SNAP 수당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초과 지급액)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귀하의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향후 SNAP 금액에서 초과 지급 액수가 공제됩니다. 귀하의 케이스가 재조정된 경우 귀하의 계좌에 남아 있는 미 사용 SNAP 수당을 통해 초과 지급액을 상환할 수 있으며,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받지 않은 초과지급액은 연방정부의 자동 수당을 포함해 수금 대상으로 회부됩니다.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연방 수당(사회 보장 수당 등)과 세금 환급금에서 초과 지급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재부에는 처리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EBT 계좌에서 삭제된 SNAP 수당이 있다면 현 초과 지급액 차감 시 사용됩니다. 초과 지급액을 반환하지 않고 SNAP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SNAP 수당을 다시 받게 되면 수령하는 SNAP 수당이 줄어들 것입니다. 수령하는 수당이 감소되면 그 액수를 통보 받게 됩니다.

동일한 본인은 이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 (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또는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 (local social services district)가 본인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거나, SNAP 수당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추가 정보가 요구될 경우 본인은 이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은 또한 SNAP 필드 관리 평가를 할 때 뉴욕주 및 연방 담당자에게 참조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신청서/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P) 수당에 대한 이번 요청 및 그 밖의 요청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를 검증 또는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및 진찰하는 경우 기꺼워 의한 기타 조사를 동의합니다. 본인은 또한 이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담당 지원 프로그램 및 유틸리티 회사의 저소득층 프로그램에 연결할 때 사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뉴욕주가 본인의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여 본인의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HEAP 수당 지급에 대해 확인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확인에는 또한 본인의 가정용 에너지 공급업체(유틸리티 제공자 포함)가 소정의 통계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허가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저소득층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 성과 추적을 목적으로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local Social Services District) 및 연방 보건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본인의 연간 전력 사용, 전기료, 연료 소비, 연료 유형, 연간 연료비, 실제 이력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비공개 영업 보호(U) 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 본인은 뉴욕주 노동부(DOL)가 영업 보호(U)를 위한 용도로 보관하는 비공개 정보를 뉴욕주 임시장애지원국(OTDA)에 공개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정보에는 UI 보정료 청구 및 임금 기득이 포함됩니다. 본인은 임시 및 장애 지원국(OTDA)이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local social services district offices)에 근무하는 두 및 지역 기관 직원들과 함께 UI 정보를 이용하여 이 신청서로 신청된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에 대한 자격성 및 금액을 판단하는 확인하고 본인이 자격이 없는 금액을 받았음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아래의 중요 정보를 숙독하십시오 (계속)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 공개 - 본인은 뉴욕주 또는 지역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 및 수당 지급에 대한 본인의 자격 구비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 (social services district)와 뉴욕주가 본인 또는 본인이 적법하게 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본인이 가구 구성원이 수당 관련 공적 지원 또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수당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본인 또는 본인이 가구 구성원이 고용 관계를 얻거나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 제공되는 일차적 배정 또는 혼린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SUA(표준 유틸리티 보조비) 정보 - 본인은 SNAP 수당자는 당면허주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EAP)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수준임을 이해합니다. 본인이 이번 달 또는 이전 12개월 동안 20 달러 이상의 HEAP 수당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수당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SUA(표준 유틸리티 보조비) 수당을 위해 난방비, 에어컨 사용비 또는 유틸리티 비용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 본인은 본인의 필요사항, 소득, 부양산, 주거 형태, 노동 시간이 한 달에 80 시간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를 포함한 परिव양자가 없는 신체 건강한 성인 (Able-Bodied Adults without Dependents, ABAWD) 상태, 임신 상태 또는 수소를 본인의 신고 의무에 따라 본인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기면에 알릴 것에 동의합니다.

가구 경비 신고/중정 요건 - 본인은 본인 가구가 이러한 경비에 대한 SNAP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 및 유틸리티 경비를 신고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에 대해 SNAP 공제를 받으려면 비가구 구성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모기지 상환액, 재산세, 보험, 의료비 및 자녀 양육비를 반드시 신고 및 증명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위의 비용들을 신고/증명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가구는 신고하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은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공제로 본인이 SNAP 자격을 간헐적 또는 SNAP 수당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향후 언제든지 이러한 비용을 신고/증명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공제는 변경 사항 신고에 대한 규정에 따라 향후의 SNAP 계산에 적용될 것입니다.

SNAP 신청 시, 본인은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가 본인의 본 프로그램 신청을 조사하기 위해 소득 및 자격성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를 요청하고 사용하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발견될 경우 부가적인 연다방을 통해 본 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본인이 수령하는 SNAP의 자격성 여부 및/또는 SNAP 수당의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PRIVACY ACT) 준수 - 사회보장번호(SSN)의 수집 및 사용 - 2008년 식품영양법 (Food and Nutrition Act of 2008)에 따라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SNAP)과 관련하여 각 가구 구성원에 대한 사회보장번호 (SSN)의 수집이 승인됩니다. 우리가 수집하는 이 정보는 귀하의 가구가 지원 또는 혜택을 계속 받을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본 정보는 컴퓨터 대조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또한 본 정보는 프로그램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공식적인 조사를 위해 주 정부 및 연방 기관에 공개되고 법률 피해 도우면 범법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 당국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신원을 확인하고, 근로소득과 물로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귀 가구를 상대로 SNAP 청구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SSN를 포함해 본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는 연방기관 및 주정부기관에 회부될 수 있으며, 청구금 징수 조치 시 민간 청구금 징수 기관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SNAP을 신청하는 사람은 SSN를 제출해야 합니다. SNAP 수당 부적격자의 SSN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신청/개인증을 하는 사람이 SSN가 있다면 사회보장부(SSA.gov)에 SSN를 신청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이런 식으로 본 기관에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 외에 정보를 이용하여 HEAP(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를 통해 수당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내기도 합니다. 이 정보는 각 지역의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도록 하려는 뉴욕주의 업무품질 관리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귀하의 에너지 공급업체를 확인하고 이들에게 소정의 지급을 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위험이 아닌 지원 - 본인은 위생 지원이 저변되는 조건으로 본인 및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의 시민권 및 이민 상태에 대해 제공한 정보가 진실되고 올바름을 서약 및/또는 확인합니다. 본인은 SNAP을 신청하는 사람의 비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이 미국 이민국에서 확인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SNAP의 경우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시민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의 중요 정보를 숙독하십시오 (계속)

수권 대리인 - 귀하는 귀하 가구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귀하를 대신해 SNAP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귀댁 이외의 사람에게 귀하를 대신해 SNAP 급여를 받아 그것을 사용하여 귀하를 위한 식품을 구입할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귀하는 아래에 그 사람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자로 써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리인 (Authorized Representative)이 어떤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SNAP) 가구를 대신해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SNAP)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대리인 (Authorized Representative)이 해당 가구에 의해 서면으로 달리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한 해당 법적 대리인 (Authorized Representative)과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SNAP) 가구의 책임 있는 성인 양쪽 모두 본 페이지 하단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10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원하는 경우, 아래에 그 사람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자로 쓰고 서명하십시오.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승인: 본인은 위증 시 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본인이 현지 사회복지사무소에 제공했거나 제공할 정보가 정확하다는 점을 맹세하고 확인합니다. 신청 절차를 완료하려면 아래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또는 책임 있는 가구원) X	서명일 11
법적 대리인 서명 X	서명일

귀하가 타인을 위해 이 신청서/재인증서 작성을 도왔다면 여기에 귀하의 성명과 주소를 정자로 기입하십시오. 귀하는 전화번호도 자발적으로 정자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추가 정보가 있으면 이 난을 사용하십시오:

사람: _____ 설명:

사람: _____ 설명:

사람: _____ 설명:

12

본인은 본인의 신청서 재인증서를 철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서명 _____ 날짜

13

기판 사용란

적격성 결정자 _____ 일자 _____

적격성 정보를 입수한 사람의 서명: _____ 일자 _____

사유 ____/____/____ 철회 거부 재인증 종료

적격성 승인자 _____ 일자 _____

SNAP 승인 기간: _____부터 _____까지

대면 인터뷰 전화 인터뷰

코멘트:

부 록 4

농식품바우처 가맹점 신청서 양식(안)

바우처 가맹점 신청서(1안)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업 종		카드 결제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연 락 처		E-mail	
주 소			
취급품목	<input type="checkbox"/> 쌀 <input type="checkbox"/> 현미 <input type="checkbox"/> 잡곡 <input type="checkbox"/> 과일·채소류 1종류 <input type="checkbox"/> 과일·채소류 2종류 <input type="checkbox"/> 과일·채소류 3종류 이상 <input type="checkbox"/> 우유 1개 브랜드 <input type="checkbox"/> 우유 2개 브랜드 <input type="checkbox"/> 우유 3개 브랜드 이상 <input type="checkbox"/> 계란 1개 브랜드 <input type="checkbox"/> 계란 2개 브랜드 <input type="checkbox"/> 계란 3개 브랜드 이상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바우처 사업 성실의무이행서약서 1부. 3.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		

※ 귀하는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지정 복지사업의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농림축산식품부 귀중

바우처 가맹점 신청서(2안)

업 체 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카드 결제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연 락 처		E-mail	
주 소			
사 업 장 소 재 지	<input type="checkbox"/> 읍·면		<input type="checkbox"/> 동
취 급 품 목	<input type="checkbox"/> 쌀 <input type="checkbox"/> 현미 <input type="checkbox"/> 잡곡 <input type="checkbox"/> 과일·채소류 1종류 <input type="checkbox"/> 과일·채소류 2종류 <input type="checkbox"/> 과일·채소류 3종류 이상 <input type="checkbox"/> 우유 1개 브랜드 <input type="checkbox"/> 우유 2개 브랜드 <input type="checkbox"/> 우유 3개 브랜드 이상 <input type="checkbox"/> 계란 1개 브랜드 <input type="checkbox"/> 계란 2개 브랜드 <input type="checkbox"/> 계란 3개 브랜드 이상		
첨 부 서 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바우처 사업 성실의무이행서약서 1부. 3.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		

※ 귀하는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지정 복지사업의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농림축산식품부 귀중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가맹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소재지가 읍·면인 경우 쌀·잡곡, 과일·채소, 우유, 계란의 4개 농식품군 중 3종류 이상을 판매하면 해당됩니다.
2. 소재지가 동인 경우 쌀·잡곡, 과일·채소, 우유, 계란의 4개 농식품군 중 3종류 이상을 판매하고, 각 품목 별로 2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 해당됩니다.
3. 신청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의 농업계, 산업계, 경제계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실의무이행서약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한 _____은/는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1. _____은/는 귀 기관의 협력업체로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상호간에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_____은/는 ‘농식품바우처’로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지정된 품목만을 판매할 것이며, 아래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자격 박탈 등 제반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허용 품목 이외의 품목을 판매할 경우
 - 농식품바우처로 판매한 품목을 반품 받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
 - 농식품바우처로 판매한 품목을 반품 받고 다른 품목으로 교환해 주는 경우(영수증)
 - 지원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 서류일 경우
3. _____은/는 본 지원사업의 진행상 필요한 제반사항 및 자료제공, 점검 방문에 대해 적극 협조·응답하겠습니다.

위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하며,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귀 기관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을 질 것을 다짐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농림축산식품부 귀중

참고문헌

- 강원연구원·aT농식품유통교육원. 2018. 『강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보고 18-07.
- 강창현·문순영·김기창. 2012. 『바우처 제도의 현황과 효과성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2019. 『경기도 먹거리전략 수립 및 추진 방안 연구용역』. 워크숍자료.
- 김기원. 1994. “한국형 식품권제도 모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5(0): 225-252.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김성용·김철민·이계임·최지현·문현경. 2003. 『영세민 식품보조제도 도입방안 연구』. C2003-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윤수·박민아. 2013. 『국내 사회복지서비스분야 바우처사업 사례 연구』. 연구13-01.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김초일·이윤나·장영애·이행신·이해정·문재진·조아라·나세연. 2007.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의 확대/정착방안 도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
- 김태완·김문길·여유진·김미곤·김현경·임완섭·정혜식·황도경·김성아·박형준·윤시몬·이주미·신재동·김선·김은지·김혜승·우명숙·윤상용·이선우·정재훈·최민정. 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정책보고서 2017-1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주. 2016. “영양플러스 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노대명·이현주·강신옥·김문길·신현웅·신화연·황덕순·홍경준·손병돈·장덕호·임완섭·이주미.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정책보고서 2013-7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8. 12. 18. 보도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fund.or.kr>.
- 문현경·손태영·윤미옥·김서연·송수나·전주영·이지연. 2012. 『경제수준별 건강 식생활을 위한 market-basket 구성』. 일반 12-32. 단국대학교·한국건강증진재단.
- 박광수·김수일. 2009.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연구』. 기본연구보고 09-02. 에너지경제연구원.
- 박홍엽. 2013. 『바우처사업 평가』. 사업평가 13-01. 국회예산정책처.
-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양정선. 2013.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공급서비스 개선방안』. 현안보고서 2013-05.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윤희숙·이영옥·권형준·한영은·이항용·민희철. 2014.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이계임·황윤재·이동소·김가영·이윤나·김기량. 2012. 『식품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R680. 한국농

존경제연구원.

- 이계임·김상효·김부영. 2017.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R8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김다혜. 2018.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이계임·김상효·임소영·허성운·한정훈. 2019. 『농식품바우처 지원 실증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이삼식·이현주·최효진·이지혜·기재량·임지영·유재언·박지연·이소영·송리라. 2013. 『행복한 임산·출산을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2013-1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승미·이의정. 2015. 『결식우려아동 급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윤나·권종숙·조경자·이현아. 2014.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신구대학교·보건복지부.
- 이현주·박세경·박광수·한치록·전지현. 2013. 『에너지 바우처 도입방안 연구』. 정책보고 2013-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정광호. 2010. 『바우처 분석』. 법문사.
- 정은미·최병옥·정천섭·정환열. 2018.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기대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질병관리본부. 2013, 2014, 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 최성은·최석준. 2007. 『바우처 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방안』. 연구보고 2007-2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영운·한두봉. 2015. “저소득층 노인무료급식 프로그램 이용 효과 분석.” 『농업경제연구』 56(2): 1-28. 한국농업경제학회.
-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 함영진·김경준·이희종·조미연. 2015. 『아이행복카드 통합에 대한 효과성 평가 연구』. 연구보고서 15-07. 사회보장정보원.
- 황지윤·심재은·김기량. 2014.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영양실태 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Aussenberg, Randy Alison and Kirsten J. Colello. 2017. Domestic Food Assistance: Summary of Program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Carlson, A., Mark Lino, WenYen Juan, Kenneth Hanson and P. Peter Basiotis. 2007. Thrifty Food Plan, 2006. CNPP-19.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Center for Nutrition Policy and Promotion.
-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국 <<https://www.fns.usda.gov/snap/supplemental-nutrition-assistance-program-education-snap-ed>> 검색일 2017. 12.12.
-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국. “A Short History of SNAP<<https://www.fns.usda.gov/snap/>

- short-history-snap> 검색일 2017. 3. 3.
- Aussenberg, R. A., 2018, “Errors and Fraud in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Congress Research Service
- Canning, Patrick and Brian Stacy. 2019.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and the Economy: New Estimates of the SNAP Multiplier, ERR-265,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 Greenstein, R., Keith-Jennings, B. and Rosenbaum D., 2018, “Factors Affecting SNAP Caseloads”, Center of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 USDA-FNS, 2018, “Trends in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Participation Rates: Fiscal Year 2010 to 2016”.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Report Series
- USDA-FNS, 2018, “FY 2019 SNAP-Ed Plan Guidance”